



5

독일통일 총서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5

독일통일 총서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5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 문	12
제1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배경	12
제2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목적	14
제3절 경찰분야 총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14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체제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서독의 경찰체제	17
1. 개관	17
2. 각 주의 경찰기관	18
3. 연방경찰기관	18
제3절 동독의 경찰체제	21
1. 개관	21
2. 인민경찰(Volkspolizei)	23
3.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Stasi)	25
4. 국경경비대(Grenztruppe)	26
제4절 소결: 동서독 경찰체제의 비교	27

제3장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치안 및 경찰의 대응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동독지역 치안상황 개관	29
제3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경찰의 대응	33
1. 베를린 장벽 붕괴시까지 서독경찰의 역할	33
2.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서독 경찰의 대응	34
제4장 동서독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37
제1절 독일통일의 논의	37
제2절 행정체제의 통합	39
1.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39
2. 연방제의 부활	39
3. 동독지역 공무원의 인수	41
제3절 경찰통합을 위한 논의와 준비	42
1. 동서독 경찰 간 접촉과 교류	43
2.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45
3. 경찰통합의 준비활동으로서 동독 경찰의 노력과 조직개편	52
제5장 동서독 경찰의 통합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통일독일의 치안상황	58
1. 범죄의 발생추이	59
2. 범죄피해의 신고수준	61
제3절 신연방주(州)의 경찰통합	62
1. 경찰권의 귀속	62
2. 새로운 경찰법 제정	63
3. 신연방 지역에서의 경찰조직의 재건	63
제4절 베를린 경찰의 통합	71
1. 경찰통합의 기본원칙	71
2. 경찰통합의 추진	72
제5절 구 동독 인민경찰의 활용	84
1. 구 동독 인민경찰의 재임용	84
2. 구 동독 인민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재교육	98
제6절 경찰 통합상 문제점	101

CONTENTS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5
제1절 서설	105
제2절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5
1.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105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7
제3절 남북한 경찰통합을 대비한 정책적 제언	109
1.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109
2. 경찰통합의 준비와 기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0
3. 북한지역 지원체계의 구축	111
4.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 · 활용	111



정책문서를 통해 본 통일과 치안

들어가며	120
제1장 평화적 혁명 이후 개혁적 과도기의 동독의 인민경찰	122
제1절 개혁적 과도기의 유일한 치안유지 기관	123
제2절 슈타지의 해체와 인민경찰	126
제3절 동서독 국경 철거와 안전보장	127
제4절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128
제2장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	129
제1절 베를린 경찰통합 진행연보	129
제2절 사전작업	131
제3절 통합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	132
제4절 통합의 완성: 1990년 10월 1일	135
제5절 정권 범죄 및 통일 관련 범죄	136
제3장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임용 문제	137

제4장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교육	140
--------------------	-----

부록 수록된 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143
1. 현황 보고서	143
2. 공문	145
3. 직무지시	146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147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	148
6. 회의록	148
7. 발표문	148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2
-------	-----

문서 요약	160
1. 보고와 현황(문서번호 1~16)	160
2. 공문(문서번호 17~18)	175
3. 업무지시(문서번호 19~35)	178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문서번호 36~40)	196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문서번호 41~51)	201
6. 회의록(문서번호 52~61)	211
7. 발표문(문서번호 62~63)	22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동서독 경찰의 주요 차이점	28
표 1-2> 동독주민 및 동독 외 지역 독일인의 서독이주 현황	31
표 1-3> 서독 공무원의 동독 신연방주 정부기관 파견 현황	41
표 1-4>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제	47
표 1-5> 1985년-1993년 간 독일의 인구 · 범죄발생건수 ·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추이	60
표 1-6> 1993년 독일 신연방주별 범죄발생 건수	60
표 1-7> 1993년 독일 연방주별 범죄해결율	61
표 1-8> 통일 이전 4년 동안 및 통일 이후 1년 동안의 범죄피해신고율	62
표 1-9> 동독 신연방주와 서독 연방주 간 자매결연 현황	68
표 1-10> 독일통일 직전 동서베를린 경찰력 현황	76
표 1-11>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컨셉	78
표 1-12> 구 동독 인민경찰관 중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된 인원	94
표 1-13> 구 동독 인민경찰의 교육현황	100
표 2-1> 베를린 경찰의 통합	142

그림 목차

그림 1-1> 동독 치안기구의 기본구조	23
그림 1-2> 베를린 경찰청 조직도	74
그림 1-3> 구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재교육시스템	79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황문규(중부대학교)



서 문

제1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배경

남북한 통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또 통일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돌출될지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통일을 대비한 사전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 독일의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냉전의 최전방으로 놓이게 되었던 독일이 과연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정치권, 정보국, 전승국 등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계획도 없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¹ 그러나 그로 인해 겪었던 혼란과 시행착오는 결코 작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이 갑작스럽게 닥친 통일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언젠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귀중한 연구의 대상이다. 나아가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

¹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81p.

해 줄 것이다.

독일통일의 사례 가운데서도 ‘경찰분야’는 특히 다음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경찰의 존재의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통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 및 그에 따른 위험과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도기적 사회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여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경찰의 존재의의가 있다. 바로 사회혼란에 따른 위험과 범죄를 예방·진압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전쟁 등 무력에 의한 통일의 경우 경찰보다는 군이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보충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의 경우 전쟁수행을 주임무로 하는 군의 특성상 군이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는데 반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치안유지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셋째, 남북한 경찰통합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 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은 필수적 당면과제인데, 동서독 경찰 간 통합의 사례는 남북한 경찰의 통합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의 경찰은 민주법치국가 하의 경찰체제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남한경찰이 주도적 입장에서 북한경찰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찰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서독 간 경찰통합이 바로 그러한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2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통일부에서는 독일통일 및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독일정부의 문서, 법령 및 주요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주요 자료를 정리, 요약·해석하여 분야별 독일통일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경찰분야’ 총서를 준비해왔다. 이는 특히 그간 동서독 경찰의 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독일정부의 공식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밀도 있는 연구 수행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총서가 남북한 통일시 남북한 경찰 통합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은 물론, 통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될 예상치 못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본 경찰분야의 총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경찰의 통합과 관련하여 수집된 독일정부의 문서 등을 요약·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총서는 단순히 수집된 자료의 요약 및 해설에 머물지는 않는다. 동서독 경찰통합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통합의 기초로서 통일 이전 동서독 경찰체제가 어떠한지까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 남북한 통일에 따른 남북한 경찰 통합시 우리가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경찰분야 총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본 총서는 동서독 경찰통합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목적 하에 통합과정을 가능하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총서는 먼저 통일 이전 동서독 경찰의 체제를 다루었다(제2장).

다음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서독지역의 치안상황과 그에 대한 동서독 경찰의 대응을 살펴보았다(제3장).

제4장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동서독 경찰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양독 경찰의 통합이 서독경찰에 의한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독의 인민경찰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서독 경찰의 본격적인 통합과정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동서독 경찰의 통합사례가 우리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장래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체제

제1절 서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승전국이 점령하는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이들 승전국의 점령통치를 받게 되었다. 각 점령지역에서는 나치경찰의 해체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에 따라 경찰이 재조직되었는데, 그 기본방향은 탈군대화(Demilitarisierung), 탈나치화(Denazifizierung), 탈정치화(Depolitisierung), 민주화(Demokratisierung), 탈중앙집권화(Dezentralisierung)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점령지역 연합군이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였다. 왜냐하면 점령지역의 승전국은 자국의 경찰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점령지역에서의 독일경찰을 재조직하였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소련의 점령지인 동독지역에서는 중앙집권화된 인민경찰이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인 서독지역에서는 분권화된 자유민주경찰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동독과 서독의 경찰은 이처럼 각기 서로 상충되는 체제를 옹호해야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서

² Boldt, Geschichte der Polizei in Deutschland, in: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2. Aufl. 1996, 27-28p.

로가 ‘적’으로 간주되어 서로 간의 상호접촉과 협력은 없었다. 때문에 1972년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상호인정, 접촉·교류·협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는 양측의 경찰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³

제2절 서독의 경찰체제

1. 개관

서독은 각 주별 자치권이 보장된 11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였다. 경찰권도 본(Bonn) 기본법(Grundgesetz) 제30조 및 제70조에 따라 각 주의 권한에 속하였기 때문에 각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경찰법⁴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각 주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경찰조직을 두고 있었다. 이 점에서 서독경찰을 분권화된 경찰제도라고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각 주의 경찰은 주(州)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1989년 당시 서독의 각 연방주 소속 경찰관은 총 16만9천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만4천명은 수사경찰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이처럼 경찰권이 원칙적으로 각 주의 권한으로 인정되었지만, 국경수비, 관세, 연방차원의 범죄수사 및 국제성 범죄 진압 등 연방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기본법(제73조 제5호, 제6호, 제10호)에서는 제한적으로 연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연방정부의 경찰로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등이 있었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총 3,705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며, 연방국경수비대는 2만1,500명의 경력을 유지하고 있었다.⁵

³ 손기웅,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 통일한국정부론: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114p.

⁴ 때문에 독일의 경찰법은 각 주별로 상이하다. 범죄에 대해 연방과 주 사이에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독일 각주의 내무부장관들은 1977년 11월 25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Musterentwurf eines einheitlichen Polizeigesetzes des Bundes und der Länder)을 제정하였다. 각 주에서는 이 모범초안을 모델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경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⁵ Arved Semerak, Die Polizeien in Westeuropa, 1989, 33-44p.

2. 각 주의 경찰기관

독일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각 주(州)별로 독립된 경찰제도이지만, 각 주에
서의 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각 주의 경찰은 일반적으
로 주(州)내무부장관을 정점으로 주(州)경찰청장(Landespolizeipräsidium)
을 두고, 그 밑에 지역경찰청, 주(州)범죄수사청, 기동경찰대, 주(州)경찰대
학 등이 있다.⁶ 지역경찰청 산하의 경찰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치안경찰
(Schutzpolizei), 수사경찰(Kriminalpolizei), 교통경찰(Verkehrspolizei), 기
동경찰(Bereitschaftspolizei) 그리고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로 분류
된다. 수상경찰은 해로와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상에서의 위험방지와 범
죄수사를 임무로 한다. 예컨대, 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 내수면 및 해양환
경 오염의 방지 및 단속, 기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위임한 사항 등이 수상
경찰의 주 임무이다.

3. 연방경찰기관

연방정부 차원의 경찰기관에는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범죄수사청
(Bundeskriminalamt: BKA),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BGS), 연
방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 BfV) 등을 들 수 있
다. 아래에서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

연방범죄수사청은 1951년 기본법 제73조 제10호 및 제83조 제1항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법(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

⁶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주경찰청장 밑에 4개의 지역경찰청(프라이부르크, 칼스루에, 슈투트
가르트, 튀빙엔)과 슈투트가르트 경찰청, 주범죄수사청, 바덴뷔르템 기동경찰대, 주경찰대학 등이
있다.

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을 근거로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경찰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내각에서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청장 1인을 두고 있다. 비스바덴(Wiesbaden)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독의 중앙경찰(Zentralstelle)기관이자 인터폴 등 국제경찰기구의 협력파트너로서 연방차원의 범죄수사 및 각 주의 경찰기관 간의 조정,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소위 국제범죄의 진압을 위한 국제경찰협력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연방경찰기관이다. 특히 국제적 관련성을 띤 국제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1951년 설립 당시에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이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범죄정보기관에 머물렀으나, 점차 권한을 확대하여 오늘날에는 범죄예방 및 수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이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독의 모든 경찰기관과 연결된 경찰중앙전산망인 INPOL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⁷⁾

각 주에서도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주(州)차원에서 연방범죄수사청의 임무를 수행할 주(州)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州)범죄수사청은 연방범죄수사청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연방범죄수사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인 기관이다.

2)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BGS)

연방국경수비대는 1951년 기본법 제73조 및 「연방국경수비대법(Gesetz über den Bundesgrenzschutz)」에 따라 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 소속기관으로 동독과 접하는 국경 1,393km, 그리고 체코와 접하는 국경 356km의 수비를 위하여 ‘준군대조직(eine paramilitärisch ausgerüstete Polizeitruppe)

⁷⁾ Zachert, Hans-Ludwig: Das Bundeskriminalamt-Gerstern, Heute, Morgen, in: Kriminalistik 1991, 682-687p.

으로 설치되었다.⁸ 연방국경수비대법 제2조에 따르면 연방국경수비대의 국경수비는 군사력으로 방어하는 임무를 제외한 순수한 경찰임무에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경감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의 통제, 국경에서 30km 이내의 지역에서 일어난 경찰상 장애제거, 그리고 국경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유형의 위험방지 활동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독의 국경감시 및 통제,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헌법기관 등 주요기관에 대한 경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집회시위 등 대규모 상황발생시 각 주(州)의 경찰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독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부(해안)·서부·중부·남부·동부의 5개 국경경비사령부를 두고, 각 사령부는 3개의 기동경찰대, 교육대, 항공대, 통신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방국경수비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연방경찰(Bundespolize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⁹ 현재 포츠담(Potsdam)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걸쳐 9개의 지방경찰본부를 두고 있어 사실상의 독일 전 지역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춘 연방경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GSG9을 산하에 두어 항공기 납치 등 테러발생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연방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 BfV)

연방내무부 산하의 국내정보기관으로서 연방헌법보호청¹⁰이 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기본법 제73조 제10호와 「연방헌법수호청법(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⁸ Puetter, “Sicherheitsarchitekturen im Wandel,” Bürgerrechte & Polizei/CILIP 90(2008), 3p.

⁹ Mauer, Entgrenzung der Bundespolizei: Nicht nur eine Organisationsreform, Bürgerrechte & Polizei/CILIP 90(2008), 27p.

¹⁰ BfV 홈페이지(<http://www.verfassungsschutz.de>) 참조.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제 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서독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서독 국내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의 수집은 좌익테러, 군대 내의 극좌 테러분자,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 정당, 이들과 연계된 국제조직, 극우세력, 신나치 추종세력 및 그 조직원, 이들과 연계된 단체, 출판물, 국내안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외국인 관련사항,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방첩업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를 대상으로 한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대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BND)와 구별된다. 연방정보부는 연방수상 산하기관이다. 연방헌법보호청은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와 경찰기능의 분리원칙에 따라 범죄수사 등의 집행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반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분석할 뿐 이를 근거로 한 수사는 경찰에서 수행하게 된다.

각 주에서도 연방범죄수사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주(州)헌법보호청을 두고 있다. 국내보안정보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연방 및 각 주(州)의 헌법보호청은 좌·우익테러분자, 독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 정당 등에 대한 정·첩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외국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3절 동독의 경찰체제

1. 개관

나치의 멸망으로 독일의 동독지역에서는 인민경찰(Volkspolizei)이 설립되었으며, 분권화와 민주화를 추구한 서독의 경찰과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기구로 발전하였다. 이는 주(州)를 폐지하여 연방주의 요소를 제



거한 동독의 중앙집권화된 행정조직과 맥락을 같이하였다.¹¹ 동독의 경우 내무부 자체가 사실상 경찰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1964년 이후 동독의 내무부장관이 인민경찰청장(Chef der Deutschen Volkspolizei)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동독의 전 경찰은 내무부 소속의 경찰본부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지도되고 통제되었다. 이 밖에 동독의 주요한 경찰기구로 국가안전부와 국경경비대, 그리고 각종 철도와 이를 이용한 여행객들의 통제를 위한 수송경찰이 있었다.

동독에서는 동독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근거법규 제정의 필요성에서 1968년 6월 11일 「인민경찰법(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s Deutschen Volkspolizei: Volkspolizeigesetz)」¹² 이 제정되어 1990년 동독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로 통합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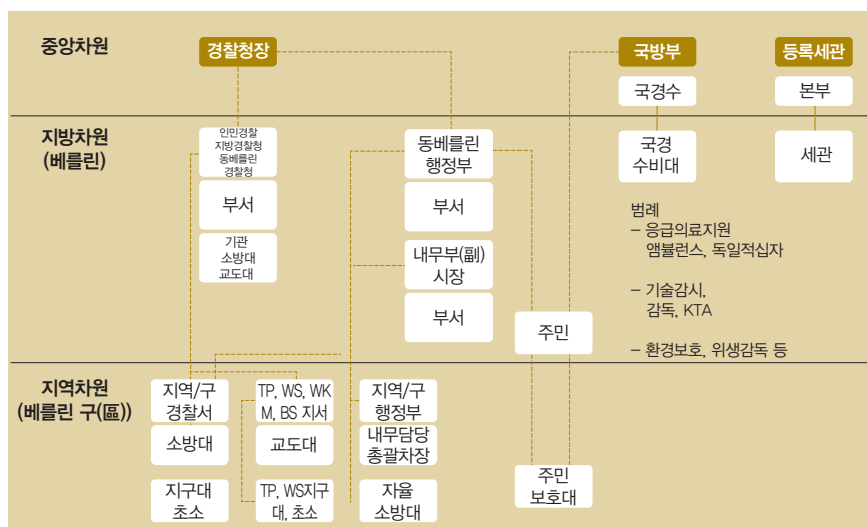
인민경찰법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경찰에게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인민경찰법 전문(Praeambel)에서 ‘인민경찰은 노동자 및 농민의 역량의 발전 및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DDR, 동독)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권력 기구’라는 점을 선언하면서 사회주의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인민의회, 기타 국가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및 독일인민전선위원회와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완성시킬 것을 요청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동독의 인민경찰관은 “a) 노동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충성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충

¹¹ 동독에서는 1952년 주(州)를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14개(동베를린 제외)의 관구(Bezirk)를 도입하고, 각 도 밑에는 27개의 市區(Stadtkreis)와 191개의 군(Kreis), 11개의 동베를린 市區를 두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 7,563개의 시(Stadt)와 게마인데(Gemeinde)로 조직되어 있었다.

¹² 전문을 포함하여 총 4개 부문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인민경찰법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공산주의·사회주의 법제도연구(1), 135p 이하 참조.

실히 보호할 의무, b) 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연방(UdSSR,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공동체 국가들 간의 우호와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항상 국제사회주의 정신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 엄숙한 선서를 어기게 된다면, 나는 우리 공화국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요컨대, 나치체제 하에서의 경찰이 나치독재국가의 도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독에서의 경찰도 공산주의 압제의 도구였던 것이다.

그림 1-1〉 동독 치안기구의 기본구조¹³



2. 인민경찰(Volkspolizei)

인민경찰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으로서 사실상 내무부 그 자체가 인민경찰의 기능을 하였으며, 인민경찰청장을 겸직한 내무부

¹³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17p).

장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¹⁴ 동독의 인민경찰은 서독과 달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소방, 수송(철도), 여권 및 주민등록 그리고 수감자 관리 업무도 이들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임무와 권한은 자유민주국가의 고유한 경찰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넘어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구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청 산하에 전국 15개 시도 및 229개 시·군 지역에 14개 관구경찰국(Bezirksbehörde der DVP)과 218개 경찰서(Volkspolizei-Inspektion), 그 아래에는 경찰지구대(Polizeirevier), 경찰파출소(Polizeigruppenposten), 공공시설경비소(Betriebswachen)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인민경찰의 인력을 살펴보면, 1950년 5만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9만 6천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당시 동독의 인구가 대략 1,75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때 동독경찰은 주민 170명당 1명이었다. 이는 그만큼 동독의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인민경찰에 의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관리되었음을 말해준다.

인민경찰은 보통의 인민경찰 외에 인민경찰기동대(kasernierte Bereitschaftspolizei)¹⁵를 두고 있었다. 인민경찰기동대는 병영생활을 하는 군대식으로 조직되었으며, 약 20만 명의 경찰력으로 영토방어를 주 임무로 하였으나 시위진압에도 투입되었다.¹⁶

¹⁴ 1963년까지는 내무부장관과 인민경찰청장이 별도로 임명되었다.

¹⁵ 인민경찰기동대는 1956년 1월 18일 「인민군 및 국방부 창설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Schaffung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s Ministeriums für Nationale Verteidigung)」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공식적 군대조직이 창설됨을 계기로 국방부 산하로 통합되었다.

¹⁶ 1989년에도 동독 붕괴의 계기가 되었던 월요데모의 진압을 위해 드레스덴(Dresden) 등의 지역에서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다.

3.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Stasi)¹⁷

국가안전부는 동독의 가장 강력한 체제수호기관인 비밀경찰로서 일명 ‘슈타지(Stasi)’로 불렸다. 때문에 국가안전부는 히틀러의 나치정부 당시 게슈타포(Gestapo)에 종종 비유되곤 했다. 슈타지는 원래 내무부의 인민소유 권보호국 내에 설치된 국가보안경찰을 대신하여 1950년 2월 8일 설치되었다. 이후 1953년 6월 폭동을 계기로 잠시 내무부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11월 24 일자로 부(部)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국가안전부는 별도의 부처로서 행정부 내의 독립된 중앙기관이 되었다.

슈타지는 상당히 복잡한 조직을 두고 있었다. 베를린에 33,000명의 간부가 있는 본부를 두고, 각기 1,754명에서 3,746명의 직원을 둔 15개 지구본실 그리고 각 25~50명의 간부를 둔 219개 군(郡)사무소를 두었다. 내부조직은 사무총국, 행정실, 여러 개의 총국과 국, 필요에 따라 둔 테스크포스팀(Arbeitsgruppe) 등으로 구성되었다. 슈타지는 사업장, 병영, 대학, 교도소는 물론, 심지어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에도 감시를 위한 연락소 내지 연락관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슈타지는 1980년대 약 85,500명의 간부가 활동할 정도로 많은 요원을 두고 있었다. 동독체제가 붕괴될 당시에는 공식요원만 1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은 비밀로 분류된 내부지침과 상부지시에 근거하였으며, 전혀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슈타지는 경찰조직은 아니었지만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비밀경찰로서 동서독에 거주하는 600만 명 이상의 주민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었다. 이 대상자에 대한 비밀문건을 일렬로 세우면 202km에 달했으며, 1m의 문건에는 70가지 사안이나 1만장 정도의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한다.¹⁸ 슈타지

¹⁷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체제 불법청산개관, 1995, 30~34p 참조.

¹⁸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1996), 111p.



는 이처럼 그물 같은 정보망으로 국민 대다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한편 슈타지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독일통일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1990년 2월에 해체되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해체된 슈타지의 직원들은 인민경찰로 소속을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독경찰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동독의 인민경찰을 흡수함에 있어 슈타지의 직원이었는지 또는 슈타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슈타지 요원으로 활동했던 자를 찾아내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국경경비대(Grenztruppe)¹⁹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국경경비대는 서독의 연방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동독의 국경경비대는 경찰이 아닌 군이었다. 국경경비대는 1946년부터 ‘국경경찰(Grenzpolizei)’로 내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국가공안부를 거쳐 1961년부터 ‘인민군 국경수비대(Grenztruppe)’로 인민군에 편입됨으로써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국경경비대는 4만 8천 명의 병력으로 구 동독의 반파시스트 방벽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특히 지뢰, 자동소총 등 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동독지역 탈출을 저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국경의 통제는 그야말로 동독 공산당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었기 때문에 국경경비대의 책임 하에 서독으로 탈주하는 동독주민에 대한 총격살인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¹⁹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체제 불법청산개관, 1995, 36-37p 참조.

제4절 소결: 동서독 경찰체제의 비교

동독과 서독의 경찰은 각기 서로 다른 체제, 즉 사회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와 조직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에서의 차이를 낳았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동서독 경찰의 통합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었다. 동서독 경찰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의 경찰이 내무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구조 하에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를 수호하려고 한 반면, 서독의 경찰은 각 주를 중심으로한 분권적 형태 하에서 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통한 민주법치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독의 경찰은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동독의 경찰은 경미한 사안조차도 현장 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지역경찰관서에 위치한 상황실에 사건을 보고하고 그곳으로부터 개별 사안에 대해 심지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⁰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동독 인민경찰은 1일 8.75시간씩 주 5일 근무(월 1회 주말근무)하여 주당 43시간이었다. 반면 서독경찰은 주 5일(월 최소 1회의 주말근무) 38.5시간 이내에서 근무하였으며, 여기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월 9시간, 사격훈련을 위하여 연간 24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동서독 경찰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²⁰ 1989년 12월 31일 자정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신년(1990년)을 맞이하는 축제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여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동베를린 경찰은 부상자들의 신원, 치료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표 1-1) 동서독 경찰의 주요 차이점 ²¹

구 분	서독의 경찰	동독의 인민경찰
조직체계	각 주(州)에 경찰권이 부여된 분권화된 조직체계 및 그에 따라 크게 연방경찰과 주(州)경찰로 이원화	국가의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조직체계
임 무	위험의 방지 및 제거, 방어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감시, 그러나 직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위험의 방지 및 제거, 복지의 보장(Wohlfahrtspflege),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 체제반대자에 대한 감시, 그러나 직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매우 광범위함
권한 (베를린경찰의 경우)	관할사무에 대해 근무 중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책임 하에 수행	아주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까지 감독관서의 지시에 엄격히 구속되고 기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어 업무수행방식의 결정에 있어 독자적인 재량권이 적음
직무시간 (베를린경찰의 경우)	교대근무가 연간 업무주기로 규정되어 있음(주당 근무시간 38.5시간)	비교적 짧은 주기(월별)로 정해짐(주당 근무시간은 43.5시간)
신입 직무교육 및 승진	- 경찰학교에서 2년 6개월의 직무교육 후 배치 - 승진의 전제조건으로 40세 이상 10년 근무경력(중간직 근무의 최고 관청에서 최소 3년 근무경력 포함)과 6개월 간의 연수가 요구됨	- 경찰학교에서 5개월의 직무교육 후 6개월 간 인민경찰양성소(Lehrdienststelle)에서 실습 후 배치 - 나이 제한 없이 경찰학교에서 2년간의 교육 후 경찰간부로 승진 가능
인력구성 (베를린경찰의 경우)	초급경찰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베를린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경찰에서 경정 이상 경찰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베를린은 1.35%인 반면, 동베를린은 3.8%를 차지	
수감자 감시 (베를린경찰의 경우)	교도경찰(Wachpolizei)의 업무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을 경우 치안경찰(Schutzpolizei)이 지원	인민경찰의 본래적 권한이며, 장비는 경찰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구비

²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3, 26p 이하).

제3장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치안 및 경찰의 대응

제1절 서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동독지역의 치안은 체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불안해져 갔다. 게다가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 주민의 탈출시도도 1989년 4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봉쇄 해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침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다. 동서베를린 경계선 약 45.1km에 이르는 베를린 장벽은 1961년 동독 정부가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과 동독 마르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독 공산당 체제의 붕괴나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전후하여 동서독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동독지역 치안상황 개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동독지역 내 치안상황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1989년 5월 동독 공산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 세력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고, 특히 라이



프치히에서는 비밀경찰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시민 120여 명을 연행하여 시민소요를 더욱 격화시켰다.

- ② 1989년 4월 헝가리는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같은 해 5월 2일 유럽을 동서로 분단시켰던 철조망을 최초로 철거하였다. 이를 계기로 수천 명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체코·폴란드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²² 같은 해 9월 10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연말까지 약 35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대규모 동독 탈출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대량 탈출사태는 동독의 붕괴 및 그에 따른 독일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서독 분단 이후부터 독일통일 직전까지 동독인구 1,700만 명의 약 1/4에 달하는 약 400만 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 또는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다.²³ 아래 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가기 위해 동독을 탈출한 경우(아래 표에서는 ‘동독탈출 서독이주’로 명시)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동독 이외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인이 서독으로 이주한 현황(아래 표에서는 ‘동독 외 지역 독일인의 서독이주’)을 보여준다.

.....

²² 이러한 배경에는 서독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서독정부는 1989년 8월말 헝가리정부와의 비밀협상을 통해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헝가리-동독 간에 체결된 「여행협정」을 파괴토록 하였던 것은 그러한 좋은 예이다.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66p.

²³ 이들 동독주민들은 그렇지만 서독에서 커다란 어려움 없이 동화하고 정착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독일통일 후 독일(서독) 정치인들이 40년 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었던 데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표 1-2) 동독주민 및 동독 외 지역 독일인의 서독이주 현황²⁴

연도	동독탈출 서독이주	동독 외 지역 독일인의 서독이주	계
1980	12,763	52,071	64,834
1981	15,433	69,455	84,888
1982	13,208	48,170	61,378
1983	11,343	37,925	49,268
1984	40,974	36,459	77,433
1985	24,912	38,968	63,880
1986	26,178	42,788	68,966
1987	18,958	78,523	97,481
1988	39,832	202,673	242,505
1989	343,854	377,055	720,909
1990	238,518	397,075	635,593

③ 1989년 10월 7일 동독건국 40주년 행사에서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죽음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동독수상 호네커의 반개혁적 노선을 비판한 고르바초프의 지적에 대해, 호네커는 “죽음을 선언한 자는 오래 생존하는 것이 상례”라고 반박하여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⁵

④ 같은 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라이프치히와 동베를린에서는 경찰이 시위 군중을 구타하고 체포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서독 TV에서 이를 보도하는 장면을 본 동독주민들에 의한 시위확산이 가속화되었다. 10월 2일 1만 명이 참가하던 라이프치히 월요데모는 10월 9일 7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그 해 11월 6일에는 50만 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이는 동독 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²⁴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009, 46-47p.

²⁵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II), 2009, 7p.



다. 실제로 경찰과 군은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시위대의 개혁요구는 점차 동서독 통일을 주장하는 요구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 ⑤ 라이프치히 월요데모를 탱크로 진압하자고 주장한 동독수상 호네커는 당 지도부 및 군부와 갈등을 빚고 같은 해 10월 18일 사임하게 된다. 보수성향의 크렌츠가 그 뒤를 이었으나, 동독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여전하였다. 같은 해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는 100만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시위가 있었으며, 시위대는 자유선거와 베를린 장벽 철거를 요구하였다.
- ⑥ 1989년 11월 9일 19시경 동독의 정치국 공보담당비서 샤보브스키(Schabowski)가 기자회견에서 동독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적 여행규칙에 따라 누구나 개인적 여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허가는 즉시 내려질 것이며, 각 지역 경찰에게는 영구이주 비자를 신청서 없이도 ‘즉석에서’ 발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규정이 언제부터 발효되느냐”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샤보브스키는 “즉시, 지체 없이(sofort, unverzüglich)” 발효되며, 그 효력은 동서베를린의 국경은 물론 동독과 서독의 모든 국경검문소에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²⁶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동베를린 주민들이 베를린국경검문소로 몰려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그에 대응하라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그 곳의 책임자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경계막을 들어 올렸고 그로써 경계는 열렸고 장벽은 무너지게 되었다.

²⁶ Dieter Korger, Einigungsprozess,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96, 236p. 사실 이 규정은 11월 10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 방송 ZDF는 이를 두고 ‘독일 역사상 가장 멋진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제3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경찰의 대응

1. 베를린 장벽 붕괴시까지 서독경찰의 역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경찰의 역할은 주로 동독 이탈주민의 접수 등과 관련한 업무 및 이를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그리고 동독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동독 이탈주민의 접수는 원래 경찰의 임무가 아니었으나, 1989년의 상황은 해당기관에서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특히 1989년 9월 11일 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을 통한 6만 명의 탈출, 같은 달 30일 체코의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을 통한 동독 탈출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대량 이탈행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통제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²⁷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전까지 이루어진 동독주민의 탈출 또는 이주는 바이에른주에 한정되었지만, 장벽 붕괴 이후부터는 서독의 다른 주(州)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연방내무부의 지휘 아래 각 지역의 국경수비대에서 맡았다. 서독경찰은 이주·탈주자가 서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의 교통안전 등 초동단계의 지원을 담당했다. 차량, 천막, 침대 등의 물적 지원이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에게 일상 업무의 수준을 넘는 추가적인 특별한 임무였지만 경찰은 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경찰의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활동은 동독을 이탈한 주민들에게 서독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들이 동독 경찰로부터 경험한 통제와 억압의 부정적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이었다.²⁸

²⁷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65p.

²⁸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75p.



경찰은 그 외에도 동독주민들에 대한 신변안전 등의 안전대책을 담당했다. 동독 이탈주민들은 임시로 거처하고 있던 수용소 내에서 서로 간에 폭력을 동반한 싸움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게다가 이탈주민의 이러한 행태는 서독주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이탈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베를린에서는 동독주민의 자동차들에 평크를 내는가 하면, 하노버에서는 석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동독주민의 차량으로 던져 3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등 대도시에서 동독주민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탈주민 가운데 끼어 있는 적국 비밀요원을 찾아내거나 이들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는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했다.²⁹ 이러한 방첩활동은 1990년 4월 18일 동서독 내무부장관 간에 상호 간첩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

2.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서독 경찰의 대응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주민들에게는 서독으로의 ‘여행의 자유’가 주어진 반면, 서베를린 경찰에게는 엄청난 과제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같은 달 11일자 동독 국경경비대의 일일 보고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서독으로 향하는 30~50만 명의 인파가 물결을 이루었다. 교통이 지체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행자 수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주민의 수는 약 580만 명에 달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베를린교통국과 서베를린경찰은 비상상황에 대처한다’라는 원칙만 있었을 뿐, 구체적 대응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1989년 11월 9일 밤 10시에 열렸던

²⁹ 동독 이탈주민은 다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서독에 체류하기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연방헌법보호청에서는 간첩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간첩의 잠입도 그만큼 늘어났던 것이다.

서베를린의회 특별회의에서도 경찰에게 아무런 대응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베를린 경찰은 베를린시의 치안질서 및 베를린의 국경검문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³⁰

이는 동베를린 경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상급기관과의 접촉이 두절되는 등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때문에 동독 국경검문소의 해당 장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동독의 국경경비대와 서독의 경찰 간에는 원활한 협조관계가 조성되었다.³¹ 베를린 장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검문은 생략되었고, 단지 자동차 통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 이외 경찰의 개입은 없었다. 그렇지만 동서독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훼손하는 취객들의 행위는 특히 동독의 몇몇 정책결정권자들로 하여금 도발적 행위로 간주되어 군대를 투입할 구실을 주었다. 다행히도 서베를린으로 오가는 교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 군대를 투입할 공간이 허용되지 않았다. 동베를린 국경경비대에서는 장벽에 올라 장벽을 부수려는 서베를린 시민들에 대해 물대포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서베를린 경찰이 개선문 주변에 경찰차량으로 시민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비로소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주변 베를린 장벽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이 해소되었다.³²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시민들이 ‘앞으로 여행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장벽이 열린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함에 따라, 그에

³⁰ 손가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009, 74~75p.

³¹ 당시 서베를린 경찰청장이 베를린국경검문소에서 서독의 경찰관이 동독지역에 서있는 것을 보고 “지금 동독지역에 위치하여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동독의 국경경비대의 장교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³²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486~487p).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9년 11월 11일 국경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Charlie)에서 처음으로 동서베를린의 경찰지도부 간 만남이 이루어졌다.³³ 여기서 관련당국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합의되었고, 접촉수단으로 양측 대표 간에 전화 및 팩스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은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었음에도 여전히 동서독 간의 경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후 베를린 장벽은 서독의 경찰기술단에 의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동서베를린 국경검문소가 설치되었다. 그에 따른 국경관리는 1990년 7월 1일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되어 국경경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³³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26p).

제4장

동서독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제1절 독일통일의 논의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에서 그때까지의 통치방식, 특히 시민에 대한 억압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동독정부를 지탱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는 동독정부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소련 정부가 추진한 ‘변혁(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새로운 ‘개방’과 ‘투명(글라스노스트)’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였다.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동독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국가를 떠받치는 당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증가하였으나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한편으론 동독을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을 거쳐 서독으로 수십만 명이 탈출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대량탈출 러시는 동독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는 매일 수천 명의 동독주민들이 탈출함에 따라 양독 경제가 파탄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론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 동독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반



정권 인사들과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저항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9년 10월부터 대규모 시위의 양상을 띤 라이프치히의 ‘월요데모’였다. ‘월요데모’는 초창기 ‘우리는 국민이다’로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로 통일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동독의 수상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퇴진을 불러왔으며, 동독의 중도개혁 성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권의 출범과 그에 따른 체제개혁으로 이어졌다. 모드로우는 1989년 12월부터 1990년 1월 사이 공산당을 포함한 각 정당, 교회 및 재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³⁴ 개최, 민주적 헌법 개정, 자유총선거 실시, 동독공산당 및 슈타지 해체 등을 결정하였다. 1990년 3월 18일에는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서독과의 조기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가 이끄는 보수적인 ‘독일연합(Allianz fuer Deutschland)’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도 한층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18일에는 동·서독 재무장관 간의 ‘경제·사회·통화협정’이 체결되어 7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동독정부는 서독의 체제에 흡수되었으며, 10월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통일되었다.

독일통일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동서독 경찰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³⁴ 원탁회의는 1989년 동독정부의 붕괴현상이 나타날 때 각 사회 및 정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동독의 현안 및 진로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로 처음에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했으나, 인민의 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당성이 박탈됨에 따라 입법권을 비롯해 기초행정단위에서의 조직업무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제2절 행정체제의 통합

1.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경찰은 행정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찰통합은 행정체제의 통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동서독 간 행정체제³⁵의 통합은 서독의 행정체제가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되는 것, 즉 서독의 체제를 모델로 한 동독지역에서 연방제의 부활, 주(州)행정조직의 구축과 지방자치조직의 구축, 그리고 서독행정기관에 의한 동독 행정인력의 흡수·활용을 의미한다.³⁶ 특히 주(州)제도의 부활을 통한 연방제의 부활은 동독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조속한 독일통일의 지름길로 간주되었다. 이는 1952년 2월 동독의 인민의회가 주(州)를 폐지한 이유가 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 논의를 일축하고 2개의 독일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³⁷

2. 연방제의 부활

연방제의 부활에 관한 논의는 1989년 12월 동독의 인민의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대표가 참가한 ‘원탁회의(Runder Tisc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동독에서 연방제를 재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³⁸ 1990년 3월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총선거에서 승리한 보

.....
³⁵ 동서독의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23p 이하 참조.

³⁶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10p, 11p;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997, 20p 이하.

³⁷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46p.

³⁸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997, 71-72p.



수적 ‘독일연합’의 드 메지에르 수상은 그의 취임사에서 ‘주(州)를 부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일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의 기본조건이며, 동독경제의 성공적 구조개편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주(州)의 부활을 예고하였다. 그에 따라 동독의 인민의회는 1990년 5월 17일 지방자치행정조직을 재도입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90년 7월 22일, 1952년 이전에 존재했던 5개 연방주를 부활할 것을 결정하고 “동독지역 내 주(州)의 형성에 관한 법률(Verfassungsgesetz zur Bildung von Länder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ändereinführungsgesetz’이라고 함)”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당초 1990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0월 3일 통일됨에 따라 조기에 시행되었다.³⁹

이 법률에 따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겐(Thüringen) 등 5개의 신연방주(州)가 신설되었다.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3개 신연방주(州)의 행정체제는 서독의 예에 따라 4계층제를 채택하였다. 즉, 주지사, 주지사실, 중앙부처 등에 해당되는 최상급관청(Oberste Landesbehörde), 그 아래에 상급관청(Landesoberbehörde: 주경찰청, 주통계국, 주법제국, 주재산관리국 등), 중급관청(Landesmittelbehörde: 지방경찰청 등) 그리고 지역관청(örtliche Landesbehörde)으로 조직되었다.⁴⁰ 이러한 행정체제의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주(州)조직정비기구(Bund-Länder-Clearingstelle für die Verwaltungshilfe)”를 설치하였다. 연방정부는 약 200개의 행정관청을 포함하여 약 4,200개에 달하는 관청을 구축하여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서독의 주정부와 동독의 신연방주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³⁹ 통일원,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62p.

⁴⁰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56p.

서독의 공무원들을 신연방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표 1-3〉 서독 공무원의 동독 신연방주 정부기관 파견 현황⁴¹

구분	1991년 말	1992년 4월	1993년	1995년 말
인원(명)	약 10,000명	약 26,000명	약 36,000명	약 35,000명

서독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모집은 원칙적으로 해당공무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과 개인적인 근무의욕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유인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견공무원이 신연방주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연금산정시 각 근무기간의 2배로 산정되었다. 또한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500~2,500 마르크의 생활비용이 지급되었으며, 구 동독지역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기혼자에게는 한 달에 2회, 미혼자에게는 한 달에 1회의 여행경비와 별거수당이 지급되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을 평정할 때 같은 경력의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승진상의 혜택도 부여되었다.⁴²

3. 동독지역 공무원의 인수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동독지역은 신연방주로 편입됨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동독정부의 임용권은 상실되었다. 그렇지만 통일조약 제20조에서는 통일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동독정부의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⁴¹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997, 45p.

⁴²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91-93p.;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1997, 45p.



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동독시절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적 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와 동독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자는 ‘우선 감축대상자(예외적 해고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직무수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소속기관에서 수요가 없어 필요치 않은 자, 기관이 해체되었거나 기타,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어 그곳에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 실직되는 자(정상적 해고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통일독일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었다. 일부 공개된 연방부처 관료의 인수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연방내무부로 인수된 구 동독 관료 중에서 868명은 정상적 해고대상자로, 792명은 예외적 해고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연방국방부로 인수된 관료 중 12,136명이 정상적 해고대상자로, 281명은 예외적 해고대상자로 분류되어 해고당했다. 또한 연방외무부에 근무하기를 희망한 구 동독 외무부 소속 235명의 고위직 공무원에서는 9명만이 재임용되고 나머지는 해고되었다.⁴³

제3절 경찰통합을 위한 논의와 준비

동서독 경찰의 통합도 앞서 살펴본 ‘서독에 의한 동독 행정체제의 흡수’라는 프레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은 공산주의 압제의 도구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통합은 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과제에는 예컨대 조직체계 결합의 문제, 법제 통합, 신연방주에 재임용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그리고 실무적인 영역에서 긴급하고도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현대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의 적응을 위한 경찰관의 민주

⁴³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74p.

화 교육, 양독 경찰 간의 이질성 극복문제 등이 해당된다. 경찰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먼저 그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서독경찰과 동독인민경찰 간의 접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 동서독 경찰 간 접촉과 교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서베를린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곧 일반사람들에게 동서독의 왕래가 자유롭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러한 주민들의 자유왕래에 따른 치안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서독 경찰은 평상시 어떻게 국경경비를 해야 하며,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양독 경찰 간 접촉창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양독 경찰 간의 최초 접촉은 먼저 베를린에서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 11일 서베를린 경찰청장과 인민경찰 고위급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양독 경찰 간 접촉과 교류는 점차 활발해졌다. 양 베를린 경찰 간의 주요한 접촉 및 교류를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89년 11월 11일 14:00,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주변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경통과구역인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서베를린 경찰청장과 동독 중부지역 국경수비대 부사령관과의 짧은 접촉이 있었다.
- ② 1989년 11월 11일 22:37, 서베를린 경찰과 동베를린 인민경찰 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신이 연결되었으며, 무선전신은 23:44에 연결되었다.
- ③ 1989년 12월 20일, 양 베를린 경찰고위급 회의가 동베를린 지역에서 개최되어 ‘12월 21일~22일 야간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의 개방에 따른



- 경찰 배치’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 ④ 1990년 2월 12일 14:00, 베를린 분단 이후 역사상 양 베를린 경찰청장 간 회의가 최초로 동베를린 경찰본부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각 경찰고위지도부를 상설대화파트너로 지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때 동베를린 경찰조직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 특히 경찰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서베를린 경찰에 제공되었다.
 - ⑤ 1990년 4월 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수상경기에 대한 경비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서베를린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isten) 간 최초의 합동근무가 실시되었다.
 - ⑥ 1990년 4월 27일, 동독 내무부장관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과 서독 내무부장관 에리히 패쾀트(Erich Pätzold) 간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서베를린은 양독 경찰 간 업무의 공동수행을 빠른 기간 내에 확대하고자 한 반면, 동독 내무부는 가능하면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 ⑦ 1990년 5월 1일, 동서베를린 경찰 간 ‘공동의 경찰출동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양 베를린 경찰 간에는 연락관이 파견되었다.
 - ⑧ 1990년 7월 초, 서베를린 내무부와 동독의 내무부 대표자로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조치로서 동베를린 경찰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서베를린 경찰과 비교하여 통합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⑨ 1990년 7월 2일부터, 서베를린 경찰교육센터에서 동베를린 경찰지구대 책임자들인 중간간부급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본교육을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가택침입, 약물중독범죄 등 동베를린에서 접해보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 이는

통일을 전후하여 백화점 등 상점에서의 절도⁴⁴, 폭력, 강도, 은행 강도 그리고 무단가택침입⁴⁵ 등과 같이 인민경찰에게는 다소 낯선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⑩ 1990년 9월 25일, 동서베를린은 10월 3일에 예정된 통일관련 축제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력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베를린으로부터 베를린주(州)로의 경찰권 이양의 시기를 10월 3일에서 10월 1일 13:00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2.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가.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

1990년에 들어서면서 독일통일은 ‘역사적 필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해 5월 5일에는 베를린에서 내무장관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양측은 “동서독이 하루 빨리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법적·조직적으로 동화되어야 할 것, 관료와 전문가를 교환할 것, 효율적으로 협력할 것,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여기서 양독 경찰 간 조직의 통합, 경찰관의 상호교육, 공동교육 실시 등의 사안이 합의되었다.⁴⁶

1990년 6월 29일 동서독 내무부장관 회의에서는 동독 신연방주 경찰의 원활한 재건을 위해 서독 연방주(州)와 동독 신연방주(州) 간 자매결연방식에 의한 지원체제가 합의되었다. 이로써 동독의 각 신연방주에서는 베를린

⁴⁴ 절도사건은 9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상점 및 차량절도사건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511p).

⁴⁵ 주로 서독주민 및 서유럽의 다른 국적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90년 전반기에만 84채의 집이 점거되었다.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 5p).

⁴⁶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1996), 119p.



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 통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서독 자매결연주의 경찰 체제를 모델로 삼아 경찰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⁴⁷ 서독 연방주들은 동독의 자매결연 신연방주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파견, 전보 및 각종 물적 장비의 지원, 그리고 동독경찰관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지원을 하였다. 서독 연방주들은 1990년 가을부터 소수의 자문단을 동독의 신연방주에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는 50명에서 100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문단 파견은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나. 베를린 경찰의 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1) 베를린 경찰의 통합을 위한 기획

1990년 7월을 전후하여 동독과 서독이 ‘독일’이라는 단일국가로의 변화와 발전을 가속화함에 따라 양독 경찰의 통합절차에 대한 방안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서독 경찰 간 진정한 통합의 모습은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통합이라기보다 동독지역에 새로이 신설된 5개 신연방주에 서독의 경찰체제를 이식한 것이었다.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경찰조직, 통합과정에서의 치안확보, 인력심사 및 이를 통한 인력통합, 무기 등 장비의 통합 등의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⁴⁷ Otto Diederichs, Stand des Polizeiaufb p. in den neuen Bundeslaendern: Eine Uebersicht, in: Bürgerrechte & Polizei(Nr. 38/1991), 17-21p.

표 1-4〉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제⁴⁸

과제	주무부서	주요역할	문제점	해결방안
통합 구조개편	-서독 연방내 무부 및 베를 린경찰청 -동독 내무부 및 동베를린 인민경찰본부	-경찰청장 -프로젝트그룹 -7개 분야 실무그 룹 등	-전문지식과 접촉 결여 -적으로서의 이미지 -주민들의 상이한 수 용정도 -인수를 위한 준비작업 -광범위한 현황파악	-조기접촉 -직접적인 대화수단 의 구축과 확대 -실무그룹의 구성 -회의개최 횟수의 증가 -상세한 실무지도
치안확보		경찰 지휘관과 현지인력	-국경의 치안문제 -공항 심사절차	-실행 가능한 대안의 신속한 이행
인력심사		인사선별위원회	-통일 전 국가안전부 와의 접촉가능성 혹 은 국가안전부에서의 활동 심사	-심사절차 -광범위한 인사설문지
인력통합		내무부와 경찰청장 산하 모든 직급의 경찰	-교육격차 -주민들이 보이는 경 찰에 대한 신뢰도의 격차 -보수격차	-3단계 교육프로그램 -혼합근무 -새로운 장비와 제복 의 지급
무기 등 장비통합		베를린경찰청 임무 수행지원국, 인민경 찰본부 등	-통신시설의 호환성 부족 -인민경찰 무기 및 차 량의 안전성 문제	-서베를린 경찰의 통 신망 사용 -안전성에 문제가 있 는 무기 및 차량의 사용중지 -차량의 색상 및 표지 의 통일 필요

(가) 실무그룹의 설치

베를린에서는 경찰통합을 위하여 프로젝트그룹이 구성됨과 동시에 7개 분야, 즉 ① 치안경찰, ② 수사경찰, ③ 특수경찰, ④ 장비와 기술, ⑤ 인사, 교
육과 재교육(연수), ⑥ 법, ⑦ 조직 등의 분야에 대한 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

(나) 실무그룹의 활동

통합작업은 먼저 현황(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양독 경찰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통합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대책

⁴⁸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28p 참조.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책은 사전조치⁴⁹, 단기조치⁵⁰, 중장기 조치⁵¹로 구분되어 총 160여개의 리스트로 작성되고 항목별로 준비되었다.⁵²

1990년 7월 3일 서베를린 내무부는 경찰 실무그룹에게 ‘경찰통합작업의 개시’를 통해 통합작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³

- 실무그룹의 작업은 기밀이다.
- 동베를린 인민경찰을 서베를린 경찰의 모델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상계획은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말까지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다. 관련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로 양독 경찰 간 차이점들을 비교한다. 8월 첫째 주까지 목적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9월까지 베를린 시의 경찰 통합안을 마련한다.
- 실무그룹은 일주일에 2회 소집된다. 실무그룹은 각 그룹의 대표자를 정한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실무그룹이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공유하고 상호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각 실무그룹에서는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통합준

⁴⁹ 실무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조치’는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 이내에 준비되거나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있어서 1990년 12월로 예상되는 통합된 하나의 경찰청이 설치되는 시점에 그 기능수행이 보장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실용적이면서도 과도기적인 해결방안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동베를린의 치안상태의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서베를린 경찰이 전체 도시의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비용문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⁵⁰ 1991년까지 실행되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⁵¹ 1992년-1994년 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며, 중장기적 조치를 통해서 계획된 최종 목적이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⁵²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486p.

⁵³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904p;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52. 351p 이하 참조).

비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예컨대 치안실무그룹에서는 ① 관할구역 근무(무선장비 장착 순찰차량의 출동업무 포함), ② 도로교통, ③ 수상경찰, ④ 기마경찰과 경찰견 담당경찰, ⑤ 항공안전, ⑥ 헬리콥터 팀, ⑦ 대중교통(지하철, 전철), ⑧ 외국인 노동지역, ⑨ 수감자 감시, ⑩ 시설보호, ⑪ 경찰의 용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장비분야 실무그룹에서는 피복, 무선기기 장착 순찰차량의 장비, 카메라, 휴대용 금속 탐지기, 각종 서식과 지침서들, 전문서적과 지도, 가구, 타자기, 복사기, 녹음기, 표지판, 도장과 직인 등의 비품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통합의 경우에 필요한 장비수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⁵⁴ 실무그룹 ‘수사경찰’분야에서 제시한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조치는 다음과 같다.⁵⁵

- 동서베를린 경찰통합의 경우, 단일한 법률을 전제로 해야 한다.
- 한 사람의 경찰청장을 둔 하나의 경찰청만이 존재한다.
- 동베를린 형사경찰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특히 형법과 기본권에 관한 경찰직무). 동베를린 경찰의 근무지에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에 관한 법률과 주석서 및 수사경찰 관련규정을 비치해야 한다.
- 동베를린의 인력은 새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인력을 1:1의 비율로 신속히 교환해야 한다.
- 단일한 무선 주파수를 결정하고, 팩스와 범죄투쟁을 위한 정보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신고의 접수는 동베를린에서도 원칙적으로 치안경찰이 수행한다.
- 공통의 신분증을 마련한다.

⁵⁴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4. 99-101p).

⁵⁵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906p.



(다) 실무그룹 활동의 한계

당초 경찰의 통합은 1991년 1월 초 내지는 중순에서야 현실화될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1990년 10월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90년 8월 22일 현황조사 작업을 끝으로 프로젝트그룹의 활동을 종료하고 신속한 통합을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하는 등 당초의 통합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통합이 앞당겨짐에 따라 경찰통합작업과 함께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베를린 전체의 경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⁵⁶ 경찰통합을 위한 작업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통합작업과 병행하여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 베를린경찰의 통합을 위한 베를린 인민경찰의 적응교육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양쪽 경찰이 하나의 단일지휘체계 아래 근무할 것에 대비하여, 동베를린 인민경찰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법률교육 및 경찰활동에의 적응을 위한 실무연수가 요구되었다. 인민경찰에게는 민주주의적 산업사회의 대도시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실상을 문제점들과 함께 전수해 주는 것이 특히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하여 경찰통합을 위한 실무그룹은 인민경찰관들에게 서독의 법규범을 가능한 한 집중적이며 효과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즉 과도기에 실현 가능한 ‘집중프로그램(Crash program)’을 개발, 시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를 간략히 소개한다.⁵⁷

⁵⁶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0p).

⁵⁷ 통일부,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9. 121-125p).

① 기본전제

- 이 프로그램은 통일 이전의 ‘출발단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향후 인민경찰에 대한 계속적이며 심도 있는 교육은 서독 법체제에의 동화, 중앙집권적 조직의 해체, 동독 인민경찰 간부들의 고용승계, 인민경찰의 위상문제, 기타 요소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 이 교육은 베를린 인민경찰 지역 지구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첫 번째 교육은 자유민주국가의 기준이 되는 법만을 가르친다.
- 교육생은 인민경찰 지구대의 초급 및 중급 간부를 중심으로 총 300명이며, 교육기간은 4개월이다.
- 교육은 199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한다.

② 경찰통합의 출발점으로서의 ‘기본교육’: 이 프로그램은 ‘자립을 돕는다’는 키워드 아래 다음의 4단계로 실무관련성이 강한 이론교육에 서부터 시작한다.

-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포함한 간부급 그룹에 대해서는 연수를 위한 기초세미나가 실시된다.
- 그 외의 그룹에 대해서는 예비교육 차원에서 인민경찰관들을 청강생 자격으로 세미나 및 다른 여러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 교육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교육장 설비, 실습과 자습을 위한 설비, 세미나 참가자들을 위한 수업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한 100,000 마르크의 추가비용이 지원된다.

③ 기초세미나(Grundseminar)가 끝난 후에는 전문 분야별로 단기과정 재교육세미나(Aufbauseminar)가 이어진다. 예컨대 치안경찰의 경우 지휘론, 출동이론, 수사경찰의 경우 범죄학과 범죄수사학과 같은 재교육 세미나가 있다.

④ 추가적으로 동베를린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의 통제’라는 주제로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미나를



준비한다.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 집회, 행진에 대비한 경찰의 준비와 실행, ㉡ 평화롭지 않은 시위 특히 일정장소를 점거하는 행위의 진압, ㉢ 집단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 대국민 홍보와 경찰력 투입의 단계적 감소전략, ㉤ 노동쟁의 및 파업 등이다.

3. 경찰통합의 준비활동으로서 동독 경찰의 노력과 조직개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동서독 간 국경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치안은 여전히 동독 인민경찰의 임무였다. 동독의 인민경찰은 한편으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과 혼란으로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론 당시까지의 감시와 강압적인 통제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아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경찰은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기구에서 탈피하여 민주법치국가에 걸맞은 경찰로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인민경찰은 통일독일의 민주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경찰로 조직을 개편해 나갔다. 이러한 동독의 인민경찰에게 서독경찰은 동독의 경찰이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가. 동독 인민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노력

동독의 인민경찰은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치안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행사들의 평화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베를린 장벽이 붕

괴되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및 전반적인 범죄 증가현상⁵⁸에 대처해야 했다. 인민경찰이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⁹

- 권력남용, 뇌물, 그리고 선거에서의 부정. 특이한 점은 범죄의 행위자 대부분이 전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최고 간부, 동독의 국가지도부였다는 점
- 범죄행위가 잔혹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동독지역뿐만 아니라 서독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사태. 예컨대 축구경기 이후 거리에서의 폭력, 시민과 경찰에 대한 스킨헤드의 조직화된 폭력, 수백 명이 가담하는 대규모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폭력행위자들이 형사소추를 피해 도주하였다는 점
-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가 증가하였고, 집회·시위를 관리하던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차량이 불타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의 증가
- 반유대주의 낙서들의 등장과 전체주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또는 외국인들 간의 폭력
- 불법적 주택점거의 증가. 주택점거자의 다수는 서독 또는 서유럽의 시민들이었다는 점
- 동독의 화폐를 사용한 대량의 경제범죄와 불법적 거래 증가
-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의 증가 및 외국인 고용인들의 동독 시민권 취득 신청의 대폭 증가
- 도시 내에서 구걸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등장

⁵⁸ 동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비해 폭력은 481.1%, 강도·공갈은 159.8%, 차량절도 등 79.3%, 재산피해 71.3%, 절도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 13p).

⁵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 4-5p).



그 외에도 인민경찰은 국가안전부의 해체로 공공건물 및 시설물과 그곳에 보관된 자료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또한 공안기관에서 사용하던 무기와 실탄이 불법 유출됨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를린에서만 총 8백 40만 발의 휴대용 무기의 실탄, 2,800개의 지뢰, 31개의 소이탄 등의 무기와 실탄을 수거하는 조치가 행해졌다.⁶⁰

한편, 장벽붕괴 및 국경개방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민경찰은 서독의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나아가 양독 경찰은 범죄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상호협력과 더불어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양측 간의 협력은 1990년 3월 2일 연방내무부에 의해 양독 경찰·검찰·법원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임시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1989년 12월 15일 서독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내무부에 보고하고,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점은 1990년 3월 동독 자유총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동독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1990년 4월 18일에는 동서독 내무부장관 간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회담은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이 회담에서 동독의 내무부장관은 전임 서독 연방범죄수사청장(1981~1990)이었던 하인리히 보그(Heinrich Boge)를 자문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⁶¹

나. 동독 국경경비대의 개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불과 이틀만인 같은 달 11일 10시 31분에 동서독을 분단하고 있던 국경지역은 철폐되었다. 동독 내무부에서

⁶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 4-5p).

⁶¹ “Das Ende der Volkspolizei, Chronologie eines Zerfalls,”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7(1990), 11p.

는 그에 따라 국경수비 조직을 서독식 국경수비대로 재조직할 것을 계획하였다.⁶² 동서독 내무부에서는 향후 동독의 국경수비를 담당하게 될 인적요소의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제1차 기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교육은 주로 서독의 국경수비학교와 국경수비대의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⁶³ 이를 토대로 1990년 4월 드 메지에르 동독정부는 동독의 국경경비대를 서독식 국경수비대로 개편하고, 기존의 국가안전부(국가공안부) 소속의 여권 통제인력을 흡수하여 8,600명 규모의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였다. 서독 국경수비대는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원활한 개편작업을 지원하였다. 동독 국경경비대는 1991년 1월 1일부터 국경수비를 담당하게 될 대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⁶⁴

- 동독에 주소를 가진 동독의 시민
- 항상 헌법 질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무에 필요한 인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형벌 전과가 없거나 현재 수감중이 아닌 자
- 정상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자
-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교육과 이력을 갖춘 자
- 장기간 국경수비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자

한편, 1990년 7월 1일 동서독 내무부장관은 독일 내부에서의 인적통제를 폐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사실상 동서독 사이의 국경수비 임무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⁶² Walter, “Wertewandel-der Weg der Grenzsicherungsorgane,” Die neue Polizei 1991, 199p 이하 참조.

⁶³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 1996, 119p.

⁶⁴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 1996, 119-120p.



다. 중앙범죄수사청(Zentrales Kriminalamt der DDR: ZKA) 신설

1990년 2월 5일 동독 내무부는 동독의 수사경찰을 서독식 연방경찰조직으로 재조직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동독 중앙범죄수사청(Zentrales Kriminalamt der DDR: 이하 ‘ZKA’)을 동베를린에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1990년 1월 원탁회의의 결과로서 슈타지가 해체됨에 따른 치안공백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다.

ZKA로의 개편은 단지 조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방체제에 편입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ZKA는 당시 서독의 BKA를 모델로 하여 조직되었다. 1990년 7월 27일 동독지역에 주(州)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주(州)설치법(Verfassungsgesetz zur Bildung von Länder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ändereinfuehrungsgesetz)”이 통과됨으로써 ZKA는 후일 구성될 주(州)범죄수사국들과 협력하여 동독 전역을 아우르는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3일 과도기 하의 경찰법으로 제정된 “경찰의 과제와 권한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ufgaben und Befugnisse der Polizei: 이하 ‘PAG’)에도 ZKA의 임무와 법적 지위가 규정되었다.⁶⁵ 동 법률 제81조는 “ZKA는 동독지역의 수사경찰 업무에 대한 중앙관서이다. ZKA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수사경찰 임무와 범죄예방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ZKA는 동독지역의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아 새롭게 생겨난 신연방주의 경찰기관과 협력·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⁶⁶ ZKA가 설립된 때부터 국경개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양독 경찰의 공동대응, 범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양독 경찰의 협력, 동독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서독의 연방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ZKA는 과도기 조직으로 독일통일과 더불어 그 기능이 상실되고, 이후 통일 후 동독지역 신연방주의 공동범죄수사국(Gemeinsames Landeskriminalamt: GLKA)으로 재조직되었다.

⁶⁵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004, 485p.

⁶⁶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 1996, 114p.

라. 과도기적 경찰업무법(PAG) 제정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에서는 1990년 10월 14일에서야 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주(州)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경찰권도 베를린⁶⁷을 제외하고는 이날에서야 비로소 각 주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경찰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찰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주(州)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권은 행사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90년 9월 13일 동독의회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에서 적용될 과도기적 경찰법으로서 「경찰업무법(PAG)」을 제정하였다.

과도기적 경찰업무법은 서독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Musterentwurf für ein einheitliches Polizeigesetz des Bundes und der Länder)과 더불어 당시 까지 가장 최근 개정되었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찰법을 모범으로 하였다. 따라서 과도기적 경찰업무법에서는 경찰과 일반질서행정청의 분리는 물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 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총기에 의한 사살 규정의 폐지, 그리고 인권보호를 ‘경찰 최고의 의무’로 규정한 것 등이다.⁶⁸ 그러나 동독에서 독일통일로 가는 과도기 기간 동안 적용될 법이었다는 점에서, 예컨대 철도경찰업무를 담당하던 수송 경찰은 독일통일과 동시에 해체되고 그 업무는 연방국경수비대에서 인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도기적 경찰업무법은 신연방주에서 새로운 경찰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⁶⁷ 베를린의 경우 독일통일 당일부터 서베를린의 경찰법이 동베를린에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동베를린 경찰법은 1990년 10월 2일 자정을 기해 폐지되었다.

⁶⁸ Heiner Busch, Nach Art des Musterentwurfs-das Polizeiaufgabengesetz der DDR,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8(1990), 15p.

동서독 경찰의 통합

제1절 서설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독일통일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동독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통일조약 제3조에서는 동독을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시민의 보호와는 관계없이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했던 경찰 등 공안기관들이 더 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경찰에게 그것은 통일독일의 경찰이 일반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서독경찰에 의한 동독경찰의 재편을 의미한다. 서독의 경찰은 동독의 경찰이 따라야 할 경찰상이며 자문가로서 통일경찰의 지도부라는 지위에서 동독경찰의 재편작업을 추진하였다.

제2절 통일독일의 치안상황

급작스러운 체제전환을 맞이한 독일에서는 정치·사회적 계층구조의 변혁,

통일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담,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 및 이질화된 양 지역의 사회문화 등으로 인한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심각한 범죄문제는 특히 동독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2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안의 첫째 요인으로 서독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47%)을 든 반면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범죄증가’(68%)를 들었다.⁶⁹ 범죄의 증가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슈테른(Stern)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슈테른지는 1992년 이후 담배밀수로 매년 평균 70여 명이 살해되었고, 20만 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20만 명 정도의 헤로인투약자가 발생하면서 1,6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⁷⁰ 이처럼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신연방주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재건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1. 범죄의 발생추이

통일 전후 독일의 인구·범죄발생 빈도·범죄 발생률 추이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는 1991년과 1992년까지의 동독지역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여 통일 직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⁷¹ 그렇지만 1991년과 1992년의 범죄증가율을 보면 서독지역만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직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1993년의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93년 구 서독지역(베를린 전역 포함)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5,347,78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8,032

⁶⁹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1992, 271p.

⁷⁰ Mathes, Werner, “Organisierte Kriminalität: Wir stehen vor einem Generalangriff, in: Stern, Nr. 48, 1996.

⁷¹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3, 5p.

건에 달하는데, 구 동독지역의 범죄발생은 총 1,402,83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9,748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죄증가율은 1994년까지 계속되다 그 이후 부터 점차 낮아져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1-5) 1985년-1993년 간 독일의 인구·범죄발생 건수·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추이⁷²⁾

연도	인 구	인구증감율	총범죄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	전년대비 범죄발생증감율
1985	61,015,300		4,215,451	6,909	+2.3
1986	61,047,700	+0.1	4,367,124	7,154	+3.5
1987	61,170,500	+0.2	4,444,108	7,265	+1.6
1988	61,418,000	-	4,356,726	7,094	-
1989	61,989,800	+0.7	4,358,573	7,031	-0.9
1990	62,679,000	+1.1	4,455,333	7,108	+1.1
동독지역을 제외한 서독지역 기준 통계					
1991	65,001,400		4,752,175	7,311	
1992	65,765,900	+1.1	5,209,060	7,921	+8.3
1993	66,583,200	+1.2	5,347,780	8,032	+1.4
동독지역 포함한 통일독일 기준 통계					
1991	79,753,200		5,302,796	6,649	
1992	80,274,600	+0.7	6,291,519	7,838	
1993	80,974,600	+0.8	6,750,613	8,337	

표 1-6) 1993년 독일 신연방주별 범죄발생 건수⁷³⁾

연방주(州)	인 구	범죄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
브란덴부르크	2,542,651	328,028	12,90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864,980	257,259	13,794
작센	4,640,997	354,516	7,639
작센-안할트	2,796,981	302,089	10,801
튀링겐	2,545,808	160,941	6,322
신연방주 소계	14,391,417	1,402,833	9,748
독일 전체	80,974,632	6,750,613	8,337

⁷²⁾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3, 15p.

⁷³⁾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3, 34p.

한편 체제전환기의 범죄발생은 이와 같이 증가한 반면, 범죄자의 검거를 통한 범죄의 해결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총 범죄발생 4,455,333건 가운데 2,093,130건의 범죄를 해결하여 47.0%의 검거율(1989년에는 47.2%)을 보였는데, 1993년에는 총 6,750,613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2,957,135건을 해결하여 43.8%의 검거율을 보여주었다.

표 1-7) 1993년 독일 연방주별 범죄해결율⁷⁴

연방주(州)	범죄발생 건수	범죄해결 건수	범죄해결율(%)
바덴-뷔르템베르크	619,352	325,258	52.5
바이에른	669,671	414,016	61.8
베를린	565,773	231,900	41.0
브레멘	110,498	46,161	41.8
함부르크	284,414	112,833	39.7
헤센	494,402	209,623	42.4
니더작센	650,151	303,353	46.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377,360	584,906	42.5
라인란트-팔츠	236,175	112,084	47.5
자알란트	67,939	30,745	45.3
슈레스비히-홀스타인	272,045	115,211	42.3
소계(베를린 포함 구 서독 연방주)	5,347,780	2,486,090	46.5
브란덴부르크	328,028	102,590	31.3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257,259	74,319	28.9
작센	354,516	111,116	31.3
작센-안할트	302,089	115,703	38.3
튀링겐	160,941	67,317	41.8
소계(신연방주)	1,402,833	471,045	33.6
합계(독일 전체)	6,750,613	2,957,135	43.8

2. 범죄피해의 신고수준

구 서독 및 통일독일에서는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서신, 전화 등의 방법으

⁷⁴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3, 65p.

로 신고하면, 경찰은 반드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구 동독에서는 경미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 직장 내에서 또는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시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의 범죄신고율은 서독지역에서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⁷⁵ 그런데 이러한 범죄신고율의 차이는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표 1-8) 통일 이전 4년 동안 및 통일 이후 1년 동안의 범죄피해신고율⁷⁶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양 지역의 범죄 신고율 격차
	피해자 수	신고 수	신고율 (%)	피해자수	신고수	신고율 (%)	
통일 이전 4년 동안	617	427	69.2	1,179	719	61.0	-8.2
통일 이후 1년 동안	335	206	61.5	623	311	49.9	-11.6

제3절 신연방주(州)의 경찰통합

1. 경찰권의 귀속

독일의 통일은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통일과 동시에 서독의 기본법 체계가 동독지역의 5개 주에도 적용되었다.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된 동독 인민경찰의 경찰권도 동베를린과 동독지역 신연방 5개주로 각각 이양되었다. 다만 베를린 지역은 10월 3일로 예정된 통일축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한 안전문제로 1990년 10

⁷⁵ 최선우·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06, 359p.

⁷⁶ 최선우·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06, 360-362p.

월 1일 13:00를 기준으로 동베를린의 경찰권이 서베를린으로 인계되었다.

2. 새로운 경찰법 제정

동독지역 신연방 5개주에서는 1990년 10월 14일 선거를 통해 주(州)정부 구성을 마침에 따라 이날 경찰권도 새로운 주정부에 귀속되었다. 신연방 5개주에서는 주(州) 의회 선거 및 주 헌법 제정 이후 자매결연주(州)의 경찰법과 독일의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을 모델로 경찰법 제정을 서둘렀다. 경찰법정은 주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는 1991년 3월 2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에서는 1992년 8월 15일, 작센-안할트주(州)에서는 1991년 3월 1일, 작센주(州)에서는 1991년 7월 12일, 튀링겐주(州)에서는 1992년 6월 13일 각각 새로운 경찰법 내지 경찰조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로써 동독 인민경찰의 업무 중 일반경찰업무는 신연방주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수송 및 항공경찰업무는 연방국경수비대로 이관되었다. 또한 소방업무와 여권 및 주민등록업무, 재소자관리업무(교정) 등은 경찰업무에서 분리되어 소관행정부서로 이관되었다. 연방소관 업무인 독일국경수비 및 연방차원의 범죄수사업무는 연방경찰조직인 연방국경수비대 및 연방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3. 신연방 지역에서의 경찰조직의 재건

동독의 인민경찰과 서독의 경찰은 크게 연방경찰과 주(州)경찰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가.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연방경찰 차원에서의 통합은 주로 구 동독 국경경비대의 독일 연방국경수비대로의 통합, 통일범죄중앙수사부의 설치 등의 작업이 추진되었다. 신연

방주의 주(州)범죄수사청의 신설 부분도 이 부분에서 다룬다. 주범죄수사청의 신설은 주(州)경찰 차원의 통합작업이지만, 동독지역 신연방 5개주의 경우 중앙범죄수사국이 이미 통일준비기에 설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재조직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방경찰제도의 통합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국경경비업무의 「연방국경수비대」로의 통합

동독의 국경경비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4월 이미 서독식 국경수비대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동독의 국경경비대는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BGS-Ost)에 편입되었다.⁷⁷ 이 동부지역대는 서부(구 서독) 국경수비대의 모델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대는 3개 출동부대, 1개 통신대, 1개 국경수비 소합대, 1개 비행중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8,000명(실제인원 7천여 명)의 경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⁷⁸ 다만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 지휘부의 5%는 서독 연방국경수비대에서 파견된 경찰관들로 채워졌다.

한편 통일 당시 구 동독 국경수비대원 7천여 명은 자동적으로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로 편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모든 대원이 연방국경수비대원으로 재임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통일조약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구 동독 국경경비대) 대원의 근로관계를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또한 통일조약 제1부속문서 제19장 사항 A 제3절 1번에서 다음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인권 또는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자, 특히 1966년 12월 19일자 시

⁷⁷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17p.

⁷⁸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대논문집 제16집(1996), 120p.

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1948년 12월 10일자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을 침해한 자

- ㉞ 슈타지를 위해서 활동했던 자. 구 동독의 국경경비대는 국경부대, 인민경찰, 수송경찰, 인민군대, 여권·주민증 검사요원 및 요인보호경찰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슈타지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여권·주민증 검사요원과 요인보호경찰은 사실상 구 동독의 슈타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임용은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사통과를 전제로 했다. 재임용 여부의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1명의 면담관(경정·경감급), 1명의 서기(경사 이하급), 선거로 선출된 1명의 위원 또는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심사대상 국경수비대원이 이 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그에게 재임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2) 신연방 지역의 「주(州)범죄수사국」의 창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성사됨에 따라 동독지역 신연방 5개주는 동독의 ZKA를 인수하여 「공동범죄수사국(Gemeinsames Landeskriminalamt, 이하 ‘GLKA’)」으로 개편, 운영하였다. 이는 통일조약 제1부속문서 제2장 사항 영역 C(공공의 안전) 제3절 제2호에 따라 신연방주에서 독일의 BKA 법에 근거한 주범죄수사청을 설립할 때까지 동독지역의 공동범죄수사국으로서 계속 존립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GLKA는 동독의 슈타지가 해체된 직후인 1990년 2월 5일 내무부 산하에 신설되었는데, 인적·물적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슈타지의 변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⁷⁹ 이는 GLKA의 구성원 대다수가 슈타지 요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으로, 즉 슈

⁷⁹ Bernhard Gill, Das Gemeinsame Landeskriminalamt der fünf neuen Länder, Bürgerrechte & Polizei 38, 1991, 34p.

타지 요원에 대한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GLKA는 지휘부 및 6개 분야(행정, 정보통신, 범죄수법, 수사·조사, 형사 기동대, 보안)에 총 607명의 수사경찰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방범죄수사청 BKA와 각종 범죄정보의 교환, 신연방주에서의 범죄수사 및 예방, 수사력 지원, 경찰전산망 운영, 범죄통계작성과 신연방 주(州)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주범죄수사청 신설은 이를 위한 기획단(Projekt-gruppe)이 설치되어 추진되었다. 기획단은 공동범죄수사국장, 신연방 주범죄수사국의 각 참모,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파견자, 연방수사국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5개 분야(인사·교육·예산 등 기본업무; 광역범죄수사업무; 범죄수법; 정보 및 전산; 범죄예방업무)로 나누어 편성되었다.⁸⁰ 이 기획단에서 주(州)범죄수사청의 기본모델을 확정하고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및 구 서독 연방자매주(州)로부터 전산시설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주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였다.

신연방 5개주에서는 서독의 자매결연주와 BKA의 지원을 받아 1991년 12월 1일 작센주(州)의 주(州)범죄수사국 신설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초에는 나머지 신연방 각 주에 주(州)범죄수사국을 설치하였다.⁸¹ 이에 따라 GLKA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해체되었으며, 소속인원 639명은 본인의 지원에 따라 신연방주 경찰청이나 사기업에 취업이 알선되었다. GLKA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술과 장비 및 자료는 5개 신연방주의 합의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일부는 BKA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3) 「통일범죄중앙수사부」의 설치

독일통일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행된 여러 유형의 불법에 대한 청산작업을 추진해야 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구 동독지역에

⁸⁰ Bernhard Gill, Das Gemeinsame Landeskriminalamt der fünf neuen Länder, Bürgerrechte & Polizei 38, 1991, 34-39p 참조.

⁸¹ 작센주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zei.sachsen.de/lka/3653.htm>) 참조.

서 법치국가적 질서의 구축은 단순히 구 동독지역에 새로운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동독시절 행해졌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은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더불어 구 동독 공산정권 담당자 및 체제불법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⁸² 이처럼 동독 지역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청산⁸³을 위하여 통일독일은 1991년 베를린에 통일범죄중앙수사부(Zentrale Ermittlungsgrupp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를 설치하였다. 통일범죄중앙수사부는 검사 80명, 수사경찰 340명(베를린 130명, 연방 40명, 주 17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통일범죄중앙수사부는 동독정부 및 통일관련 범죄를 처리하였는데,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구 동서독 국경 및 베를린 장벽에서 발생했던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총격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 둘째, 실정법에 어긋나는 판결, 재판상의 부정,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법률위반행위, 셋째, 불법 체포 및 구금, 개인의 인권침해 등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던 슈타치의 모든 행위, 넷째, 구 동독의 정당, 사회단체 및 국고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 다섯째, 선거부정행위 등이 통일범죄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이었다.

통일범죄중앙수사부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었는데, 그때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수사대상 62,000건 가운데 22,000건을 범죄의 개연성이 큰 범죄로 인식하여 수사한 후 1,065건을 범죄행위로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

⁸² 박강우,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109p.

⁸³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동독정권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동독법에 근거하여 동독의 역사바로잡기를 시도한 바 있다. 1990년 5월 10일 기준 180건의 고발을 접수받아 해당자 1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38명을 권력남용과 부패혐의로, 4명을 선거 조작 혐의로 처벌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의 주체인 동독정권이 불법을 청산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정의가 묵살되고 가해자들이 통일독일로의 수평적 권력이동을 통해 통일독일에서도 정치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동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구 서독정부에 의한 과거청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통일조약에서는 제17조에서 동독정부를 불법국가로 규정하고, 제8조에서 서독의 형법이 통일 후 동독에 확대 적용됨을 명시하여 동독정부의 불법에 대한 과거청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청산의 문제 가운데 특히 문제시되었던 것은 동독이 외국은행 계좌에 보관했던 자금의 처리문제였는데, 수사결과 그러한 자금이 수십억 마르크에 상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⁸⁴

나. 신연방주(州) 경찰조직의 재건

(1) 서독의 연방주와 신연방주 간 자매결연 체결방식에 의한 지원

동독지역 신연방주에 대한 행정 및 치안제도 등의 구축을 위한 지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 연방주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연방 5개주는 서독의 자매결연주(州)를 모델로 삼아 경찰의 민주화, 현대화 및 이를 통한 경찰조직의 재건을 추진하였다. 이는 동서독 경찰 간 통합이 서독연방주의 경찰조직과 기능을 신연방주에도 확대·적용한다는 “확대·혼용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위하여 통일조약에서도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의 ‘행정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자문인력 파견을 통한 지원을 촉진시켰다. 동독 신연방주와 서독 연방주 간 자매결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⁸⁵

표 1-9) 동독 신연방주와 서독 연방주 간 자매결연 현황

동독 신연방주	서독 연방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알란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작센(Sachsen)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니더작센
튀링겐(Thüringen)	헤센

⁸⁴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26p.

⁸⁵ Otto Diederichs, Stand des Polizei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Übersicht, in: Bürgerrechte & Polizei Nr. 38(1/1991), 17-21p.

서독의 자매주에서는 신연방주별로 50~90명의 경찰관을 1991년 초부터 3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전보하였는데, 이들 파견경찰관들은 자문가로서 각급 경찰관서 지휘부 및 핵심부서에 배치되었다. 파견경찰관은 기본봉급 이외에 별거수당과 여행경비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인사상 경력평정시 가산점의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에 파견된 자문가(파견경찰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⁸⁶

이러한 각종 경제적·인사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출형식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서독에 비해 열악한 동독의 제반 사회적 여건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외에도 동독경찰의 새로운 법률제도에 대한 무지 그리고 과거의 비자율적인 업무태도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자매주로부터 신연방주로의 경찰관의 파견과 상주는 동독경찰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파견경찰관의 존재 자체가 동독경찰의 위상하락을 의미했고, 또한 점령군의 대표로 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파견경찰관은 비자발적인 차출형태로 선발되다 보니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행성 근무형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연방주에 대한 서독 자매결연 주(州)의 지원은 인적분야에 머물지 않고 물적 지원도 뒤따랐다. 예를 들어 튜링겐주(州)에 대해 헤센주(州)의 물적 지원을 살펴보면, 순찰차량, 모터사이클, 무전기 등 통신시설, 사무실집기, 전문서적, 방패, 방탄조끼 등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물적 지원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자매주인 헤센주(州)에서 부담하였다.⁸⁷

⁸⁶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494p.

⁸⁷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495p.

(2) 신연방주(州) 경찰조직의 구성⁸⁸

(가) 브란덴부르크주(州) 경찰조직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주(州)내무부 산하에 주범죄수사청과 주경찰청이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기동경찰국, 경찰학교, 기술 및 공급지원대를 두었다. 경찰서의 설치에 인구 2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Potsdam경찰서, Neuruppin경찰서, Luckenwalde경찰서, Frankfurt/Oder경찰서, Eberswalde경찰서 그리고 Cottbus경찰서 등 6개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경찰력은 전체 약 10,000명에 이르렀다. 특이한 것은 구 동독시절 주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체 경찰관의 1/3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은 동독 인민경찰 출신으로 재임용된 경찰관으로 채워졌으며 구 서독출신의 경찰관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연방 다른 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경찰조직

주내무부 제4국에 주범죄수사청과 주경찰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치안경찰국, 기동경찰국, 수상경찰국, 경찰학교를 두었다. 전체 경찰력은 약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작센-안할트주(州) 경찰조직

작센-안할트주에는 구 동독시절 막테부르크 할레 경찰국을 재편하여 내무부 제2국에 주경찰청과 주범죄수사청이 설치되었다. 그 아래에 수사경찰국과 관할 인구에 따라 3개의 경찰서와 2개의 지역경찰서 및 49개의 파출소, 그리고 1개의 수상경찰서와 경찰항공대를 설치하였다. 전체 경찰력은 약 10,000명에 달했다.

⁸⁸ Otto Diederichs, Stand des Polizei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ürgerrechte & Polizei Nr. 38(1/1991), 17-21p 참조.

(라) 작센주(州) 경찰조직

작센주에는 내무부 제3국 산하에 주경찰청과 주범죄수사청이 설치되었다. 주경찰청 산하에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캄니츠 등에 3개의 지역경찰청을 두고 그 아래에 13개 경찰서를 두었다. 또한 주범죄수사청, 기동대, 경찰직할대, 경찰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경찰력은 약 1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튜링겐주(州) 경찰조직

내무부 산하에 치안경찰국, 행정경찰국으로 구성된 주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기동대와 7개 경찰서, 43개 파출소와 교통순찰대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주범죄수사청을 두었다. 전체 경찰력은 약 9,500명에 달하였다.

제4절 베를린 경찰의 통합

베를린의 경우 1990년 10월 1일 13:00에 동베를린 경찰은 서베를린에 인수되었다. 동독의 어떤 신연방주(州)에서도, 다른 어떤 행정기관도 베를린 경찰통합의 경우처럼 그렇게 초기에, 그리고 이처럼 광범위하게 통합이 시작된 곳은 없었으며, 이러한 통합과정은 서베를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경찰통합의 기본원칙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⁸⁹

- 경찰관서의 통합은 서베를린 경찰청에서 통합지휘
- 통합경찰청(서베를린 경찰청)의 지휘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

⁸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496p).



- 동베를린 지역 경찰서의 관할권은 서베를린 경찰서의 관할에 배속
- 동베를린 11개 경찰서의 기술 장비 등 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
- 동베를린 경찰의 관할권은 즉시 소멸

2. 경찰통합의 추진

베를린 경찰의 통합은 베를린 내무부에 설치된 경찰통합을 위한 프로젝트그룹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종료될 수 있었다.

가. 서베를린 경찰청의 동베를린 경찰권 인수

통일과 동시에 구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에 따라 동베를린 경찰권은 베를린 통합경찰청으로 이양되었다. 경찰권이 이양됨에 따라 11개 인민경찰서, 수사·치안경찰, 국경경비대 등 동베를린 인민경찰기관도 베를린 통합경찰청에 배속되었다. 그와 동시에 동베를린 인민경찰 본부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베를린 통합경찰의 지휘권은 베를린 주(州)경찰청장에게 있으며, 경찰청장을 대리하는 부청장 1인을 두었다.

나. 관할의 확장

서베를린 경찰은 1990년 10월 1일 동베를린 관할지역을 흡수함으로써 관할구역상으로는 80%, 인구상으로는 60%의 증가된 치안수요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별도의 경찰관서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 서베를린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동베를린지역의 치안을 확보했다.⁹⁰ 이처럼 확장된 관할지역은 5개 지역 경찰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

⁹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68p).

되었다. 관할의 결정시에는 다음의 점들이 고려되었다.⁹¹

- ① 모든 경찰국들이 경찰청장의 통일적인 지휘 하에 주(州)경찰국과 독자적인 통신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의 참모부뿐만 아니라 주(州)경찰국의 구조와 시설 측면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한다.
- ③ 동베를린의 조직상 하위기관들은 그 기능 및 물적 장비의 측면에서 제1경찰국, 제3경찰국, 제5경찰국 참모부에 의해 지휘될 수 있어야 한다. 동베를린 지역에 경찰국의 참모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배제된다.
- ④ 인민경찰 본부의 업무와 관할권은 즉시 박탈된다.
- ⑤ 동베를린 경찰본부 산하에 존재했던 조직구조, 즉 11개의 경찰서와 그 산하 27개 경찰지구들로 분류되는 조직구조는 우선 그대로 유지되며, 그 공간 및 시설·장비, 특히 통신설비 등은 활용된다.
- ⑥ 현장에서의 인력 ‘혼합적’ 활동, 그리고 물적 시설 측면에서의 혼합적 활동 등은 보다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⑦ 도시의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확대된 형태의 시 경찰국이 그대로 관할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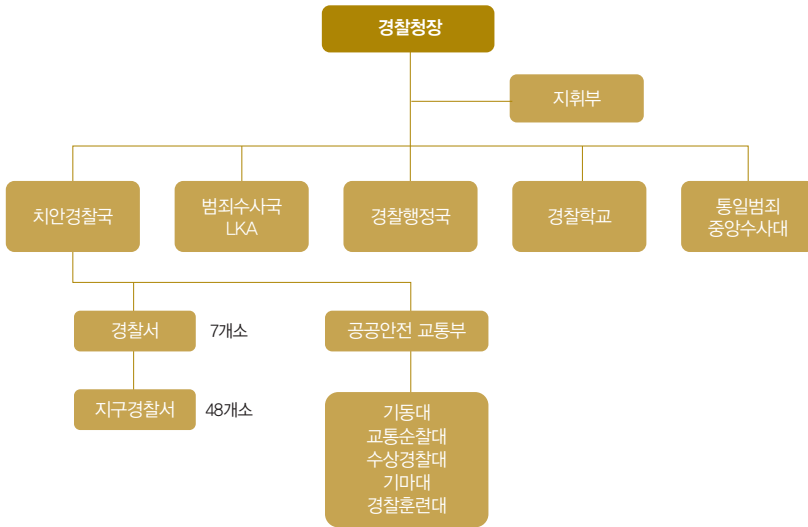
그렇지만 동베를린에 존재했던 11개의 경찰서는 서베를린 경찰의 조직구조에 맞추어 11개의 경찰지구대로 편제가 변경되었으며, 그 하위조직인 27개 경찰지구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파출소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베를린 통합경찰청에는 5개 경찰국, 31개 경찰서 이외 동베를린 지역에 18개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⁹² 1993년에는 동베를린지역에 2개의 경찰국이 신설되어, 1993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베를린 통합경

⁹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4p).

⁹²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5p).

찰청은 7개 경찰국(Direktion), 48개 경찰서(Polizeiabschnitten)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1-2> 베를린 경찰청 조직도⁹³



다. 인력통합

베를린 경찰의 통합이 서베를린 경찰의 동베를린 지역으로의 확장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인력도 양 베를린 경찰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서로 혼합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동서베를린 경찰 간 동화과정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서베를린 경찰의 인력통합은 “혼합(Durchmischung)적 운용”원칙 하에 이루어졌다.⁹⁴

이 원칙에 따라 동서베를린 경찰관들은 1990년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동서베를린 경찰관서에 상호교환 배치되었다. 서베를린 경찰관 2,323명(고위직 21명, 상급직 443명, 중급직 1,859명)은 동베를린 지역으로, 동베를린에서

⁹³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004, 505p.

⁹⁴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4p).

흡수된 일부 경찰관 2,700명은 서베를린으로 교환 배치되었다.⁹⁵ 또한 동독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를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베를린 지역에 투입된 총 586대의 순찰차에도 양 베를린 경찰관이 2인 1조로 탑승하여 순찰근무를 하였다. 그 외에도 동베를린 전 지역에 서독식 지역담당 근무소 425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213명의 경험이 풍부한 서베를린 경찰관을 배치하기도 하였다.⁹⁶ 이처럼 베를린 지역에서 이루어진 인력의 혼합적 운용은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입장에서는 서베를린 경찰관들과 매일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게 됨으로써 전혀 다른 체제 하에서의 낯선 업무수행에 대한 적응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베를린 지역에 교환 배치된 서베를린 경찰은 경찰간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통일독일의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도부 직책을 동독의 인민경찰 지휘부에 맡겨둘 수 없었으므로 동베를린 경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1990년 10월 1일자 직책을 박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베를린의 경정급 이상의 고위간부급 경찰은 경찰권이 서베를린으로 이양된 직후 교체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조기 퇴직하였다. 여기에는 경찰관서의 모든 지도부 직책을 맡고 있는 경찰관, 예컨대 경찰지구대의 모든 책임자들, 모든 기동부대의 책임자 및 전문담당관들, 행정부서 책임자들이 포함되었다. 때문에 실제로 동베를린 출신 고위급 경찰관 가운데서 재임용된 경우는 일반경과 출신이 아닌 전기공학분야 특수경과 전문가인 경정급 1명만이었다.

고위직 이외의 경찰에 대해서는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인민경찰의 대다수를 흡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0년 10월 1일 통일 직전 베를린 경찰의 구성인력은 다음과 같다.⁹⁷ 통합 당시 동베를린 경찰관

⁹⁵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6p).

⁹⁶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004, 503p.

⁹⁷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14p).

11,797명 가운데 서베를린 경찰로 인수된 경찰은 철도경찰로 인수된 700여 명의 수송경찰을 제외한 약 9,60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0 독일통일 직전 동서베를린 경찰력 현황

서베를린 경찰	동베를린 경찰
- 치안경찰 11,117명 - 수사경찰 1,756명 - 경비경찰(Wachpolizei) 1,934명 - 경찰의용대(Freiwillige Polizei-Reserve) 2,765명 - 행정인력 2,758명	- 경찰청 본부 2,514명 - 산하 11개 경찰서 6,796명 - 외교공관 특별경비대(Wachkommando Missiondienst) 1,225명 - 철도경찰 704명 - 수상경찰 98명 - 전투기동단 459명
합계 20,466명	합계 11,797명

한편, 베를린 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수요분석, 즉 서베를린의 현황을 기초로 삼아 동베를린 지역에도 서베를린과 동일한 치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인민경찰로부터 인수한 일자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도 약 1,014개의 일자리를 채워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으나, 베를린주(州)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부족한 물적 장비를 감수하는 것 이외에도 오히려 1,000개의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⁹⁸

라. 인민경찰관에 대한 연수 및 교육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은 인력측면에서 약 1만 명이 증가함에 따른 조직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경찰통합은 조직구성원인 모든 경찰관들의 직무수행 역량이 서베를린 경찰의 수준에 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베를린 인민경찰도 서베를린 경찰관이 경찰관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받았던 약 3년에 달하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⁹⁸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64p).

렇지만 통일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러한 장기간의 직업교육 과정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 하에 1년 간의 속성과정을 통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의 원칙에 따랐다.⁹⁹

첫째, 인력측면에서는 일선현장에 투입될 약 8,000명의 경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시간적 측면에서는 1994년까지 약 3년 간 실시한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 서독의 법질서와 업무수행 방식의 기초에 대한 체계적 전수

넷째, 실무적 측면에서 베를린 전체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미 경찰직무교육을 받고 또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인민경찰에 대해서는 3단계 컨셉에 따른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3단계의 교육컨셉은 모든 베를린 경찰의 중급직 및 상급직 직무에의 투입을 목표로 모든 경찰관이 참여해야 하는 1단계 기초세미나, 중급직과 상급직의 경찰관들을 위한 2단계 심화세미나 및 특별 세미나,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으로서의 고용승계를 위한 능력검증 내지 자격획득을 위한 3단계인 1년의 연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3단계인 연간교육과정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인식능력과 전문지식이 1, 2단계의 세미나를 통한 속성 교육과정만으로는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1년의 교육기간 중에도 정상적 근무를 해야 했으므로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교육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3단계 교육컨셉은 1994년 11월까지 8,000여명의 동베를린 인민경찰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약 60명의 전문강사와 경찰관들이 투입되었다. 각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⁹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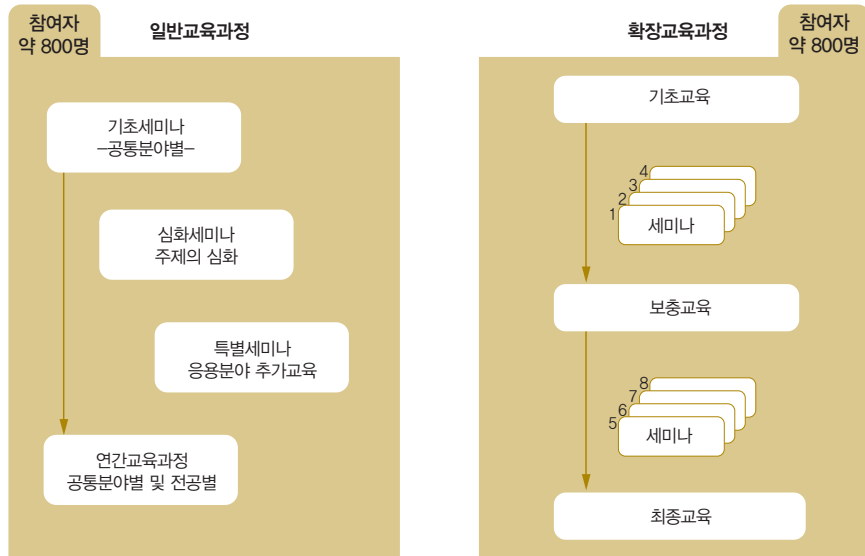
표 1-11〉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컨셉¹⁰⁰

구분	1단계 기초세미나	2단계		3단계 연간교육과정
		심화세미나	특별세미나	
목표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경찰권발동의 요건들에 대한 집중교육	•기초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제의 심화교육	•특수한 직무영역에서 요구되는 전공지식 습득	•정규직 공무원으로서의 고용을 위한 이론능력의 검증
교육 내용	•헌법 •경찰개입권 •형법 및 질서위반법 •경찰력투입/지휘론 •범죄수사학/범죄학 •도로교통 개론 •공무원법 •행동지도	•정치교육, 헌법 (18시간) •경찰개입권 (18시간) •공무원법 (12시간) •형법(30시간) •투입론/지휘론 (18시간)	•수사경찰상의 전문업무관련 (30시간) •교통 세미나 (60시간) •환경법(30시간) •경찰지구대 차원의 직무 (30시간)	•공무원관계 고용승계 후 검증기간 3년 •최대 9천명 참여 계획 •직무활동의 유지 •기존 서베를린 경찰의 직업교육 수준에 도달
강의 시간	•120시간	•96시간	•150시간	•1년(매주 1회씩 08:00-18:30뿐까 지 수업, 그 이외에 는 직무수행하면서 자기학습)
교육 참여 현황	•1990/1991년 5,000명 •1992년 3,000명	•1991년 3,800명 •1992년 4,000명 •1993년 4,000명		•1991/1992년 2,600명 •1992/1993년 2,700명 •1993/1994년 2,700명

한편, 경찰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그 교육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약 800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확장된 재교육 조치가 이루어졌다. 확장된 재교육은 각 5주 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3개 블록수업(총 15주)과 각 주제마다 2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세미나(총 8개 주제, 16주)로 구성되어 있다. 5주 간의 블록수업 마지막에는 능력검증시험을 통해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¹⁰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9-453p).

그림 1-3 > 구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재교육시스템¹⁰¹



마. 무기 등 경찰장비 등의 통합

통합과정에서 인민경찰의 장비는 낡고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인민경찰의 장비는 계속적인 사용이 중지되거나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의 상태에 따라 ‘당분간’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독일통일 후 4년 동안 동베를린 경찰의 장비를 서베를린 경찰의 기준에 맞게 통일시키고 새로 마련하는데 1억 마르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¹⁰²

(1) 통신분야

먼저 통신부분을 보면 낙후된 통신기술로 인해 약 370개의 경찰 독자회

¹⁰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52p).

¹⁰²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507p).

선이 필요했으나 1990년 10월 1일 통합 당시까지 약 100개의 회선만이 설치 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동서베를린 간의 전화연결 상태는 1945년의 통신수 준으로 회귀했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동베를린 경찰관서들과 의 전화통신은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무선통신망은 동서베를 린 경찰 간 서로 다른 채널(동베를린 경찰은 2m영역을, 서베를린 경찰은 4m 영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서베를린 경찰 간 호환이 되지 않았다.¹⁰³ 이 때 문에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110비상전화와 그에 따른 ‘110순찰차 즉시 출동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110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 차량분야

다음으로 차량과 관련, 동베를린 경찰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인민경찰의 차량 가운데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태에 따라 ‘당분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예컨대 110순찰차량 라다(Lada)는 계속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110순찰차량 바르트부르크(Wartburg)는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트라반트(Trabant) 모델 승용차량 약 140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결정이 있었다.¹⁰⁴

한편 ‘계속사용’ 결정이 내려진 차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근무에 투입하 기 위해서는 차량의 표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 00시 00분(10 월 3일로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10월 1일 13:00으로 앞당겨졌음) 이후 현장에 출동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색상과 표지마크를 통일시키기로 하였다. 그

¹⁰³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7-438p).

¹⁰⁴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39p).

러나 이 계획은 기술적·전술적 유용성의 문제, 부족한 시간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¹⁰⁵ 그에 따라 인수된 차량 가운데 110순찰차량에 대해서는 통일 베를린 경찰을 상징하는 색깔인 민트그린색/하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에 붙어있는 ‘인민경찰’이라는 글씨를 제거하고 베를린 경찰청의 휘장과 베를린 시의 깃발을 부착하기로 하였다. 교통경찰의 차량에 대해서는 ‘인민경찰’이라는 글씨를 떼고 새로운 휘장과 깃발을 사용하되 차량의 색상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인민경찰’이라는 표지마크를 바꾼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민경찰 차량의 인계와 관련하여 인민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된 4개 인수차량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차량을 이동시킬 때 인민경찰 소속 차량운전자들은 평상복 차림이어야 하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인민경찰의 휘장을 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민경찰’이라는 글씨도 보이지 않게 가리기로 하였다. 차량에 관한 모든 서류들도 차량을 인계할 때 임시보관소 책임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였다. 차량의 부품 등 차량과 관련한 장비가 있으면 인계되는 해당 차량에 비치되도록 하였다.¹⁰⁶

(3) 경찰무기¹⁰⁷

먼저 권총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당시 서베를린 경찰은 P6형 권총 18,150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베를린 인민경찰은 9.02×18mm형 마카로브 권총 11,646정, 7.65mm 74형 모델 권총 1,543정, 5.45형 PSM 권총 71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경찰의 권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인민경찰이 사용하던 마카로브(Makarow) 권

¹⁰⁵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25. 142-143p).

¹⁰⁶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29. 153p).

¹⁰⁷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24. 138-150p 참조).

총의 경우 땅에 떨어질 때 간혹 총알이 발사되는 문제 외에도 탄약의 수는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베를린 기술검사협회(TÜV)의 두 차례에 걸친 감정결과가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총기는 즉시 회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 외에도 마카로브 권총을 사용하게 할 경우 모든 근무지에 권총이나 탄환을 이중으로 보급하고 사격훈련을 서로 다르게 시켜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베를린 경찰은 전부 P6형 권총으로 무장시킨다는 계획 하에 연방내무부에 보관 중인 재고 약 1,500정의 권총을 공급하고, 추가로 권총 약 6천 개(개당 1,200 마르크)를 새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일 직후 실제 지급된 권총은 500-600개에 불과하였다.¹⁰⁸

자동권총(Maschinenpistolen)의 경우 서베를린 경찰의 5A3 자동권총이 예상수요에 비해 총 2,000정이 부족하였지만, 1990년 4월 이후부터 출동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자동권총 칼라쉬니코프 KM형 11,600정은 전술적 이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인민경찰에 남아있던 경찰봉(Teleskopschlagstöcke)은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서베를린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경찰봉 6,000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루탄발사기의 경우 서베를린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14,500정 이외 인민경찰 출신 경찰관에게 5,000개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무기 및 탄약의 인수와 관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기로 협의하였다. ① 인수와 관리절차를 확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베를린 경찰청 임무수행 지원국(ZD V C)에서 맡는다. ② 무기와 탄약재고를 빈틈없이 인수하는 일은 반드시 경찰청 직원에 의해서 이뤄지며, 그에 따른 안전보관의 책

¹⁰⁸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24. 140-141p ; 문서번호 62. 438p).

임도 진다. 또한 무기와 탄약의 인수인계시에는 반드시 재고증명서를 교부하여 무기관리와 무기재고를 명확히 한다.

(4) 제복

인민경찰관들의 제복을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일에서 총 700만 마르크의 비용을 들여 1993년에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¹⁰⁹ 따라서 통합 이후에도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기까지 오랫동안 베를린 경찰은 2개의 상이한 제복을 착용해야 했다.¹¹⁰ 때문에 통일 후 약 1년 동안 구 동독 인민경찰 출신 경찰관은 임시적으로 인민경찰의 복장에 모자의 표지만 바뀌서 착용한 채 근무해야 했다.

(5) 건물

건물의 경우 기존 경찰관서 건물 가운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건물의 난방 및 위생 등 기술적 설비들은 서베를린 수준에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경찰관서 건물을 필요에 따라 개량·보수하고, 조직이 확장됨에 따라 부족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는 동독의 국경경비대, 기동대, 국경통제소 등의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구 동독지역에 있던 동독의 경찰청, 경찰서, 경찰학교 등의 경찰관서는 보수하여 신연방주의 경찰관서로 사용하였다.

¹⁰⁹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508p).

¹¹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49. 344p).



제5절 구 동독 인민경찰의 활용

1. 구 동독 인민경찰의 재임용

가. 원칙

동독 인민경찰의 인수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인권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거나 독일 기본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¹¹¹를 거부하는 경찰의 경우, 인수를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¹¹²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찰인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찰인력이라 함은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보청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서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는데 있어 최대의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한 자를 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회적 이유에서 ‘필요한 만큼 많이’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동독 인민경찰을 받아들인다는 원칙 하에 ‘흰 양들에게서 검은 양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¹¹³ 이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직된 고용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¹¹⁴

¹¹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폭력적 지배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면서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결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창출하는 질서”로 이해하였다. BVerfGE 1, 51.

¹¹² 2. Sitzung der Arbeitsgruppe Personal beim Senator für Inneres am 13. Juli 1990, 4 Uebernahmekriterien ArchSenInn, Ordner III, 35-36p.

¹¹³ Friker, Der Aufbau neuer Polizeibehörden-Probleme und Perspektiven, in: PFA 3/1991, 208p.

¹¹⁴ 그럼에도 많은 구 동독 경찰 특히 상급 경찰관들이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 연금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 동독 경찰의 경우 50세 이상이거나 최소 25년 간 근무한 경우 연금의 수혜대상이 되었다. 또한 법적 연금수령 연령 5년 전이라도 남자의 경우 총 25년, 여자의 경우 20년 간 근무한 경우 마지막 12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덕택으로 구 동독지역 튜링겐주 3개 경찰관서에서는 원래 13,000명에 달했던 경찰관이 1990년 말에는 7,000명으로 줄었다. Michael, Lage

나. 재임용을 위한 검증

재임용은 먼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재임용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경찰업무에 종사했던 자에 대해 슈타지 등 비밀경찰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가혹 청에 의뢰, 조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까다롭게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1990년 2월 동독의 국가안전부가 해체되면서 국가안전부의 직원들 상당수가 인민경찰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¹¹⁵ 당시 인민경찰로 배치된 국가안전부 요원은 전체 506명(간부 51명, 경비전문가 323명, 군속 132명)으로 파악되었다.¹¹⁶ 또한 구 동독의 마지막 정권이었던 모드로우 정권이 통일 직전 동독의 고위공직자 및 국가안전부 요원에 관한 인사자료를 상당수 폐기하여 신분을 위장 전환시켜 놓았다는 점도 검증작업을 까다롭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¹⁷

(1) 인사위원회의 설치

재임용을 위한 검증은 신연방주의 내무부장관이 처리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재임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주별로 내무부, 주경찰청 등에 내무고위관리, 고위경찰관, 경찰노조대표, 내무부 인사위원 등과 이들의 공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가 및 교회 등 민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Personalauswahlk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각 주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여부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용승계가 예상되는

und Situation in der Polizei der fünf neuen Bundesländer, in: PFA 3/1991, 231p; Grube, Der Aufbau neuer Polizeibehörden – Probleme und Perspektiven, in: PFA 1/1991, 109–110p.

¹¹⁵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17p.

¹¹⁶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1. 8p).

¹¹⁷ 임도빈,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 in: 김병섭·임도빈, 통일한국정부론. 2012, 184p.



경우 대상자가 어떠한 직렬에 배치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도 권고할 의무를 가졌다.

(2) 검증

(가) 검증의 기준¹¹⁸

재임용을 위한 검증기준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임용이 불허되었다.

- 구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보청 보직 경력이 있는 자
- 구 국가안전부 산하 슈타지 소속 특수 요원으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자
- 구 국가안전부 소속 비공식요원¹¹⁹으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자
- 인민경찰본부 보직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문책임이 입증된 자
- 구 동독이 추구하는 이념에 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소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고위직 보직 경력이 입증된 자
- 인민경찰본부 보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치사상범을 정신병원에 수용시키기 위해 보고서의 조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결정에 개입한 자
- 인민경찰본부 보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치사상범을 대상으로 증거조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형사소추에 관여한 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고가 허용되었다.

¹¹⁸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33. 265-267p 참조).

¹¹⁹ 비공식요원은 서신 또는 구두상으로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보청과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이러한 활동은 사적 또는 직업과 관련한 정기적인 수당지급, 특별수당 및 보조금지급을 통해 유지된다. 비공식요원은 표면상 스파이업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보청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공식 요원들에 대해서도 재임용이 불허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들은 협박에 의해 임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임무수행시 강요를 당한 사정이 있거나 자신이 수행한 임무의 중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용관계가 연장될 수 있었다.

- 경찰직무의 수행능력이 없는 자
- 수요부족으로 고용승계 기준에 미달한 자
- 형법상·공무원법상 또는 건강상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
- 민주주의 체제 하의 경찰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여기에는 재임용대상자가 인권 또는 법치 국가의 기본원칙을 어긴 경우로, 특히 UN의 ‘시민적·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거나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보청 보직경력으로 고용승계가 불가한 경우가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권고되었다.

- 직무상 부정적 평가를 받은 자. 다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정치적 충성도의 결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업무의 공백 기간이 상당한 자
- 중독증상이 있는 자
- 중급 또는 상급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1990년 10월 3일부로 55세에 도달한 자. 다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최소 3년 간 경찰분야가 아닌 행정업무 보직을 담당하고 경찰직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동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나) 인사설문지 작성

검증은 재임용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18페이지,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설문지¹²⁰ 및 인사자료를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²¹ 인사설문지의 72개 항목

¹²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37. 294p 이하 참조).

¹²¹ Otto Diederichs, Fragebogen und Personalkommissionen. Die Entstasifizierung der Vopo,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8(1/1991), 22-26p 참조.

¹²²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사항, 인민경찰 임용 이전 학교교육과 직무교육, 인민경찰 임용 이전의 활동, 직무교육과 인민경찰에서의 경력, 최종 계급, 최근 직무, 1989년 11월 9일 이후 자신의 인사문서 수정여부, 향후 직무에 대한 특별 희망사항, 범죄경력,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서 1989년 11월 9일 이전에 어떤 활동을 담당했는지, 구 국가안전부(슈타지) 또는 이 기관의 산하기관 혹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활동 여부, 인민경찰 재직시 증거조작 혹은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형사소추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다.¹²³ 재임용 대상자는 이러한 인사설문지를 작성함에 있어 진실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해고의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다) 검증방식

인사위원회는 인사설문지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경찰관의 재임용여부, 부여할 계급 등을 결정한 후 추가로 슈타지와 관계를 ‘가옥 청(Gauck-Behörde)’¹²⁴에 의뢰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권한의 남용, 인권침해, 직무의 불법적 수행, 1989년 10월 및 11월 당시 직무수행에서의 태도는 물론 국방·국경문제·구금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¹²² 인사설문지의 문항은 주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었다. 베를린의 경우 72개 항목으로 다른 주에 비해 매우 상세하게 구성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48개 항목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경우 17개 항목으로, 작센주는 15문항, 튀링겐주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Otto Diederichs, Fragebogen und Personalkommissionen. Die Entstasifizierung der Vopo,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8(1/1991), 22-26p 참조.

¹²³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85p.

¹²⁴ 슈타지 자료관리청은 초대 청장의 이름을 붙여 일명 가옥 청(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라고 한다. 이 청은 동독정부에서 동독정부의 불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부(슈타지)를 해체하고 주요문서를 파기하기 시작했는데, 동독의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파기되는 문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1991년 12월 29일 독일연방의회에서 국가안보부 문서처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설치되었다.

까지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¹²⁵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은 순수하게 인력 선발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인민경찰의 인사관련 서류들이 인사의 변동사항 특히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에 대해 입증할 증거나 증명서가 없음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인사과 직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수정되어 심각할 정도의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¹²⁶ 말하자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실들을 입증해 줄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결은 단순 다수결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재임용 심사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신연방지역 주 정부별 검증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¹²⁷

① 브란덴부르크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재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 내무부의 제안으로 브란덴부르크 개신교 목사, 브란덴부르크주 경찰노조 위원장,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파견된 법률가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0년 12월에 활동을 개시하여 먼저 개별검증사안에 대한 기준을 만든 다음, 1991년 5월까지 모든 검증대상자들이 작성한 인사설문지를 평가하였다. 의심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까지의 근무경력에 근거할 수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검증대상자 자신의 책임 하에서 국가안전부와 협력했던 사실의 진술에 근거할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부와 협력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

¹²⁵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910p.

¹²⁶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501p).

¹²⁷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20-128p 참조.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비로소 재임용을 위한 추천장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검증이 종료되면 2차적으로 가옥 청에 국가안전부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회를 의뢰하였다. 여기에서 인사설문지의 기재사실 및 당사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검증의 과정이 뒤따랐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약 10,500건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전체 주 인민경찰관의 약 95%가 재임용에 긍정적 통보가 이루어졌다. 단지 약 500명의 경찰관들만이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아 해고되었다. 1,414명에 대해서는 가옥 청에 그들의 과거행적에 관한 등록이 요청되었으며, 이 가운데 974명은 재고용 되었다. 하지만 약 3,000명의 경찰관들은 검증 전에 이미 자진해서 퇴직하였다.¹²⁸

②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재임용을 위한 검증은 주 정부 상임위원회(Ständige Personalkommission der Landesregierung)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위원회의 분석에 근거하여 내무부 ‘개별 신분자격문제(PE)’ 담당부에서 인사설문지와 인사기록카드를 평가하였다. 17문항으로 구성된 인사설문지는 1991년 1월 작성 완료되었으며, 이때부터 1년 간 검증작업이 진행되었다. 검증과정에서 의심사실이 발견되면 당사자를 소환하여 해명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 내무부장관이 재임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해고의 경우에는 중앙 인사평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비밀경찰과 관련되었던 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불허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모든 사안마다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비밀경찰의 기능을 수행했던 인민경찰 내 수사경찰 제1 직무분과(K1)의 직원들이 대다수 재임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안전부와 접촉한 사실로 인해 재임용이 불확실한 수습경찰관에 대해서

¹²⁸ Otto Diederichs, Fragebogen und Personalkommissionen. Die Entstasifizierung der Vopo,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8(1/1991), 23p.

도 남은 임기를 연장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총 7,500명의 경찰관(경찰이 아닌 일반직원 1,500명 포함)이 검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90여 명이 해고되었다.¹²⁹

③ 작센-안할트주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내무부, 재무부 그리고 법무부 대표 각 1인과 주수상실, 가옥 청의 외교분과위와 SPD당, CDU당 그리고 FDP당에서 나온 각 1인의 대표들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검증의 핵심은 국가안전부와 연루되었느냐를 확인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전부를 위해 일한 활동의 유형과 기간, 활동정도, 활동시점 그리고 국가안전부와 연루되게 된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전부와 관계의 단절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평가의 범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부 관련 혐의가 드러난 경우 당사자로부터 직접 ‘개인의 과거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었다. 검증은 1992년 중반에서야 완료되었다.

재임용대상 11,784명의 경찰관에 대해 가옥 청에 조회를 의뢰한 결과, 637명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과거 감시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곧 감시부대에서 이탈한 점이 고려되어 재임용되었다. 또한 1,554명은 국가안전부 비공식 요원들로 확인되었지만 이 가운데 775명은 재임용되었다.

④ 튜링겐주

튜링겐주에서의 검증은 먼저 경찰청 직원들이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관련 문건의 정보들을 서류에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내무부의 제1차 평가단(경찰인사 담당부)에 전달되었다. 문제성 여부는 내무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부적격으로 추정되거나 18문항의 인사설문지

¹²⁹ Otto Diederichs, Fragebogen und Personalkommissionen. Die Entstasifizierung der Vopo, in: Bürgerrechte und Polizei Nr. 38(1/1991), 24p.

에 대한 답변과 가옥 청의 정보 간에 차이가 나는 진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차 평가단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직접 해명을 들었다. 직무적격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특별검증신청서를 연방노동법원의 판사를 의장으로 한 인사검증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의장 이외에 주 의회 분과위대표 1인, 노조대표 각 3인, 교회대표 각 2인, 중앙인사평의회 대표 그리고 가옥 청 위원 1인으로 구성되었다.

튀링겐주에는 원래 약 13,000명의 경찰관(1989년 7월 기준)이 있었으나 1990년 10월 3일까지 9,305명으로 줄었다.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9,305명의 경찰관들 중에서 8,583명만이 검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약 1,200명은 스스로 퇴직하고 약 2,000명은 직무적격성 부족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되었다. 튀링겐주에서는 1,668명이 가옥 청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1,072명은 비공식 비밀요원으로, 539명은 공식 요원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7명은 과거의 특수요원들로 확인되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⑤ 베를린 주

베를린의 경우 검증을 위하여 인사선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인사선별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였는데, 고위직 인민경찰관들의 재임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베를린 내무부 산하에, 중급직에 대해서는 경찰청 산하에 인사선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선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 존재하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각 지역 경찰기관장의 직접적 책임 하에 지역별로 고용승계 심사가 이루어졌다.¹³⁰ 고위직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인사선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베를린 전역에서 재임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

¹³⁰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33. 267p).

이 있었다. 고위직 인사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억압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인사선별위원회는 가능한 한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과거 국가안전부의 비공식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던 인민경찰이 인사선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을 위한 검증은 인사선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동독의 체제가 가지는 속성으로 인해 인민경찰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안전부의 활동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이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재임용대상자들은 검증을 통해 재임용에 ‘부적합한 자’로 낙인찍히기 보다는 차라리 검증을 받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이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점은 통일 당시 약 9,400명에 달하는 동베를린 인민경찰관들 가운데 검증을 받은 사람은 5,519명에 불과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3) 재임용

통일독일의 경찰에 인수된 67,356명의 동독 인민경찰관 중 85.6%에 해당하는 54,944명이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되었다.¹³¹ 구 동독 전체 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이 해임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경찰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동독의 고위직(경정급 이상) 경찰간부들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퇴직해야 했다. 심지어 다른 곳으로의 이동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직 경찰의 경우 통일 당시까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정치적 편향성 및

¹³¹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3p.

전체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역할을 해왔던 그들의 지위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¹³² 예컨대 베를린주의 경우 동독 인민경찰의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조사항에서 ‘동독경찰의 고위직 소속 경찰관은 동독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베를린 경찰의 고위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¹³³ 그에 따라 고위직에는 거의 대부분 서독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때문에 각 경찰서 과장급 이상은 전원 교체되었다.¹³⁴ 이러한 이유로 통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중앙요직은 서독출신 인사들에 의해 채워졌다.¹³⁵

고위직 경찰간부의 경우와 달리, 동독의 인민경찰 조직 및 인원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신연방주 경찰에 그대로 인수되었다. 하지만 통일독일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 구 동독경찰관들은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사의 기준은 적성, 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령(50세 미만), 계급(경정 이하) 그리고 슈타지와 연루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로 50세 이상 경찰관은 전원 해고되어 통일 후 10년 간 정년퇴직(60세)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¹³⁶

표 1-12 > 구 동독 인민경찰관 중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된 인원

구분	계	연방 국경수비대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인수 경찰관	67,356	8,859	11,797	6,000	10,500	11,500	10,000	8,700
재임용 경찰관	54,944	7,000	8,544	5,700	7,000	10,900	9,300	6,500

¹³² 동독경찰의 상당수는 경찰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고위직 경찰이 다시 독일 통합경찰의 지휘관으로 올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동독의 고위직 경찰관 중에는 기회주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가 통합경찰의 지휘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Holecek, Der Zug zur Einheit kommt auf Tempo, in: Deutsche Polizei, Zeitschrift der Gewerkschaft der Polizei, Nr. 6, 39. Jahrgang 1990, 6p.

¹³³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80p.

¹³⁴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2p.

¹³⁵ Moerke, Von der Volkspolizei zur Thueringer Landespolizei, Bd. 1/ Bd. 2 참조.

¹³⁶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2p.

재임용된 경우에도 계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인민경찰의 고급간부 중 1990년 10월 3일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5세 이상인 자는 경감급(Polizeioberkommissar)으로, 45세 미만인 자는 경위급(Polizeikommissar)으로 강등되었으며, 초급간부 및 비간부급 경찰도 계급이 1~2단계 하향 조정되어 재임용되었다.¹³⁷

다. 재임용상의 문제점과 한계

(1) 불명확한 판단기준의 문제¹³⁸

통일조약에 해고의 기준으로 적시된 법률개념, 예컨대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과 ‘인권 또는 법치국가에 대한 위반’ 등의 개념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념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검증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게 맡겨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검증에 참가한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적 특징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명백히 ‘죄를 범한’ 사람들만 해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약했던 사람이라면 비록 그곳에서 단순히 유치원 교사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해고해야 된다’면서 일괄해고를 옹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재임용 대상인 동독의 인민경찰관들에게는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실제 검증을 담당한 인사위원들 대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대상자들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때문에 검증인들에게는 기본법(헌법)에 충실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내적인 부분을 확인할 구

¹³⁷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004, 512p.

¹³⁸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32-134p 참조.

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법조인들이나 교수들의 경우 판결문이나 소장 또는 논문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부분적이거나 확인될 수 있었으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사설문지에 대한 답변과 가옥 청의 조회를 통해 진실성에 대한 추론만 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의 전력이 과거 동독의 공안기관과 당 기구의 권력행사라는 목표들과 방법 그리고 활동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는 적격성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부족한 입증자료의 문제¹³⁹

그렇지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대상자가 분별없이 활동하거나 단순히 직무에 가담한 것만으로 부적격자로 추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서보관실의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검증인은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대상자의 활동이 국가안전부와 관련되어 있으면 검증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활동은 당시의 동독 체제 하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기 어려운 것은 인민경찰의 직무분과 K1의 문제이다. K1은 인민경찰 내 수사경찰의 하나인데 그 활동이 국가안전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정보는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개되었다. 게다가 개개의 직원이 K1분야에서 정치사찰과 탄압 또는 폭행 등 고문행위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¹³⁹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30-131p 참조.

입증하는데 자료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전체 164명의 과거 국가안전부 공식요원과 과거 K1 직원 242명이 경찰에 재임용될 수 있었으며, 또한 과거 KGB 첩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재임용된 경찰관들 중 357명이 과거 K1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8명만 해고하는데 그쳤다.

(3) 검증의 통일성 부족

각 주에서 내린 검증에 관한 결정이 그 경과와 결과에 있어 부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등 통일성이 부족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설문지의 구성도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검증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각 주별로 상이하고 검증의 기준으로서 불명확한 법률개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검증결과가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하여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해고된 많은 사람들에게 “힘없는 자들은 붙잡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달아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구 동독시절 주민억압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 없는’ 피해자로 간주하는 등 부정의한 검증에 비판적이었다.¹⁴⁰

(4) 친국가적 성향에 따른 해고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대상자의 반국가적 성향이 검증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권과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의 적성 결함을 이유로 해고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해고의 형식적 사유로 ‘친국가적 성향’이 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고’는 갑자기 증가한

¹⁴⁰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43p 참조.



공무원들을 제거할 목적의 ‘숙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⁴¹

유럽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서독에서 친국가적 성향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당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¹⁴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친국가적 성향’을 원인으로 해고당한 인민경찰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 열성적이었던 전력을 지닌 동독의 인민경찰관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베를린주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 노동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연방헌법재판소에 불복한 사건에서, 1995년 2월 21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92, 140)는 “통일조약은 동독의 공무원들을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직에 광범위하게 흡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해고의 근거로서 동독시절 인간으로서의 기본가치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했을 때, 또는 과거에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하였을 때를 들고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말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구 동독시절 사회주의통일당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동독 공직자들에게 요구된 원칙을 지킨 것, 다시 말해 동독 공산정권과의 밀착정도만을 가지고 해고할 수는 없고, 자격미달이나 업무태만 등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구 동독 인민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재교육

한편 위와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일독일의

¹⁴¹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43p 참조.

¹⁴²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2009, 142p 참조.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독기준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해야 했다. 따라서 구 동독의 인민경찰은 민주법치국가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특히 구 동독의 인민경찰은 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안전부의 ‘연장된 팔’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동독주민들은 특히 1989년 10월 7일과 8일의 반정부시위 과정에서 보여준 구 동독 인민경찰의 행태에서 구 동독 인민경찰에 대해 불신을 넘어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³ 여기에 구 동독 인민경찰이 국가의 경찰이 아닌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¹⁴⁴

구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은 경찰직무교육에 있어 동서독 간 차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 동독 인민경찰의 경찰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서독경찰과 비교하여 충분치 않았다.¹⁴⁵ 베를린 경찰을 예로 들자면, 서베를린 경찰은 당시까지 2년 6개월 간, 총 2,274시간의 이론과 2,096시간의 실무연수로 이루어진 경찰관 양성 교육을 받았는데 비해, 동베를린 경찰의 경우 이론교육만을 따지더라도 단 599시간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중에서도 113시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사상교육이었다. 실제 이론 교육은 서독 경찰이 받는 이론교육의 12.1%에 불과한 486시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구 동독의 인민경찰에 대한 교육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공산주의 이념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인민경찰에 대한 민주화교육은 동서독 경찰 간의 동화를 통한 경찰의

¹⁴³ Stuemper, Alfred, Umstellung der Polizei unmittelbar nach der Wende, 41-53p.

¹⁴⁴ 그렇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구 동독 인민경찰관들의 인식도 상당히 달라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1990년 9월 인민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업무수행 중 고려해야 할 것으로 법준수라고 답한 경찰관은 전체의 92.9%에 달했다. 또한 84.7%의 경찰관이 인권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상사의 견해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Das Ergebnis der Meinungsfrage bei ehemaligen Volkspolizei”, in: Die Polizei, 1/1992, 14p.

¹⁴⁵ 2. Sitzung der Arbeitsgruppe Personal beim Senator fuer Inneres vom 9. August 1990, ArchSenInn, Ordner III, 297p.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베를린 경찰의 경우 1990년 9월까지도 여전히 동서베를린 경찰이 “머릿속에 서로 적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¹⁴⁶

표 1-13) 구 동독 인민경찰의 교육현황

직급별	비간부 경찰	초급간부 경찰	고급간부 경찰
교육 내용	- 5개월 기초교육 - 6개월 간 실습과정	- 비간부경찰로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자 - 2년 또는 3년 간 경찰 간부학교 교육	- 최소 초급간부로서 6년 이상 근무하고 동베를린 소재 훔볼트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자 - 독일인민경찰대학에서 3년 간 교육
임용 계급	- 경찰원사 (Unterwachtmeister)	- 경찰소위 (경위급, Leutnant) - 학사자격 부여	- 경찰소령 (경정급, Major) - 석사자격 부여

교육은 일반적으로 먼저 세미나 형식의 적응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1년 간의 재교육이 있었다. 베를린의 경우 우선 동베를린 경찰관 전원에 대해 4주 간(120시간)의 적응교육이 실시되었다. 적응교육은 계급에 관계없이 인수경찰관 전원에 대해 자유민주사회의 법체계 및 사회에 대한 소양위주의 내용으로 3~5주 간 신연방주 또는 서독의 자매주 경찰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기본교육은 1년 동안 각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에 1회씩(08:00~18:00) 경찰학교에 출석(연 42회)하여 수업을 받게 되어 있었다.¹⁴⁷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하지만 교육차출(연간 약 2,700명)로 인한 치안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연방 내무부장관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간 받아야 하는 신입교육의 내용을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방안은 교육생이 강의 이외에 별도로 자율학습을 통해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3년 간의 교육내용이 담

¹⁴⁶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94p.

¹⁴⁷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5p.

긴 압축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교육은 교육기간 중 3회의 중간시험과 교육 종료시 이루어지는 졸업시험으로 평가되었는데, 중간시험에서는 약 15%, 졸업시험에서는 약 10%가 탈락하였다. 탈락한 교육생들은 1회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졌으나, 다시 탈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비경찰(청사경비 등) 또는 기능직으로 활용되었다. 젊은 동독경찰관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령층에서는 수업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¹⁴⁸

제6절 경찰 통합상 문제점

동서독 경찰의 통합은 그렇지만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다. 인력의 통합과 관련하여 구 동독의 인민경찰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구 서독의 경찰력만으로 구 동독지역 전반에 발생하는 치안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동독지역의 어려운 노동시장을 감안하여 실업문제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유¹⁴⁹에서 결국 구 동독의 경찰력을 흡수·활용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 결합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완전한 화학적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재정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내를 요구하였다. 때문에 경찰통합의 과정에서는 미처

¹⁴⁸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5-226p.

¹⁴⁹ 그럼에도 많은 구 동독 경찰 특히 상급 경찰관들이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 연금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 동독 경찰의 경우 50세 이상이거나 최소 25년 간 근무한 경우 연금의 수혜대상이 되었다. 또한 법적 연금수령 연령 5년 전이라도 남자의 경우 총 25년, 여자의 경우 20년 간 근무한 경우 마지막 12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덕택으로 구 동독지역 튜링겐주 3개 경찰관 서에서는 원래 13,000명에 달했던 경찰관이 1990년 말에는 7,000명으로 줄었다. Michael, Lage und Situation in der Polizei der fuenf neuen Bundeslaender, in: PFA 3/1991, 231p; Grube, Der Aufbau neuer Polizeibehoerden – Probleme und Perspektiven, in: PFA 1/1991, 109-110p.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약 90%에 달하는 구 동독 경찰을 흡수함에 따라 특히 베를린시에서는 인수된 구 동독의 인민경찰관에게 지급할 통일독일 경찰관의 복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거리에서 2개의 상이한 제복을 착용한 경찰을 볼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제복과 무기로 뒤덮여 있지 않은 도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⁵⁰ 새로운 제복의 지급은 1993년에서야 완료되었고, 이를 위해 약 700만 마르크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구 동독의 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관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그 기간 동안 구 동독 경찰관들은 자신이 경찰관으로 재임용될지 여부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¹⁵¹ 이는 유능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기업 등으로의 이직을 초래하였다. 또한 50세 이상 경찰관은 해고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 10년 동안 경찰관이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해 신규경찰관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것이다. 그 결과 통일 이후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경찰관의 입직 기회가 줄어들어 경찰조직 내 심각한 연령불균형 사태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¹⁵² 이는 구 동독의 인민경찰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민주법치국가의 경찰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셋째, 구 동독시절 이루어졌던 인민경찰에 대한 정치적 세뇌로 인해 동서독 경찰 간 융화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통합을 저해한 요인으로

¹⁵⁰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898p.

¹⁵¹ 1990년 9월 독일의 인민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상 업무수행 중 무엇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경찰관의 73%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Das Ergebnis der Meinungsfrage bei ehemaligen Volkspolizei”, in: Die Polizei, 1/1992, 14p.

¹⁵²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24p.

작용한 것은 동독경찰관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급직 경찰관의 경우 더욱 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스스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먼저 출동본부에 보고한 후 본부에서 하달되는 구체적 지시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해 왔던 것이다.¹⁵³ 예컨대, 술집에서의 싸움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소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한 구 동독출신 경찰은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먼저 상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받아서, 심지어 어떤 딱지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도 지침을 받아 행동했던 것이다. 요컨대, 현장경찰은 책임감 없이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구 동독 출신 인민경찰의 낮은 직무역량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예컨대 서독출신 경찰관에게 ‘언젠가 인민경찰 출신의 경찰이 상급직으로 승진하여 자신의 상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감정적 저항을 불러 내부적 지휘 계통상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반대로 인민경찰 출신 경찰의 경우 구 서독 출신 경찰동료들의 다소 건방진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경찰공동체 형성을 위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¹⁵⁴

다섯째, 상당수의 구 동독 인민경찰관을 통일독일의 경찰로 인수함으로 인해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같은 지역, 같은 경찰관서에 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결코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

¹⁵³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3. 503p).

¹⁵⁴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62. 470p).



으로 이어졌다. 이는 특히 동독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찰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억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적청산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부실한 검증자료 등으로 인해 완벽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했다.

여섯째, 구 동독 경찰의 직무역량을 구 서독 경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구 동독 경찰의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단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구 인민경찰관들은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강한 학습의지를 보였지만, 학습능력에는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이는 특히 구 인민경찰관들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한다는 점과 이들이 받았던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등이 서독의 교육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교육기자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강의를 책임질 교관요원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 경찰 간 보수의 차이는 경찰의 완전한 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구 동독 인민경찰에게 지급된 보수는 통일 직후에는 서독 출신 공무원 봉급의 60%에 그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급수준이 인상되었지만 통일이 된지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초에도 서독출신 경찰관 봉급의 86.5%를 받는데 그쳤다.¹⁵⁵ 이러한 차이는 서독출신 경찰과 비교하여 ‘2등 시민’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업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 나아가 경찰동료 간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어 완전한 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¹⁵⁵ 봉급수준은 1992년 5월 1일부터 70%, 1992년 12월 1일부터 74%, 1993년 7월 1일부터 80%, 1994년 10월 1일부터 82%, 1995년 10월 1일부터 84%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음.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서설

지금까지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경찰의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기획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동서독의 경찰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독일통일조약이 시행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치안을 확보·유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독일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밑거름’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치안부담으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자체의 통합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경찰의 역할과 양독 경찰 간 통합의 사례는 아직까지 분단 상황에 놓여있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경찰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2절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찰의 대응과 양독 경찰 간 통합은 독일의 통일이

전쟁 등 무력이 개입된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찰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다면 경찰보다 군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었을 것이지만, 독일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치안을 맡은 ‘경찰’이 정부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남북한도 장래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동서독 경찰의 통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동서독 경찰의 변수 없는 안전한 치안유지라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한편(서독)에선 민주적 법치국가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동독)에선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평화적인 전환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혼란상황에서 독일의 경찰은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많은 위협과 도전들에 대해 시민과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치안을 확보·유지함은 물론 추가적인 치안 부담을 져야 했다. 여기서 특히 동독은 주민억압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체제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때 구 서독의 경찰은 구 동독의 경찰이 따라야 할 모델이자 자문가로서 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구 동독의 경찰이 종전과 같이 체제유지를 위한 억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한마디로 동서독의 경찰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둘째, 동서독 경찰이 독일통일에 따른 경찰 간 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통합을 실현했다. 동서독 경찰의 통합은 베를린에서와 같이 서베를린 경찰에 의한 동베를린 경찰의 흡수 또는 서베를린 경찰의 동베를린

으로의 확장에 의한 방식과 5개 신연방주에서처럼 구 서독의 체제를 모범으로 하여 경찰조직을 새로이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 구 동독의 경찰을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재건한 방식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베를린에서는 동서베를린 경찰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와 기획으로서, 신연방주에서는 서독의 연방주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성공적인 경찰통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를린과 같은 특수한 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연방주에서 취한 방식으로의 경찰통합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떠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동서독 경찰의 시행착오이다. 구 동독과 구 서독의 경찰이 평화적인 통일에의 밑거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경찰통합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과 시행착오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남북한의 경찰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편, 동서독 경찰의 통합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급변사태 이후 통일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통일준비기 동안 동독지역의 치안유지 책임은 여전히 그때까지의 치안기구인 동독의 인민경찰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서독의 경찰은 통일준비기 동안 동독의 인민경찰과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혼란기의 치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함은 물론, 동독의 인민경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의 체제를 서독식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각종 인적·물적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통일 이후 정부와 의회의 구성 등으로 인해 관련법이 적시에 제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독지역 경찰에 적용될 과도기적 경찰법을 제정·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찰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도기 동안



법적근거 없이 경찰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과도기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통일 이후 경찰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독경찰은 동독경찰과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한 중앙정부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방정부와 역할을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넷째, 동독의 인민경찰을 통일독일의 경찰로 흡수함에 있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동독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민 억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경찰에 대한 인적청산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동독 체제 하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인적청산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고위직 경찰관은 사실상 전원 해고되었던 것이다. 특히 슈타지와 같이 비밀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임용시 슈타지와 관련된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였다. 체제유지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산주의 체제를 수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시민들이 정의의 관념에서 용인할 수 없는 구 동독시절의 불법행위가 통일이라는 과도기적 시대상황을 이용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수평적 권력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적청산의 과정에서도 동독 인민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경찰노조관계자, 종교관계자, 변호사 등을 폭넓게 참여시킴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점령군’에 의한 일방통행식에서 탈피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서독의 민주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동독 인민경찰의 직무능력을 심사하여 직위 및 직급을 결정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등시키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된 구 동독의 인민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찰이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치안공백의 최소화 및 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독의 인민경찰을 가능한 최대한 흡수함에 따른 부작용, 특히 ‘체제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점은 특히 동서독 경찰의 통합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남북한 경찰통합을 대비한 정책적 제언

그러면 한반도에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통일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경우 한국의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발생한 이후 통일조약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치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의 인민경찰이 담당했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동독이라는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동독의 인민경찰은 치안 그 자체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는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찰도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인민경찰로부터 경찰권을 인수



받기 전까지는, 북한 인민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찰은 북한 인민경찰과의 공식적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양 경찰 수뇌부로 구성된 협의조정을 위한 임시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찰은 이를 통해 남북한 경계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치안상황에 즉시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찰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북한경찰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일 이후 치안체계 구축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경찰통합의 준비와 기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통합은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경찰청장 직속으로 소위 ‘경찰통합준비기획단(가칭)’의 설치·운영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고위급 및 경찰이 아닌 학계 등 이 분야의 전문가, 북한인민보안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경찰통합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찰통합준비기획단은 이 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통합준비업무를 기획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각 기능별 실무자들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이 기획단에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체제를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인민보안부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서 현황, 장비 및 인원현황, 치안수요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확보 및 경찰통합을 위한 최적의 치안체제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단이 구성되면 이들에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마음으로 최우선적으로 북한지역 특히 인민보안국과 인민보안서 등을 시찰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의 북한지역 시찰이 급변사태 이후 통일과도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3. 북한지역 지원체계의 구축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 신연방주에 대한 행정 및 치안제도 등의 구축을 위한 지원은 서독의 각 주와 자매결연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도 이를 응용하여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이 각각 북한의 12개 인민보안국 가운데 하나를 맡아 경찰재건작업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북한의 1개 인민보안국에 대해 남한의 1개 지방경찰청을 ‘책임 지방경찰청’으로 지정하여 그 책임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자매결연 인민보안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의 재건,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경찰활동에 대한 자문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4.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기간 동안 북한지역 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⁵⁶ 이는 북한의 현재 인구를 약 2,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통일에 따른 혼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소 7만 명에서 10만 명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계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¹⁵⁷ 그러면 이러한 경찰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¹⁵⁶ 이송호, 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2012. 9), 322p.

¹⁵⁷ 남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비율은 약 500명이다. 통일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감안하여 북한지역의 소요경찰력을 평화시 남한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의 2분의 1수준인 25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점에서 평화시의 2배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에 따르면 북한지역 각 경찰관서에 배치되어야 할 경찰관은 약 10만여 명에 이른다. 그렇지 않고 선진국 수준인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350여명으로 한다면 68,720명으로 약 7만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에는 12개의 인민보안국, 200여개의 인민보안서, 4,000여개의 보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약 23만여 명의 보안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11만 명의 소요경찰력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에 대해서는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관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1, 91p 이하 참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점에서 독일통일에 따른 구 동독 경찰의 흡수·활용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인력의 절대적 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북한 인민경찰을 재임용하여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활용은 특히 다음의 점에서 필요불가피하다.

우선, 인민보안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은 물론, 해당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현지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그들의 경험과 정보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치안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이 60여 년째 계속되면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한 이질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경험은 불필요한 마찰 등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찰이 ‘점령군’이 아니라 동료경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찰 간 원활한 동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북한지역 내 실업자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¹⁵⁸

둘째, 인민보안원의 활용은 북한 주민들의 위화감을 방지해 줄 것이다. 이는 독일통일에서 서독 주도로 통일이 추진된 관계로 야기될 수 있는 동독 주민들의 위화감을 방지해 주었던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통일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민보안원도 결국 북한주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전부 배제해 버린다면 이는 남북한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¹⁵⁸ 이와 같은 취지로 이송호, 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2012. 9), 322p.

셋째, 북한 인민경찰을 재임용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경찰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북한 인민보안부의 보안원은 현재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탈경찰화로 순수 경찰기능에 속하지 않는 주민등록업무, 건설, 자재관리, 산업감찰, 철도안전, 지하철도관리, 국토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보안원을 제외하면 그 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1년 한 연구에 의하면, 순수 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인민보안원은 약 8만 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시간의 경과 및 그에 따른 보안원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추정할 때에도 8만 5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⁵⁹ 그러나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는 객관적인 재임용의 기준 및 그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50세 이상의 구 동독의 인민경찰관은 전원 해고되었던 것처럼 재임용의 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슈타지와 같은 비밀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재임용시에도 슈타지와 관련된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재임용에서 배제시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제유지 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산당체제를 수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확인하였던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이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독 인민경찰관을 그대로 흡수하였으나, 그들이 민주법치국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 및 기본교육 등 내적통합을 위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찰이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념해야 할 점이다.

¹⁵⁹ 유동렬, 북한의 경찰체제 분석, 공안논총(2001), 62p.



참고문헌

〈국내〉

- 김병섭·임도빈, 통일한국정부론,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나남, 2012.
-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1997.
- 김성수,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인민경찰법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공산주의·사회주의 법제도 연구(1),公安논총 제15집,公安문제연구소, 2003.
-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 손기웅, 통일한국정부론: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나남, 2012.
- 신익기 외,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심익섭, 독일 통일과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 1994.
-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한국행정연구원, 1997.
- 오관치 외,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07.
- 유동렬, 북한의 경찰체제 분석,公安논총, 62p, 2001.
- 유동열, “북한급변사태시 치안확보를 위한 중점관리 방안,”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1.
- 이관희, 독일통일과 구 동독경찰의 조직정비, 경찰대학 논문집 16집, 1996.
- 이승호, 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 322p, 2012.
- 이승협 외, 독일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예의 함의, 한독사회학회, 2011.
- 이윤호 외, 독일의 경찰통합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2호, 2006.
- 이춘근·박상봉,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치·외교·군사분야, 한국경제연구원, 2011.
-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1세기사, 2004.
- 임현백·이은정, 한반도는 통일독일이 될 수 있을까?: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 송정문화사, 2010.
- 박강우,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체제 불법청산개관, 1995.
-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조한범 외, 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통일연구원, 2013.
- 최선우·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6.
- 카르스텐 뉘멜, 김영윤 역, “사회주의 통일당의 창과 방패, 슈타지의 정체, 2010.
-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지방연구, 2011.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2013.

통일원,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보고서 2: 독일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2011.

한부영 외,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허영,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박영사, 1994.

황문규 외, 동서독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융합보안 제13권 제5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2011.

〈외국 문헌〉

Albin Eser, Joerg Arend, Hwlmut Kricke, *Strafrecht in Reaktkjon auf Systemunrecht, Vergleichende Einblicke in Transitionsprozesse*, 2001.

Adams, James Mc., *Reappraising the conditions of transitional justice in united germany*,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Vol. 19, Nr. 1, 2001.

Arved Semerak, *Die Polizeien in Westeuropa*, 1989.

Boldt, *Geschichte der Polizei in Deutschland*, in: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2. Aufl. 1996.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0*, 1991.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1993*, 1994.

Burgerrechte und Polizei, *Das Ende der Volkspolizei, Chronologie eines Zerfalls*, in: *Burgerrechte und Polizei*, Nr. 37, 1990.

Diederichs, *Stand des Polizeiaufbau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Eine Uebersicht*, in: *Buergerrechte & Polizei*, Nr. 38, 1991.

Diederichs, *Die Erstreckung-auf dem Weg zur Gesamtberliner Polizei*, in: *Buergerrechte & Polizei* Nr. 37, 1990.

Diederichs, *Fragboegen und Personalkommissionen. Die Entstasifizierung der Vopo*, in: *Buergerrechte und Polizei* Nr. 38, 1991.

Dieter Korgor, *Einigungsprozess*, in: *Werner Weidenfeld/ Karl-Rundolf Korte,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96.

Friker, *Der Aufbau neuer Polizeibehoerden-Probleme und Perspektiven*, in: *PFA 3/1991*.

Hoffmann, Hartmut P., *Drei Phasen der Transformation der Volkspolizei, Berlin 1989 bis 1991*, 2009.

Holecck, *Der Zug zur Einheit kommt auf Tempo*, in: *Deutsche Polizei, Zeitschrift der Gewerkschaft der Polizei*, Nr. 6, 39. Jahrgang 1990, 6p.

Mathes, Werner, *“Organisierte Kriminalität: Wir stehen vor einem Generalangriff*, in:



Stern, Nr. 48, 1996.

Moerke, Von der Volkspolizei zur Thueringer Landespolizei, Bd. 1/ Bd. 2.

Paul B. Stares · Joel S. Wit, 신법철·전경주 평역,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한국국방연구원, 2009.

Puetter, "Sicherheitsarchitekturen im Wandel, " Buerrechte & Polizei/CILIP 90 (2/2008).

Stuemper, Alfred, Umstellung der Polizei unmittelbar nach der Wende, PFA 36, 1991.

*2. Sitzung der Arbeitsgruppe Personal beim Senator fuer Inneres am 13. Juli 1990, 4
Uebernahmekriterien ArchSenInn, Ordner III.*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e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Walter, "Wertewandel—der Weg der Grenzsicherungsorgane, " Die neue Polizei 1991.



정책문서를 통해 본 통일과 치안

(동서베를린 경찰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베르너 페니히 /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경찰은 각 주(州)의 소관이다. 경찰법과 안전법과 같은 경찰 관련 사안은 거의 모두 연방주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구 동독지역의 경찰주권(Polizeihohheit)은 새로이 구성된 5개 신연방주에 귀속되게 되었다. 다만 베를린시는 예외였다.

1990년 당시 동서베를린 경찰의 총인원을 보면 서베를린이 20,466명, 동베를린이 11,797명이었다.¹ 이러한 수의 차이는 서베를린의 주민수가 동베를린의 주민수보다 약 두 배 많았고, 관할구역의 크기 또한 서베를린이 두 배 크기 때문이었다. 분단시기에 베를린은 승전연합국의 통제를 받는 예외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에서는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 점으로 인해, 분단 시기에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서독의 젊은이들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오기도 하였다.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과 함께 베를린의 특수한 지위는 사라졌지만 하나의 연방주로 승격된 수도로서 베를린이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베를린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과정의 모든 작업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통합과정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¹ 이 숫자는 통합 당시 베를린 경찰청장이었던 게오르크 쉘르쾅씨의 강연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다. 쉘르쾅 청장 아래 실무그룹을 이끌면서 통합과정을 기획하였던 하트무트 뮐렌하우어씨는 당시 베를린 경찰의 총 인원이 서베를린 17,107명 동베를린 11,797명이라고 설명하였다.

통일 이전에 서베를린에 30,000명, 동베를린에 12,000명의 경찰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통일과 함께 이들이 하나의 경찰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다른 신연방주와는 달리 베를린에서는 동독 출신 경찰들이 모두 국가안전부 즉 비밀경찰 슈타지(Staatssicherheitsdienst, STASI) 연루 여부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장에서는 베를린의 사례를 중심으로 치안체계의 통합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동서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을 서술하기에 앞서 1989년 11월 9일 이후 1990년 10월 3일까지의 과도적 개혁기 동안 동독의 치안을 담당하였던 인민경찰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 보기로 한다.

평화적 혁명 이후 개혁적 과도기의 동독의 인민경찰

독일통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보는 것은 1989년 11월 9일부터 형식적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경찰과 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동독 개혁정부의 군축국방부 차관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인민군의 해체과정에서 무기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1권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경찰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베를린 경찰청이 인민경찰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1990년 상반기에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알 수 있다.² 그에 따르면 1990년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비밀경찰 슈타지의 해체와 슈타지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도 담당하면서, 서베를린 경찰과 협력하여 베를린 경찰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였다. 동시에 교통안전, 화재예방 그리고 신분증과 주민등록 관리 등 기존의 공공업무도 수행해야만 했다. 형무소의 수감자 감시 또한 경찰이 담당하는 고유 업무에 속했다.

통일과정에서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는 자주 하는 질문에 속한다. 개혁적 과도기 또한 일종의 급격한 변혁기라고 할 수 있으면 기존의 지배체제의 권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치안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개혁적 과도기에

² (문서번호 1).

치안이 문제가 되었다는 보고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9년 11월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0월 3일 형식적 통일이 완성되기까지 과도기 동독 사회에서 치안이나 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이다. 1990년 6월 1일에 작성된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1990년 상반기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역할과 업무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개혁적 과도기의 유일한 치안유지 기관

1989년 11월 9일 이후 동독의 국가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민경찰은 “유일하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었다. 1990년 상반기의 인민경찰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

“(1990년 상반기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민경찰은 동베를린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동베를린 시정부와 구청들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이 거의 마비되고 좌우극단주의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동베를린의 공공안전은 항상 보장되었다.”³

이 시기에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동독의 억압적 지배체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던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양상의 범죄를 처리하게 되었다. 더욱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범죄의 흉악성이 높아지고 조직범죄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밀수와 불법 입국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정상적인 치안을 유

³ (문서번호 1. 1p).



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폭력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위의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독일통일 작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동베를린 지역에서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 국경의 장벽 철거를 방해하는 일도 없었다. 1990년 5월 18일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5월 6일의 지자체 선거 또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었다.”⁴

억압적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권력기구가 일순간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그 사회에서 일상적인 치안이 유지되며 비폭력적인 법치국가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민경찰은 실제로 동독이 국가로서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인민군 해체 과정에서 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과 동일하다. 즉 인민경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찰에게 주어진 치안유지의 임무를 수행한 것을 동베를린의 인민경찰 보고서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다.

“170회가 넘는 시위와 집회 그리고 정치적 의사를 공공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독 최고인민회의, 베를린 시 간부 등)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을 테러주의자 또는 다른 범죄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였다. 화폐 교환과정에서 은행과 예금주에 대한 어떠한 강도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155대의 현금수송차량은 항상 인민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유사한 기간 동안 신고된 범죄행위의

⁴ (문서번호 1. 1p).

수 또한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도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베를린의 인민경찰은 특히 840만 개의 탄환과 2,800개의 지뢰, 31개의 화염탄 및 6개의 폭발탄 그리고 기타 탄환들을 발굴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동독의 개혁과도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불안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인민경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인민경찰이 개혁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혁과정에 동참하였기 때문이었다.

“1990년 전반기 정치체제와 정당 시민운동의 신규세력들이 부딪히는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원탁회의가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베를린의 인민경찰은 베를린에서 열리는 원탁회의의 모든 회의에 건설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보장 받았다. 그것이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한 민주주의 운동을 보호하고 인민경찰 내에서도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도록 만드는 전제조건이었다. 동독의 중앙원탁회의에는 베를린 인민경찰 지도부의 정보 경찰장교가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베를린 인민경찰청장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주 원탁회의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회의에 정기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였다. 각 구 지역의 원탁회의에서는 인민경찰 감찰단의 능력있는 장교가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정당 및 시민운동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민경찰은 지속적으로 원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동독이 비폭력적인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원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치세력은 인민경찰에 감사를 표하였다.”⁵

인민경찰이 개혁과정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경찰과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 단체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시기 동베를린의 분위기는 관용과 비폭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새로운 법도 여기에 일조하였다고 위의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제2절 슈타지의 해체와 인민경찰

개혁적 과도기에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담당했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슈타지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슈타지 건물을 경비하고 막대한 양의 슈타지 문서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아무나 임의적으로 슈타지 건물에 접근하여 거기에 있는 문서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개의 슈타지 건물 중에서 20개 건물은 24시간 경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582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되었다.⁶

1990년 1월 15일 “신포럼”의 회원들이 동베를린의 국가안전기획청 즉 슈타지 본부 건물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한다. 신포럼 회원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건물을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건물을 점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십만 명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건물의 출입구와 사무실을 강제로 열고 서류를 가져가는 등 인민경찰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청장은 슈타지 해체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서로 잘 협력하였다고 한다.

⁵ (문서번호 1. 3p).

⁶ (문서번호 1. 4p).

슈타지가 해체되면서 그들이 소유한 무기와 장비 또한 회수되어야만 했다. 이 업무 또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담당하였다. 무기와 장비의 회수는 1990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슈타지 무기와 장비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알려진 것이 없다.

1990년 6월 1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체된 슈타지의 요원 중에서 요직을 차지하였던 간부를 제외한 직원들은 동베를린 인민경찰로 전근되었다. 이 결정은 중앙원탁회의에서 내려졌으며 실제로 506명의 슈타지 직원이 인민경찰로 임명되었다. 그 중에서 51명은 경찰장교로, 323명은 일반 순찰경찰, 132명은 민간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인민경찰 내에 분산배치 되었다. 이들을 분산 배치한 이유는 슈타지 직원들이 인민경찰 내부에서 새로운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되었다.⁷

제3절 동서독 국경 철거와 안전보장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붕괴된 후 1990년 7월 1일 동독의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서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 장벽과 동서독을 가르던 경계시설 검문소의 철거가 시작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동서베를린 간의 통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여행객의 안전보장과 연일 이어지는 다양한 대중행사 그리고 새로이 연결된 동서베를린의 지하철, 전철에서의 안전유지 또한 인민경찰의 업무에 속했다.⁸

특히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의 국경수비대가 장벽과 국경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서베를린의 치안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장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존넨알레(Sonnenallee) 또는 손하우제알레

⁷ (문서번호 1. 3p).

⁸ (문서번호 1. 5p).



(Schoenhauserallee) 등과 같이 40년 동안 분리되었던 동서베를린을 가로 지르는 거리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날에는 거리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졌고 이런 축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인민경찰의 업무에 속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989년 12월 31일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송년파티를 위해 설치된 대형화면이 무너지면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27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같이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국경검문소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4절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1990년 상반기에 동베를린의 범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인민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범죄행위의 수가 0.7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⁹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국경의 개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측되었던 범죄의 급증”은 없었다고 쓰고 있다. 단지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뿐이며,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지하철역과 전철역에서의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가 급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리히텐베르크역과 프리드리히슈트라쎄역에서 피해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1989년 상반기에 총 115건이었던 것이 1990년 상반기에 1,068건으로 증가, 리히텐베르크역의 경우 38건에서 370건으로 프리드리히슈트라쎄역의 경우 2건에서 303건의 소매치기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동독 사회에서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 상반기와 같이 베를린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⁹ (문서번호 1. 6p).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

개혁적 과도기에 동베를린의 인민경찰 지도부는 동베를린의 치안과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동시에 서베를린 경찰과의 통합작업을 준비하였었다. 베를린의 경찰은 동독과 서독 정부에 의해 형식적인 통일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1989년 11월 9일 장벽의 붕괴 이후 동서베를린을 왕래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다양한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제1절 베를린 경찰통합 진행연보

동서베를린 경찰은 독일의 모든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작업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특수한 임무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진행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9년 11월 11일, 14:00,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경통과구역인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에서 베를린 경찰청장(서베를린)과 인민경찰 고위급 간의 회의
- 1989년 11월 11일, 22:37, 서베를린 경찰과 동베를린 인민경찰 간 첫 전화 통신 연결, 무선 전신은 23:44에 연결



- 1989년 12월 20일, 양쪽 베를린 고위 경찰지휘자의 동독지역에서의 회의 개최, 주제: 교통문제와 예정된 브란덴부르크 문의 개방
- 1990년 2월 12일, 양 지역 경찰청장 회합, 분단 베를린 역사상 첫 회의; 각 경찰 고위지도부에 해당하는 자를 상임 대화 파트너로 지정
- 1990년 3월 15일, 서베를린 경찰청장과 동베를린 인민군 사령관의 포츠담 회의
- 1990년 4월 1일, 모든 베를린 수상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국경 개방; 양 지역의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isten)들이 실제로 광범위한 공동 업무를 최초로 수행
- 1990년 4월 27일,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부장과 에리히 페졸트(Erich Pezold) 서베를린 내무장관의 회의; 서베를린의 입장은 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공동 업무수행을 빠르게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독 내무부장은 이를 어느 정도 늦추고자 함
- 1990년 7월 초, 서베를린 내무부와 동베를린 내무부 그리고 동독의 내무부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그룹 설치; 과제는 통일과정을 위한 준비 조치 실행 및 현 상황에 대한 기술, 이후 목적 설정의 전개 그리고 실질적 결정을 위한 준비
- 1990년 7월 2일,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지침의 개시
- 1990년 7월, 베를린-쉴레펠트(Berlin Schönefeld) 공항의 입국심사와 항공승객심사의 변경(인력,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이 공항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사이의 국경에 위치, 쉴레펠트는 당시 동독의“수도 공항”)
- 1990년 10월 1일, 13:00, 경찰통수권이 동베를린으로부터 베를린주로 이양됨(1990년 9월 25일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내무부 결정), 통일 관련 축제행사 진행시 경찰업무를 고려해 10월 3일 예정된 이양이 10월 1일로 앞당겨짐

제2절 사전작업

베를린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큰 문제없이 경찰의 통합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통합 준비작업과, 인적 승계를 위한 심사와 선발 작업 그리고 재교육작업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 1990년 7월 초에 이미 베를린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였다.¹⁰⁾

사전작업의 기본적인 원칙은 10월 3일 통일이 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경찰 조직을 서베를린의 조직구조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찰관할지역을 해체하고 새로이 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작업은 경찰조직의 개편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지역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1990년 7월 1일에 작성된 실행계획의 틀이라고 명명된 문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져야 할 사전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경찰의 관할지역 간에 자문과 법적 지식에 대해 조언하고 협조한다.
- 경찰의 근무계획과 경찰차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담당했던 내부 감찰작업을 지속한다.
- 관할지역의 인민경찰력을 순찰근무에 중점을 두는 경찰영역에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 직무자의 자격기준과 요건을 확립하고 업무내용을 설명하는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순찰차의 임시 업무표를 작성한다.

¹⁰⁾ 베를린 경찰 통합을 위한 긴급조치(문서번호 23).
실행계획단계(문서번호 21).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 조치(문서번호 54).

- 순찰차와 순찰경찰의 수요에 대해 측정한다.
- 경찰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검토한다.
- 무선통신차량의 순찰업무에 대한 분석과 순찰차의 배정계획을 실질적인 수요에 맞추어 조정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베를린의 경찰구역이 해체된 이후 하나로 통합된 베를린 경찰의 조직이 도시 전체의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3절 통합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

1990년 7월 4일 경찰청장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그룹과 그 아래 치안경찰, 형사경찰, 특수경찰, 장비와 기술, 인사, 교육과 재교육, 법, 조직 등을 담당하는 7개의 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 이 그룹에는 동서베를린의 경찰들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였다. 실무그룹의 책임자는 항상 서베를린 경찰이었고 부책임자는 동베를린 경찰이 맡았다.

실무그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동베를린 경찰에 대한 상황파악이었다. 이러한 상황파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그룹의 핵심과제였다. 그러한 조치는 시간별로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사전조치와 중장기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조치로 분류되었다.

1. 사전조치 : (7월부터) 몇 주 사이에 또는 늦어도 통합된 하나의 관청이 완성되는 날까지(당시에는 12월 정도로 예상하였다) 실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전조치는 베를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소요될 경우 비용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2. 단기적인 조치 : 여기에는 1990년 말부터 1991년에 수행되어야 할 조치들이 포함된다. 1991년에도 베를린의 재정상황이 여전히 열악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치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3. 중장기적인 조치 : 여기에는 1992-1994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들이 속한다. 중장기 조치들을 통해 베를린 경찰이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무그룹이 여러 분야에서 최종적인 제안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그룹이 담당해야 할 과제는 중장기적인 경향에 관한 예측 그리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0년 7월 1일에 실무그룹이 제시한 즉각적인 조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조직 구성의 발효일 확정
- 내부근무-지휘책임의 인수
- 교대근무의 근무시간 확정
- 교대근무 지휘자 순찰책임자(순찰의 경우 동서베를린의 경찰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
- 근무단계계획에 따른 긴급구조근무계획(24시간)
- 근무에 필요한 유니폼, 무기와 장비
- 무선통신기술의 준비
- 교통사고 등록
- 긴급전화 110-무선 기술에 상응하게 준비, 정부기관과 외교공관이 집중되어 있는 베를린 미테지역의 문제
- 최소한의 필요한 사무용품의 배치
- 개별 분야에 있어서 인력 교환
- 인민경찰 자원봉사자의 처리 문제
- 경찰서의 전산장비
- 인력 규모의 변경(단기)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들이 이미 1990년 10월 3일 완성되었다고 경찰의 사전조치를 담당했던 기획팀이 1990년 11월 14일에 보고하였다.¹¹

이 보고서에는 원래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구 동독지역의 주들이 가입한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획팀이 그 과제를 완수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통수권은 이미 1990년 10월 1일에 인수되었고 그에 수반하는 인력의 통합은 이미 완료되었다. 경찰의 업무는 형사부, 교통부, 수상경찰 등 11개 부서로 분할되었다. 업무의 재구성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피하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차량과 물자가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구 동베를린 지역의 모든 경찰 종사자들, 특히 서베를린에서 자원해 온 직원/경찰과 동베를린의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경찰서에서는 동베를린 출신 직원들이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통합된 경찰에 잔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높은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인사위원회가 조속히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획팀은 지난 6주 동안 동베를린의 경찰 관련 시설을 검토하였다. 그 중에 많은 시설은 그 상태가 열악하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¹¹ 경찰분야의 통합과정(문서번호 15).

제4절 통합의 완성: 1990년 10월 1일¹²

1990년 10월 1일 13시를 기해 동베를린 경찰의 지휘권이 서베를린 경찰에 양도되었다. 그 이유는 10월 3일에 열리는 통일 기념식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먼저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서 베를린 경찰은 약 35시간 동안 동독의 영토인 동베를린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통합된 베를린 경찰의 관할구역은 일단 서베를린에 있던 관할구역을 유지하면서 동서베를린의 경계지역에 있던 경찰관할구역을 동베를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베를린 전체에 5개의 관할구역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서베를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베를린 전체의 관할구역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베를린의 관할구역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동베를린 지역을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규정으로 1992년 2월, 3월까지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베를린 지역을 기존의 서베를린 관할구역으로 포함한 결과 기존 서베를린 경찰 지도부의 통일된 명령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 경찰의 지도부에 인적인 변화가 없다.
- 동베를린의 경찰서와 파출소가 통일과 동시에 명령체계가 갖추어진 지도부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 기술적인 이유로 해체가 불가능한 동베를린의 11개 하위지구의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 동서베를린의 경찰이 서로 함께 섞여 근무한다는 원칙을 쉽게 관철할 수 있었다.

¹² 통합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던 서베를린 경찰청의 하트무트 뮐렌하우어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동베를린 경찰 지도부가 곧바로 해체될 수 있었다.

통합된 베를린 경찰의 총인원은 1990년 10월 1일에 29,498명이었다. (서베를린 경찰 직원 17,701명, 동베를린에 11,117명) 이들 중 약 5,000명이 동서베를린 경찰이 함께 근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을 바꾸어 근무하게 되었다 (약 2,700명의 동베를린 경찰이 서베를린에 근무, 2,300명의 서베를린 경찰이 동베를린에 근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혼합의 원칙’에 따라 함께 일을 한 것이 베를린 경찰통합이 비교적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고 뮐렌하우어씨는 회상한다. 그러나 통일 초기 동베를린 경찰의 급여가 서베를린 경찰의 60%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제5절 정권 범죄 및 통일 관련 범죄

정권·통일범죄 수사센터(ZERV)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및 동독의 과거에 대한 형사적 청산을 위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베를린 경찰기관으로, 통일 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동독이 외국에 은닉한 자금추적이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프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 사건¹³이 그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

¹³ 상업조정회의(Kommerzielle Koordinierung, KoKo)’라는 비밀회사 대표인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프스키가 외화벌이를 통해 동독 말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건으로 그의 배후에 에리히 호네커(Honecker) 사통당 의장 겸 동독 각료회의 의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임용 문제

1990년 10월 1일에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소속인원이 모두 통합된 베를린 경찰에 잔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동독의 지배 체제 하에서 인민경찰의 20% 그리고 경찰직원 12%가 비밀경찰을 위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즉시 해고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실무기획팀이 11월 22일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베를린 인민경찰 출신의 직원들이 통합 이후 높은 의욕을 갖고 일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통합된 경찰에 남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쉽게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였다. 1990년 12월 22일 베를린 내무부는 사전조치 기획팀에서 언급한 인사위원회에 업무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¹⁴ 이 문서는 인사위원회의 과제는 시정부에 의해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베를린 경찰에 귀속되게 된 구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종사자들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경찰에서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법치국가에 부합되게 일하는 경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에 연루

¹⁴ 구 인민경찰력의 베를린 주 경찰집행직무로의 편입에 있어서의 근무법적 그리고 조직적 절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참조사항(문서번호 33).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 인사위원회의 인원 선발 과정은 근본적으로 통일조약에 제시된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개별 직원의 이력서와 설문지 그리고 인사 관련문서를 바탕으로 평가되었고, 슈타지에 근무하였거나 비공식적으로 협조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내무부는 경찰 종사자의 개별적인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모두 참조하기를 권하고 있다. 인민경찰 종사자의 경우 경찰에서의 직급의 비중, 맡았던 역할의 수, 상근으로 그 역할을 맡았는지 아니면 비상근이었는지, 사회주의통합당이나 다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의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면 가능한 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동독에서 평화적 혁명이 진행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제 삼자가 볼 때 그 사람의 정치적인 태도가 완전히 민주적인 것으로 전향한 것이 확실해 보일 때에는 그가 사통당 지배체제의 대표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인민경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경찰관의 경우 그가 과도기에 동독의 민주적 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일단은 잔류 부적합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인민경찰의 하위직에 근무하였던 사람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급자의 명령 체계 하에서 근무하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하급경찰(mittlere Dienst)로 임용하는데 비교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동베를린 인민경찰 종사자의 통합 베를린 경찰 잔류 여부는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에 의해 결정된다. 경찰청장은 인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고 인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개인의 전문 자격요건과 적합성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경찰통합 과정에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 소속 직원 전원이 작성해야 했던

설문지는 총 18페이지 72개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질문의 내용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 인적 사항
- 인민경찰 직무 이전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 인민경찰 직무 이전 활동
- 직업교육과 인민경찰에서의 직업상 이력-인민경찰에서 달성한 직급-최근 직무에 대한 기술-다른 직무로의 전환?
- 1989년 11월 9일 이후 자신의 인사문서 수정여부
- 향후 직무에 대한 특별 희망사항
- 형사법상 유죄판결여부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에서 1989년 11월 9일 이전에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가?
- 구 국가안전부/국가안보청에서의 혹은 이 기관 산하기관 혹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활동여부
- 그렇다면 어떤 기능? 언제부터 언제까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서 재정적 원조를 받았는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 협력의무 의사표시를 서명했는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서 군복무?
- 상기 기관과의 접촉?
- 당신의 직무처가 증거 조작 혹은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형사 소추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 구 국경지역 근무?

이러한 설문지에 답을 작성한 사람은 11,800여 명의 동베를린 소속 경찰 인원 중에 9,600명이었고 그 중에서 8,344명이 잔류 추천을 받았고 1,056명이 해고 추천을 받았다.

¹⁵ 베를린 인민경찰의 고위직급자에 대한 인사정보 설문지(문서번호 37).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교육

통합된 베를린 경찰에 잔류할 동베를린 인민경찰 출신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합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찰장비와 기술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경찰업무에 대한 상이한 시각 때문이었다. 동독의 인민경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베를린의 경찰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날부터 곧바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베를린 장벽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와 관련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했고, 그 결과 1989년 11월 11일에 이미 동서베를린의 경찰이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이후 동서베를린 경찰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1989년 12월 31일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는 광장에서 열린 송년파티 중에서 비디오 첩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각 병원으로 분산 수용되게 되었을 때, 서베를린의 경찰은 당연히 부상자와 사망자가 어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의 경우 그러한 일을 경찰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때 인민경찰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베를린 통합과정에서 실무그룹으로 사전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던 하트무트 뮐렌하우어씨가 인터뷰에서 회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통일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90년 6월부터 이미 동베를린 인민경찰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특히 동베를린 경찰의 중간단계 책임자인 각급 파출소의 소장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통합준비를 담당하던 실무그룹 중에 재교육문제를 논의하던 그룹은 1990년 6월 1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시 베를린 경찰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베를린 경찰이 통합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인민경찰 중에 약 4,000명에서 6,000명을 재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¹⁶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 동안에 재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민경찰 중에서 일정한 수가 먼저 교육을 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각급 파출소의 소장들이 이런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베를린 파출소의 소장들이 대부분 소련 비밀경찰에 협조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고 그들은 통합된 베를린 경찰에 남지 못하였다.

통합된 베를린의 경찰에 임용된 8,500명의 동베를린 인민경찰 인원을 재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동독 인민경찰의 교육과정이 서독의 경찰교육과정과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민경찰 출신의 직원 모두에게 서독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그것은 비용 때문에 그리고 시간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1990년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게오르크 쉘르썬씨는 인터뷰에서 회상하였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민경찰 출신의 베를린 경찰 인원을 재교육하기 위해 3단계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1단계는 4주간의 기본 세미나과정

¹⁶ 베를린 인민경찰을 위한 적응 / 재교육 실무그룹(문서번호 19).

으로 1992년 말까지 인민경찰 출신의 베를린 경찰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은 경찰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에 집중되었다. 기본 세미나과정을 마친 사람은 3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열리는 발전과정 세미나(Aufbauseminar)와 전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과정 세미나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정치교육, 헌법, 형법, 공무원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전문 세미나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전문 분야의 지식을 교육받는다. 그리고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수과정이 매년 실시되었다.

이들은 통일조약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3년 이내에 경찰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습득하여야만 하였다.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4년까지 8,000명이 3단계의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 베를린 경찰의 통합

과제	주무부서	주요역할	문제점	해결방안
통합 구조개편	서베를린의 내무부서; 동베를린의 내무부서	경찰청장 고위직 공무원 실무그룹과 하위실무그룹 다양한 직급의 인력	전문지식과 대면접촉 결여, 적으로서의 이미지, 주민들의 상이한 인용 정도, 광범위한 인수 를 위한 작업	초기 접촉, 직접적인 대화수단의 구축과 확대, 실무그룹의 구성, 빈번한 회의 개최, 상세한 실무지도
치안보장		경찰 지휘자와 현지 인력	국경의 치안문제, 공항 심사절차	실행 가능한 대안의 신속한 구상
인력심사		인력위원회	통일 전 국가안전부와 의 접촉 혹은 국가안 전부 활동 가능성 심사	심사절차, 광범위한 설문지
인력통합		내무부와 경찰청 장 산하 모든 직 급의 경찰	교육 격차, 주민들이 가지는 경찰 위신의 격차, 보수 격차	재교육 프로그램, “혼합(Durchmischung)”, 새로운 장비와 제복

수록된 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동베를린의 인민경찰과 관련된 문서들은 대부분 베를린 경찰청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총서에 수록된 문서들은 베를린 경찰청의 도움으로 문서고에 소장된 문서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이 문서들 중에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 문서들은 현황에 관한 보고서와 공문, 직무지시 그리고 양식과 설문지의 견본, 보도문서와 회의록 그리고 개인의 발표문 순으로 분류되었다.

1. 현황 보고서

이 장에 수록된 문서들은 대부분 1990년 6월부터 9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들 보고서의 주요 관심사항은 인민경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문서번호 1,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1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경찰청 업무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였다. 문서번호 2는 인민경찰의 현황보고서 중에서 동서베를린 경찰행정청 간의 차이점, 그 중에서도 특히 수감자 감시에서 서베를린의 치안경찰과 동베를린의 인민경찰 간의 근본적인 상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문서번호 3, 치안경찰과 인민경찰의 일반 직무에 있어 중요 차이점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양 경찰행정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쪽 기관의 직무배정, 조직의 구성과 권한 및 직무시간에 관한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



시되어 있다.

문서번호 4, 하위실무그룹/업무분야에 관한 1990년 7월의 보고서는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조직 구성을 서베를린 치안경찰의 조직 구성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까지 이를 실행했는지를 자세히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양호하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 정보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문서번호 5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문서번호 6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의 담당자들이 법규정을 모르거나 혹은 단지 불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문서번호 7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차량 허가행정청의 문서의 비호환성이 아직도 지배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문서번호 8에서는 1990년 7월 1일 동베를린 직무지역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가 1990년 7월 1일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서번호 9에서는 수감자 감시에 대한 현황조사와 현황분석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문서번호 2와 연결하여 함께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실행을 위한 준비 조치가 필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통합을 준비하는 실무그룹은 “치안경찰”로 통합될 인민경찰이 향후 업무수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직무분야의 현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일차적으로 요약,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되었던 분야는 계속 또 다시 논의되었는데, 예를 들면 서베를린의 모델에 따른(행정과 조직) 구조의 문제, 권한과 지시권한 및 인적 그리고 물적 장비의 문제들이 그것이다(문서번호 10, 경찰 행정청의 통합-실무그룹 치안경찰).

1990년 9월의 회의를 통해 베를린 경찰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다수 문제점이 기술되고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무기장비와(문서번호 11, 경찰행정청의 통합; 실행과 유보결정의 문제), 차량 투입(문서번호 12, 경찰행정

청의 통합; 실행과 유보결정의 문제) 그리고 경찰지구시설/장비(문서번호 14, 경찰지구시설/장비에 대한 현황보고)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모든 세 개의 문서는 특정 물적 장비분야가 적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정한지, (더 이상) 사용 불가한지, 혹은 조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권고를 하고 있다. 문서번호 13, 차량에 대한 현황보고(1990. 09. 20일자)는 부분적으로 국가 통일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상세하게 (작업이) 계획되었는지, 더 나아가 차량 등급의 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미 사전작업이 완료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문서번호 15, 경찰분야의 통합과정에서 “사전준비 부서”는 1990년 11월 14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과제를 최대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1990년 10월 3일 이후 작성된 2개의 문서 중 하나일 뿐이다. 현황조사와 현황분석은 향후 실행해야 할 조치들의 기초로서 10월 3일 이전에 완료됐고, 완료됐어야 했다. 문서번호 15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 분야, 즉 예정된 인력선출-위원회가 곧 구 인민경찰 소속 경찰의 향후 업무수행(인수 혹은 해고) 여부를 해결해야 할 업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서번호 31부터 40에서 보다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문서번호 16, 통계 제 4 인력-선출위원회, 직무인수 권고는 1991년 5월 14일 현재 제 4 인력-선출위원회의 직무인수 권고에 대한 개관을 비율과 직무직급별로 기술하고 있다.

2. 공문

문서번호 17은 1990년 7월 4일 현재, 베를린 경찰청장의 경찰국장에 대한 실무그룹을 조직할 직접적인 직무 지시를 포함, 새로운 지위에 대한 상황, 과제, 목적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또 다시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1990년 10월 3일로 예정된 경찰행정청의 통합을 2주 앞당기는 것을 공고한다(문서번호 18, “...통합에 드리는... 말씀”



경찰국장의 경찰 직원에게 보내는 공문). 이 공문은 무엇보다 인민경찰의 재교육과 향후 “혼합” 업무 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직무지시

인민경찰에 관한 현황조사를 유추해 보면 첫 직무지시는 이미 6월에, 그 후에 계속해서 1990년 9월에 내려졌다. 시간적으로 급박했기 때문에 인민경찰 소속 경찰의 직무배정과 재교육 분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변혁기에 실현 가능한 “집중”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다(문서번호 19, 실무그룹 베를린 인민경찰의 적응 재교육, 문서번호 20,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교육 배정/재교육에 대한 방안). 일반적인 실무그룹과 프로젝트그룹의 계획실행단계와 관련하여 행정구조의 재정비의 예를 보면(문서번호 21, 실행계획단계, 그리고 문서번호 22, 프로젝트그룹의 실행계획단계에 대한 보충설명), 3단계로 나누어 졌는데, 즉 1. 사전 조치, 2. 단기 조치, 그리고 3. 장기 조치이다. 특히 긴급한 경우 긴급조치도 행해졌다(문서번호 23, 베를린 경찰 통합을 위한 긴급조치). 특별히 상세한 직무 지시사항은 무기 장비와(문서번호 24, 참조 [경찰행정청의 통합의 경우 무기장비], 문서번호 26, 경찰행정청의 통합; 특히: 권총 사용 유지, 문서번호 27, 경찰행정청의 통합; 특히 인민경찰 경찰청의 무기, 총탄의 인수와 행정, 문서번호 28, 무기에 관한 1990년 9월 20일자 현황보고) 차량/교통기술의 경우였다(문서번호 25, 1990년 10월 3일 직무용 차량 표식의 통일을 위한 조치, 그리고 문서번호 29, 참조-바스도르프(Basdorf) 인민경찰-대기근무의 재고장비로부터의 차량-인수절차).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 시점까지는(문서번호 30,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잠정적 처분) 물질적 장비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현황에 대해 조사와 직무지시를 했으며, 1989/1990년 변혁기에 무기, 차량 및 제복의 통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도 현 상황과 행해야

할 향후 조치는 최소한 분명했다. 하지만 주요과제는 당시 주역들에게는 아직 장래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구 인민경찰의 인력을 베를린주의 경찰업무에 편입시키는 복합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안전부와의 협력가능성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담당자들이 1991년까지 해결해야 했다.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고(문서번호 31, 문서번호 32; 특히 직원질문서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국가안보청 협력 가능성 판단에 대한 참조사항), 인력선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고용/인수 권고를 하거나, 혹은 과거의 국가안전부와의 연루가능성으로 인한 “부적합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문서번호 33, 특히, 인력-선출위원회에 대한 참조사항, 문서번호 34, 문서번호 35, 구 중급직 인민경찰 소속경찰관의 심사를 위한 그 밖의 참조사항).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인력-선출위원회의 작업은 표준화된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 동의를 의사표시 이후에(문서번호 36, 비밀유지와 독일 기본법 준수 및 슈타지 국가안전부 경력에 대한 심사의 인지에 대한 선서) 구 베를린 인민경찰 소속의 모든 경찰관에게 상세한 직원설문지가 주어졌다(문서번호 37, 베를린 인민경찰의 구 고위직급자에 대한 직원설문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모든 78개의 문제 중 65번째 문제였다: “당신은 구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했었습니까?” 설문지 심사 이후 인력-선출위원회는 평가와 권고를 했다(문서번호 38, 인력-선출위원회에 대한 제안, 문서번호 39, 직원설문지의 심사 이후 재고용 통지, 문서번호 40, 형사경찰 부서 및 제 1 경감부 지도급 경찰관의 인성부적합성). 문서번호 38에 수기로 기록된, 엑스 표를 해야 하는 이런 표준양식의 네모상자는 공무원들이 당시 얼마나 시간의 압박하에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

이 주제 분야를 요약한 11개의 모든 문서(문서번호 41에서 51)는 1990년 9월에 작성되었고, 국민들에 있어서의 분위기 및 통합 사전준비의 현황과 그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여준다.

6. 회의록

문서번호 52에서 61은 모두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을 준비했던 프로젝트그룹과 실무그룹의 회의록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해결 방안과 조치를 제안했으며 시간상의 급박함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보여준다. 여기서도 이미 이야기 했던 주제를 접하게 된다. : 조직/행정구조, 장비(차량, 제복, 무기), 교육/재교육/국가안전부와의 협력여부 심사.

7. 발표문

문서번호 62와 63은 전체 주제에 대해 상세하고 상당히 체계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 경찰행정청의 통합에 절대적으로 관여했던 2명의 주요 인물들이 작성했다. 정보 보호의 이유로 문서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보고와 현황				
1	인민경찰(PdVP)에 대한 보고(표지 없음)-제1장: 베를린 인민경찰청 (PdVP) 업무 결과	1990년 6월 1일	인민경찰	
2	수감자 감시에 있어 치안경찰과 인민경찰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서술 [발췌]	1990년 6월 1일	치안경찰/인민경찰	
3	치안경찰과 인민경찰의 일반 직무에 있어 중요 차이점에 대한 비교서술	1990년 6월 1일	치안경찰/인민경찰	
4	하위 실무그룹과 업무분야	1990년 7월 1일	하위 실무그룹	
5	동베를린 차량소유주 관련 문서의 호환성	1990년 7월 12일	연방차량관리청(Kraftfahrt-Bundesamt)	
6	입국심사와 공항 입국자 심사 업무의 수행 [부록 5 1990. 07. 08 회 의록]	1990년 7월 17일	하위 실무그룹 항공안전	
7	동독-차량소유주에 대한 정보 [부록 4 1990. 07. 19 회의록]	1990년 7월 19일	실무그룹: 주 주민자치센터	
8	(동)베를린에서의 경찰 관할구역과 지역 전권위임자(ABV, Abschnittsbevollmächtigten)의 위임범위에 관한 조사	1990년 7월 19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9	현황 조사와 초기분석 [부록 3 1990. 07. 19]	1990년 7월 20일	치안경찰/인민경찰	
10	경찰 행정청의 통합/치안경찰 실무그룹	1990년 7월 26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11	경찰행정청의 통합: 대책 및 문제점들과 결정을 위한 제안	1990년 9월 3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12	경찰행정청의 통합: 대책 및 문제점들과 결정을 위한 제안	1990년 9월 4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13	경찰차량 운용에 대한 현황보고	1990년 9월 20일	DL 22과	
14	경찰서 시설/장비에 대한 현황보고	1990년 9월 21일	DL 212과	
15	경찰분야의 통합과정	1990년 11월 14일	주 경찰국 사전준비 부서	
16	인사위원회(PAK) 통계 4 및 운용방안 권고사항	1991년 5월 14일	인사위원회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 공문				
17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제: 실무그룹 설치-경찰청장이 지도급 경찰국장에게	1990년 7월 4일	베를린 경찰청장이 지도급 경찰국장에게	
18	"...통합에 드리는... 말씀"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보내는 공문	1990년 9월 18일	베를린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 직원에게	
3. 업무지시				
19	베를린 인민경찰을 위한 적응/재교육 실무그룹	1990년 6월 11일	실무그룹 적응재교육	
20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교육 배정·재교육에 대한 방안	1990년 6월 13일	실무그룹 적응재교육	
21	실행계획단계	1990년 7월 1일	실무-/프로젝트그룹	
22	프로젝트 그룹의 실행계획단계에 대한 보충 설명	1990년 7월 1일	실무-/프로젝트그룹	
23	베를린 경찰 통합을 위한 긴급조치	1990년 7월 1일	치안경찰/인민경찰	
24	침조-경찰행정청 통합시의 무장	1990년 9월 1일	베를린 경찰청장	
25	1990년 10월 3일 경찰 차량 표식 통일을 위한 조치	1990년 9월 19일	DL 21과	
26	경찰행정청의 통합: 권총 사용 유지	1990년 9월 19일	DL 24-043과	
27	경찰행정청의 통합: 인민경찰 경찰청의 무기·총탄의 인수와 행정	1990년 9월 19일	DL 24과	
28	무기에 관한 1990년 9월 20일자 현황보고	1990년 9월 20일	DL 24과	
29	침조-바스도르프(Basdorf) 인민경찰대 장비로부터의 차량 인수절차	1990년 9월 21일	DL 221과	
30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잠정적 처분	1990년 9월 26일	베를린 경찰청장	
31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 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승계 혹은 청산	1990년 11월 12일	서베를린 내무행정/동베를린 내무행정	
32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 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설문지 평가와 인사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IS)/국가안보청 (AI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조사항	1990년 12월 4일	서베를린 내무행정/동베를린 내무행정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3	구 인민경찰력의 베를린 주 경찰집행직무로의 편입에 있어서의 근무 법적 그리고 조직적 절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참조사항	1990년 12월 22일	내무행정	
34	1991년 2월 22일 주 경찰국에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혹은 대표간 회합	1991년 2월 25일	인력-선출위원회	
35	중위직급자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심사를 위한 그 밖의 참조사항	1991년 3월 4일	인력-선출위원회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36	비밀유지와 독일 기본법 준수 및 국가안전부 경찰력에 대한 심사의 인지 에 대한 확인서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 인력-선출위원회	
37	베를린 인민경찰의 고위직급자에 대한 인사정보 설문지		내무행정,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 인 력-선출위원회	
38	인사위원회 제출서류		인력-선출위원회 보도자	
39	인사정보 설문지의 심사 이후의 임무지속 통지	1991년 6월 13일	경찰청장, 인사조직부	
40	형사경찰 부서 및 제1 경감부 지도급 경찰관의 인성 부적합성		부서/형사경찰	
5. 보도 광고와 신문 기사				
41	베를린은 오직 한 명의 경찰청장만을 갖는다.	1990년 9월	게오르크 쉘르프(Georg Schertz) 경 찰청장(사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에리히 페폴트(Erich Pätzold) 내무장 관(사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독일 통신-에이전씨
42	동독 경찰관은 직무선서로부터 면제됨	1990년 8월	페타-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내무장관, 인민경찰, 형 집행, 소방서	독일 통신-에이전씨
43	동베를린 경찰은 전적으로 재조직된다	1990년 9월	게오르크 쉘르프(Georg Schertz) 경 찰청장(사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4	10월 3일 이전 경찰책임의 인수	1990년 9월	에리히 페쾨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독일 통신-에이전씨
45	다수의 경찰관은 머리에 서로 적으로서의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1990년 9월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독일 통신-에이전씨
46	경찰관에게 새로운 제복을	1990년 9월 26일	동베를린 행정부, 서베를린 행정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셰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쾨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베를리너 짜이퉁(Berliner Zeitung)
47	보도-페쾨트(Pätzold): 서베를린 경찰은 전 베를린으로의 경찰통수권 이양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1990년 9월 26일	동베를린 행정부, 서베를린 행정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셰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쾨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내무행정 공보부의 보도 공고, 224/1990
48	"제복과 무기로 뒤덮여있지 않은 도시"	1990년 9월 27일	에리히 페쾨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셰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바흐만(Bachmann) 경찰청장(동베를린)	디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9	경찰 10월 3일부터 통합, 베를린 경찰이 통일을 앞당기다	1990년 9월 27일	치안경찰/인민경찰, 귄터 하이데만 (Günter Heidemann) 인민경찰 부 경찰청장, 게오르크 셰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베제트 암 아벤트 (BZ am Abend) [1990년 이후: 베를린 커리어(Berliner Kurier)], 디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
50	동베를린 경찰, 오는 월요일부터 서베를린 행정청 소속 예정	1990년 9월 28일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 장관(서베를린), 고트프리트 하인체 (Gottfried Heinze) 주 치안경찰국장(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연방 하원 기민당-연정(서베를린), 기민당/기사련-연방하원연정, 기민당/기사련 연방연정의 프리드리히 볼(Friedrich Bohl) 국회의원, 발터 몸퍼(Walter Momper) 베를린 시장(서베를린)	디 타게스썬파겔 (Die Tagesspiegel)
51	페쾰트(Pätzold)가 디스텔(Diestel) 내무장관에게 제인한다: "서베를린 경찰이 즉시 전 베를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	1990년 9월 28일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 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 (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기민당/기사련 연방하원연정, 기민당/기사련 연방연정의 프리드리히 볼(Friedrich Bohl) 국회의원, 발터 몸퍼(Walter Momper) 베를린 시장(서베를린), 베르너 콜호프(Werner Kolhoff) 행정부대변인(서베를린)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Berliner Morgenpost)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 회의록				
52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대표자의 그 과제수행을 위한 회의(록)	1990년 7월 6일	인민경찰 경찰청, 베를린 행정부(서베를린), 내무부(동독), 내무행정(동베를린)	
53	치안경찰 설립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1990.7.6) 회의록	1990년 7월 9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하위 실무그룹 치안경찰, 프로젝트그룹 경찰	
54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 조치	1990년 7월 9일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형사경찰	
55	장비와 기술 실무그룹 설립 회의	1990년 7월 10일	실무그룹 장비와 기술, 프로젝트그룹 경찰	
56	경찰 실무그룹의 권한 관련 프로젝트그룹의 제1 회의 회의록	1990년 7월 11일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법, 동베를린의 행정	
57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의 제1 회의(1990.7.13) 회의록	1990년 7월 16일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 지구 경찰	
58	실무그룹 “인력, 교육과 재교육”의 제3 회의	1990년 7월 19일	실무그룹 인력, 교육과 재교육, 치안경찰/인민경찰,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 형사경찰 경감국 1, 내무부	
59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업무”의 제3 회의(1990.7.26) 회의록	1990년 7월 26일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 지구 경찰	
60	1990년 8월 27일, 8월 28일 그리고 8월 30일 회의 회의록	1990년 9월 3일	실무그룹 치안경찰	
61	제4 인사위원회(4. PAK)의 제1 회의 회의록	1991년 3월 19일	인사위원회, 주 베를린, 치안경찰, 형사경찰, 칼 립크네흐트 대학(Hochschule Karl Liebknecht)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발표문				
62	경찰청의 통합. 두 경찰청 통합의 도전-베를린의 시각에서	1991년 10월 1일	게오르크 셰르프(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행정(서베를린), 행정(동베를린), 내무부(동독), 동독 국경수비대	게오르크 셰르프(Georg Schertz) 베를린 경찰청장의 민스터경찰-지휘자 아카데미에서의 회의 "경찰행정청의 지휘"에서의 발표
63	베를린 경찰의 통합	2001년 5월 8일	하트무트 몰렌하우어(Hartmut Moldenhauer) 제1 경찰국장, 게오르크 셰르프(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동독 국경수비대, "가둠(Gauck)" 행정청, 동독의 국가안전부	하트무트 몰렌하우어(Hartmut Moldenhauer) 경찰국장의 벨기에 모나에서의 국제 경찰청장 협회에서의 발표

문서 요약

1. 보고와 현황(문서번호 1~16)

담당자 / 기관_ 인민경찰

내용_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1990년 상반기 이 도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호하고 독일 국민의 통합과정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공헌을 했다.

1. 인민경찰은 전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직면했다.
 - 권력남용, 부패 그리고 선거조작(범죄자는 거의 과거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고위당직자들 뿐이었다.)
 - 범죄양상에 있어 동서베를린 연계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흉폭성이 증가
 - 공공의 안전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폭력적인 난동(거리의 소요, 집단난동)
 - 경찰에 대한 폭력적 조직범죄
 - 반유대적인 비방, 파시즘의 숭배; 외국인에 대한 내지는 외국인 간의 폭력사용
 - 점거
 - 서방국가의 소비품의 불법 상거래
 - 외국인 입국의 증가, 일부는 불법적인 입국
 - 여성과 아이들의 도시 구걸행위 첫 발생(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었음)
2. 더 나아가 인민경찰은 구 정치체제와 신 정치체제 간의 반목에 있어 평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3. 그 밖에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주요 업무는 비밀경찰 즉, 국가안전부의 해체에 있었다. 인민경찰을 통해 과거 탄압의 대상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안전이 보호되었다.
4. 동서베를린 경찰의 단일화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제 공동의 사전준비, 경찰 인력과 정보의 상호적인 교환 및 재교육조치가 보장되었다.
5. 더 나아가 다음 분야에서도 양 경찰 간의 협력이 중점적인 사항으로 마련되었다:
 - 독일 국경 내의 안보와 질서
 - 국민경제의 보호
 - 교통안전
 - 화재예방
 - 신분증과 주민등록
 - 형 집행



문서
번호 2

수감자 감시에 있어 치안경찰과 인민경찰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서술[발췌]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치안경찰/인민경찰

내용

수감자 감시 분야에 있어 치안경찰과 인민경찰을 표로 비교하였다. 동서베를린의 수감자 감시를 위한 직무 구조는 상이하며, 장비 면에서 볼 때 치안경찰은 일반적 경찰장비가 원칙인 반면, 인민경찰-경찰지구대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지역의 경우는 인민경찰과 비교할 만한 평가가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인민경찰의 조직구조를 치안경찰의 조직구조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수감자 감시 직무의 경우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장비에 있어 동일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담당자 / 기관_ 치안경찰/인민경찰

내용_

1. 동베를린의 경찰지구와 서베를린의 경찰지구의 관할사무: 인민경찰과 치안경찰(서베를린)의 관할사무에서의 일반적 차이점은 이미 관할사무의 지정에서 볼 수 있다. 인민경찰의 형식적 관할권은 치안경찰(서베를린)의 형식적 관할권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민경찰의 경우 개별적으로 특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2. 조직과 권한: 서베를린 경찰지구 관할사무는 독자적인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인민경찰 경찰지구는 인민경찰-감독청의 지시에 엄격히 구속되고 결정에 있어 독자적인 재량권이 적다.
3. 직무시간에 관한 규정: 서베를린의 경찰지구 직무는 그 교대근무가 연간 업무주기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인민경찰 경찰지구의 업무는 비교적 짧은 주기로 정해져 있다. 인민경찰의 주당 근무시간은 치안경찰보다 상당히 많다(43.5시간 대 38.5시간).



문서
번호 4

하위 실무그룹과 업무분야

1990년 7월1일

담당자 / 기관_ 하위 실무그룹

내용_

하위 실무그룹과 그 업무분야에 관하여 표 형식으로 기술.

다음과 같은 분야를 기술하고 있다:

1. 범죄행위
 2. 장비와 기술
 3. 인력과 교육: 인수와 조직개편의 기준 개발
 4. 법: 모든 관련 법 규정과 행정규칙의 보완
 5. 조직: 베를린 경찰(서베를린)의 조직구조 유지 및 인민경찰의 서베를린 조직구조에의 적응
- 그 외에 규정이 필요한 분야는 정보와 홍보업무, 정보와 비밀의 보호 및 직무상의 안전 분야이다.

문서
번호 5

동베를린 차량소유주 관련 문서의 호환성

1990년 7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차량관리청(Kraftfahrt-Bundesamt)

내용_

차량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기재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함.

서독에서는 앞서의 기재사항이 전산절차로 이뤄지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차량소유주 관련 사항을 소유주에 관한 카드를 사용하여 저장해야 한다. 동베를린의 현황과 전산장비(테이프나 디스크)의 호환성은 불명확하다.

문서
번호 6

입국심사와 공항 입국자 심사 업무의 수행 [부록 5 1990. 07. 08 회의록]
1990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하위 실무그룹 항공안전

내용_

1. 쉐네펠트(Schönefeld) 공항의 입국심사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민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
2. 현재 직무 담당자들이 법 규정을 모르거나 혹은 단지 불충분하게 알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서독과 동독의 내독 국경에서의 여객심사의 폐지에 관한 조약” 제 5조와 제 6조).
3. 결과적으로 실무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교환교육생 프로그램을 기초로 행해질 수 있다.
4. 입국 심사의 경우, 여행객들이 심사를 더 이상 “비밀탐지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문서
번호 7

동독-차량소유주에 대한 정보 [부록 4 1990. 07. 19 회의록]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주 주민자치센터

내용_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소추와 이와 연관된 차량번호의 확보를 위해 동베를린에서도 동베를린 차량등록허가청에 있는 차량소유주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서면 혹은 통신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수행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 그 외에 동독과 서독의 차량허가 관련 문서의 호환성이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서
번호 8

(동)베를린에서의 경찰 관할구역과 지역 전권위임자(ABV, Abschnittsbevollmächtigten)의 위임범위에 관한 조사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내용_

- 회의를 통해서 경찰국의 대표자들에게 당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실무그룹의 업무진행에 대해 통지했다.
- 경찰국은 1990년 7월 27일까지(동)베를린 지역을 처음 구조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각 개별 경찰지구 지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것을 요청 받았다.
- 더 나아가 경찰지구 지역의 경계가 표시된 지도 등의 자료를 완성할 것도 요청 받았다.

담당자 / 기관_ 치안경찰/인민경찰

내용_

현황조사: 연행된 피의자의 감시는 인민경찰 경찰지구에서 치안경찰의 순찰근무 소속의
당직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1. 직무: 수감자 감시는 감시경찰관이 수행한다.
2. 조직:
 - 관할권: 주 경찰국은 직무대상자 보호를 담당하는 감시경찰관이 수감자 감시직무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 조직: 제 1 공공안전 부서는 감시경찰 관련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감시경찰관의 수감자
감시직무 투입을 조정해야 한다.
 - 직업교육/재교육: 감시경찰관은 약 7주 간의 수감자 감시경찰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한다.
3. 인적·물적 장비: 구치소와 경찰력 필요에 대한 예상 및 무기와 행정 장비의 목록 작성
4. 재정 장비: 감시경찰의 보수는 보수그룹 VIII-VI b BAT에 따른다.
5. 법률규정: 경찰의 수감자감시 직무는 연방 법률과 베를린 연방주의 법률 규정에 근거
한다.



문서
번호 10

경찰 행정청의 통합/치안경찰 실무그룹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내용_

실무그룹 “치안경찰”은 그들의 견해에 따라 향후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무분야의 현황에 대한 1차 요약 을 제출하였다. 치안경찰은 인민경찰 경찰청의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정리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견본을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경찰지구 직무: (서)베를린의 경찰지구-/경찰국 모델에 따른 향후 조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통경찰: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한 정보업무(차량소유주, 운전면허증 및 운전자에 대한 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수상경찰: 근본적인 (동서베를린) 수상경찰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완료되었다. 향후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수상경찰이 어느 현행 내무부 소속 경찰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4. 승마경찰/경찰견 담당경찰: 경찰견의 통합은 공공안전/도로교통 경찰국의 단일한 지휘 하에 이뤄져야 한다.
5. 항공안전: 실무그룹은 연방 국경수비상 요구되는 안보기준을 마련하고 연방 국경수비/경찰 사무의 경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6. 공공 근린 여객교통: 양 베를린 지역의 조직은 완전히 다르다. 향후 절차는 교통 관련 경찰의 향후 조직의 문제가 규율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다.
7. 외국인 관련 사무(AGA):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서)베를린에만 존재했다. 구 (동)베를린 지역 내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8. 수감자 감시: 서베를린 기관의 형식을 인수함으로써 동베를린의 경우 수감자 감시기관은 경찰국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물적·인적 장비를 갖추야 한다. 이미 현재 인력보충 필요성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9. 직무 대상자 보호: 통합의 경우 지역 경찰국 관할권의 기본원칙을 수용하고 직무는 계속 원칙적으로 감시경찰이 수행해야 한다.
10. 자원경찰 직무: 실무그룹은 향후 원칙적으로 인민경찰의 “자원자”가 지금까지의 형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전제한다. 실무그룹은 예를 들면 자원경찰 직무에 관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연방주의 모델에 따른 제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내용_

- 표를 통해 문제점을 기술하고, 무기장비(무기의 종류, 인력의 수, 장비비용) 영역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문제점 기술: 통합 행정청으로서의 향후 조직에 대한 조속한 결정은 통합/인수의 준비를 위해 아주 중요하며, 이는 모든 실행이 이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장:
 1. 곤봉: 기존의 곤봉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장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2. 권총: 새로운 권총을 조달해야 할 것인가, 혹은 장비 유형의 변경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
 3. 기관총: 장비가 결여되어 있으며, 낡은 장비(대형과 소형 칼라슈니코프(Kalashnikov))는 노화 및 체계 문제 상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중기 및 장기적 장비의 보충 범위는 내무부와 경찰행정청 간의 결정으로 통합된 요건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문서
번호 12

경찰행정청의 통합; 대책 및 문제점들과 결정을 위한 제안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내용_

경찰차량의 투입은 당분간 기존의 인민경찰 차량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 차량들은 기술과 운행 그리고 환경보호의 분야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몇몇 차량 종류에 있어서는 직무 투입 효율성이 서독의 평균 기준보다 상당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몇몇 제품들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될 기존 차량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 :

1. 적절함: 무선통신 순찰차량 라다(Lada)
2. 조건적으로 적절함: 무선통신 순찰차량 바르트부르크(Wartburg)
3. 사용불가: 승용차 트라반트(Trabant)

담당자 / 기관_ DL 22과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직무지역에서의 경찰차량과 관련된 문제의 목록이다.

- 인민경찰 차량운전자 교육: 차량운전교사는 우선 인민경찰관을 교육하고, 일반 교육은 1990년 10월 3일 이후에야 시작된다.
- 동베를린 차량의 운행: 동베를린 차량의 유지, 수리, 관리, 그리고 주유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베를린 중앙경찰국에 있다. 모든 계획은 실행되기 시작했다.
- 차량의 인수: 준비조치는 대체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인민경찰 기동대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인수를 시작한다.
- 차량의 등급화: 모든 차량에 대한 대략의 심사가 완료되었다.
- 차량의 할당: 차량의 혼합 운영은 원칙상 허용되지만, 이때 수리, 주유 그리고 무선 통신장비의 문제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문서
번호 14

경찰서 시설/장비에 대한 현황보고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 DL 212과

내용

동베를린 경찰의 직무범위에서의 문제를 목록으로 작성했다.

- 제복: 구 인민경찰은 우선 동독시절의 제복을 착용하되 제복에 변경된 직급표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서베를린의 무선통신 순찰차량 근무 경찰은 직급표시를 부착한 이 지역의 초임직무자의 제복을 받는다.
- 무선통신 순찰차 시설: 현황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다.
- 사진기: 현황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다.
- 휴대용 금속탐지기: 현황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다.
- 견본/직무지시: 이는 조달하거나 내부 제작한다.
- 사무용품: 구비되어 있다.
- 전문서적/지도: 조달되거나 제작 혹은 재배분 된다.
- 가구: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 타자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 복사기: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한다.
- 구술녹음기: 부족 부분을 구입하여 보충한다.
- 표지판: 새 건물을 위해 예비적으로 초기 설비를 주문했다.
- 도장/직무직인: 주문되었거나 이미 구비되어 있다.
- 경찰지구 직무: 이와 관련된 장비는 기존의 시설물로 충분하다.

담당자 / 기관_ 주 경찰국 사전준비 부서

내용_

- 원래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서독 편입 이후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과정의 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사전준비 부서”는 자신의 업무를 거의 완료했다.
- 경찰통수권은 1990년 10월 1일 인계되었고 그에 따르는 인력의 혼합은 우선 완료되었다.
- 새로운 경찰지구 직무가 시작되었다. 모든 관계 공무원들과 사무원들은 높은 의욕을 보였다.
- 향후 자신들의 재임용 여부라는 인간적인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계획된 인사위원회가 조속히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장비 조달에 있어서 난점이 있으며, 예산상황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만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 동베를린의 개별적인 초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규정된 경찰지구가 설립될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태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상의 제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본 부서는 1990년 11월 20일이 경과함에 따라 해체되며; 구성원은 그들 원래의 직무지로 복귀한다.



문서
번호 16

인사위원회(PAK) 통계 4 및 운용방안 권고사항

1991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인사위원회

내용_

직급에 따라 직무인수의 권고를 비율로 기술한 원형 다이어그램.

심사대상 인원/문서의 수: 226

직무종류	인원수	비율
상급직 형사경찰	22	10%
상급직 치안경찰	21	9%
중급직 치안경찰	76	34%
중급직 치안경찰, 형사경찰, 행정	43	19%
행정직(기술/비 기술)	32	14%
해고	28	12%
기타	4	2%

문서 요약

2. 공문(문서번호 17~18)



문서
번호 17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제: 실무그룹 설치-경찰청장이 지도급 경찰국장에게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경찰청장이 지도급 경찰국장에게

내용_

베를린 경찰청 통합의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

1. 치안경찰
2. 형사경찰
3. 특수경찰
4. 장비와 기술
5. 인사, 교육과 재교육
6. 법
7. 조직

통합과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시키고 회의록 및 중간보고로 기록해야 한다.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 직원에게

내용_

베를린 경찰청장은 경찰 직원에게 1990년 10월 3일로 예정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찰 행정의 통합을 공고했다. 실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인민경찰의 이론적 재교육 이외에도 경찰청장은 경찰 직원에게 동베를린 출신 동료들이 새로운 주변과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혼합(Gemischte)” 직무 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신속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칙이 될 것이다. 나아가 경찰청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휴가, 승진금 지 및 비상사태에 대한 소문을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향후 모든 경찰지구에서의 불가피한 물자조달의 난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문서 요약

3. 업무지시(문서번호 19~35)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적응재교육

내용_

- 출발점: 동베를린 인민경찰은 서독 요건 하의 단일 법 체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쌍방의 행정이 통합되기까지 원칙상 4,000명에서 6,000명의 동베를린 인민경찰 소속경찰관이 교육을 마쳐야 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직적이고 상호간 조율된 다면적 교육 형식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 과제: 실무그룹은 가능한 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인민경찰소속 경찰관을 서독의 법규와 그의 실무 적용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며, 나아가 이에 있어 경찰행정청의 시간, 장소, 인력, 재정 그리고 조직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과도기를 위한 실현 가능한 “집중”-프로그램 형식이 그것이다.
- 요건/한계: 이 프로그램은 통합 완수 이전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후의 교육은 법제도의 동화에 대한 정치적인 근본결정에 달려있다. 초기교육은 서독의 기준에 맞는 법률만을 포함한다.
- 강의비율과 예산 관련 수치 등의 부록.



문서
번호 20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교육 배정·재교육에 대한 방안

1990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적응재교육

내용_

전환기를 위한 실현 가능한 “집중” 프로그램의 총체적 방안

- 요건/한계
 - 4단계의 통합 교육 배정을 위한 제안
 - 계획과의 조율
 - 교육배정 결정의 수요
1. 부록: 전문 분야 관련 기본 재교육 세미나의 구조와 내용
 2. 부록: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교환교육생으로서의 교육과정/세미나 참여 제공
 3. 부록: 필요 물품의 대략의 숫자와 비용
 4. 부록: 치안경찰 결연서비스 제공소
 5. 부록: 형사경찰 결연서비스 제공소
 6. 부록: “베를린 인민경찰의 재교육 세미나”의 총체적 프로그램 초안

담당자 / 기관_ 실무-/프로젝트그룹

내용_

이 문서는 1장에서 동서베를린 경찰기구의 1990년 7월 현재의 조직구조와 과제를 설명한다.
이어 장비와 조직차원에서 그리고 법적, 인적 차원에서 청산되어야 할 문제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통일 이후 수행해야 할 과제, 다시 말해 경찰의 목표를 설명한다.

4장에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동)베를린의 조직은 직무지역으로 볼 때, (서)베를린의 조직구조와 유사하게 경찰지구와 경찰국의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파출소 단위의 조직을 해체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필요한 사전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 자매결연이 체결된 동서베를린 경찰지구들을 통해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을 주는 형식으로 동베를린의 경찰지구에 대한 원조를 지속할 것
- 인민경찰 감찰기관에 의한 조사 지속
- 실무 참여를 통한 인민경찰 인력의 직무배정
- 직무자 자격기준과 요건의 확립 및 초기 직무배정프로그램의 개발

이와 동시에 필요한 단기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인력에 대한 실제 수요 심사
- 무선통신차량 순찰차량의 업무를 분석하고 현장투입계획을 현장업무에 관한 합의에 맞게 조정
- 우선적으로 결정된 직무지역-, 경찰지구-그리고 경찰국의 관할권의 현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장기적 조치:

구 동베를린 경찰구역 해체 이후 구성된 전체 베를린의 경찰지구와 경찰국 조직이 도시 전 지역의 수요에 따른 새로운 조직 구축의 목적에 합당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문서 프로젝트그룹의 실행계획단계에 대한 보충 설명

번호 22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 실무-/프로젝트그룹

내용

실무그룹 및 프로젝트그룹이 해결방안/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어야 한다.

1. 사전 조치

올해 12월로 예상되는 통일이 되는 날부터 통합된 경찰 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내에 준비 또는 실행되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실용적이며 과도기적인 해결방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 만일 추가지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정조달방안이 분명해야만 한다.

참조: 이러한 즉각적인 프로그램은 비상사태의 대비, 즉 동베를린의 안보상태의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의해 서베를린 경찰이 전체 도시의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를 위한 대비방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비방안은 경찰행정청의 관할사무이며 전문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이다.

2. 단기 조치

1990년 혹은 1991년까지 실행되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1991년에도 재정조건이 여전히 열악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장기적 조치

재정·투자계획의 기간(1992-1994)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계획된 최종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실무그룹과 프로젝트그룹이 모든 중장기적 조치의 최종 방안을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조치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향후 추이를 예상하고, 시간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문서
번호 23

베를린 경찰 통합을 위한 긴급조치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치안경찰/인민경찰

내용_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대략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조직 구성의 발효일 확정
2. a) 내부근무-지휘책임의 인수, b) 교대근무의 근무시간 확정
3. 교대근무 지휘자
4. 직무단계 계획과 제복 및 무기 관련 장비의 마련
5. 필요에 합당한 무선통신 기술의 준비
6. 개별 분야에 있어서 인력 교환?
7. 인민경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직무대상자 보호 업무?
8. 인력 규모의 변경(단기)

문서
번호 24참조-경찰행정청 통합시의 무장
1990년9월 1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경찰청장

내용_

10월 3일에 형식적인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동서베를린 경찰행정의 통합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정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내부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청의 모든 무장 인력은 베를린 전 지역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충분히 가진다. 단지 직무를 수행할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특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률화되거나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이 사용하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곤봉: 인민경찰이 사용하던 진압봉은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량 회수하고, 서베를린 치안경찰이 사용하는 경찰곤봉을 지급한다.
- 자극물 분사기: 인민경찰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장비를 즉각적으로 5,000개가 조달되도록 조치한다.
- 기관총: 인민경찰의 칼라슈니코프(Kalashnikov)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전술적인 고려와 함께 비례의 원칙, ‘연방집행공무원의 공권력 직접강제에 대한 법률’(UZwG)에서의 기관총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권총장비: 인민경찰로부터 인수될 모든 경찰은 마카로브(Makarow) 권총을 계속 소지하게 된다. 이는 이 무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무선통신 차량순찰자의 공동 업무가 다른 종류의 권총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점, 기본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거나 중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모든 경찰근무지역에 권총과 총탄의 조달이 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무기를 줄여서 인수될 인력의 장비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내무부가 권총의 경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베를린이 그것을 인수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1990년 10월 3일 경찰 차량 표식 통일을 위한 조치
1990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DL 21과

내용_

1990년 10월 3일에 투입되는 모든 차량의 단일한 표식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정해졌다:

- 무선통신차량 순찰업무: 민트녹색/흰색 칠. “인민경찰”의 명칭을 제거하고, 베를린 경찰청장의 표장을 붙이며 베를린의 공무 표지를 장착한다.
- 교통업무: “인민경찰” 이름, 표장 그리고 공무 표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절차.
- 비상경보대: “인민경찰” 이름, 표장 그리고 공무 표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절차.
- 특수경찰: 표장과 공무 표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절차.
- 기타: 표식이 변경된 차량만이 업무에 투입되도록 조치한다.
- 이유: 차량을 기술상 또는 사실상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인적 여건의 결여와 시간상 여건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포기한다. 다수의 차량에 있어 우선 표지의 변경과 새로운 표장의 장착만 제안했다.



문서
번호 26

경찰행정청의 통합: 권총 사용 유지

1990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 DL 24-043과

내용

1990년 10월 3일부터 베를린 전역에서 동서 경찰인력을 혼합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통일 후에 인수될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경험이 없고 동베를린 지역의 경찰에는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

1.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베를린 지역의 구 인민경찰 소속경찰관은 현재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무기를 배급 관리한다. (각 업무에 해당하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근무시작 직전에 직접 교부/근무 종료 후에 수거)
2.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베를린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서베를린 경찰소속 인원 중 무기를 소지하는 인원은 장비를 동베를린 지역의 근무처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3. 1990년 10월 3일부터 서베를린 지역 근무 인원으로 인수된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수령증을 쓰고 소총을 지급받는다. (사물함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업무 종료 후에는 보관증을 발급받고 반납해야 한다.

문서
번호 27

경찰행정청의 통합: 인민경찰 경찰청의 무기총탄의 인수와 행정
1990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DL 24과

내용_

무기와 총탄 재고의 인수는 반드시 서베를린의 경찰이 담당하며, 담당자는 모든 인수받은 무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인수: 베를린 경찰국은 동베를린 경찰을 인수할 때 인민경찰청장으로부터 주요 재고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령하고 해당 경찰기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장비들을 인수한다.
2. 행정: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의 행정지침과 물자관리지침은 명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침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베를린 경찰청장의 행정지침 및 물자관리 지침과 병행하여 계속 적용한다. 그를 통해 행정업무의 수행이 지체되고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문서
번호 28

무기에 관한 1990년 9월 20일자 현황보고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 DL 24과

내용

1990년 10월 3일 이후 베를린 경찰의 임시 무장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모든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은 1990년 10월 3일부터 업무의 종류와 장소를 불문하고 업무 수행 시에 마카로브 권총으로 무장한다.
- 직무기관총으로는 MP 5 A 3 만을 사용한다(인민경찰청의 기관총은 회수한다).
- 1990년 10월 3일 이후 P6 권총을 신속하게 도입한다.

무기 보관과 관련 필요한 경과규정은 근무처에 문서로 고지되었다. 인민경찰청장의 무기와 총탄 재고의 인수 및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협의 하에 결정되었고 그 이외의 관계인에게 고지되었다. 인민경찰 경찰청에서는 현재 재고정리(수류탄, 기관총, 화학물 등을 동독 내무부에 반납)가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자 / 기관_ DL 221과

내용_

절차방식:

- 인민경찰 대기근무 차량운전자는 민간 복장만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인민경찰의 표장이 아직 남아 있으면 이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민경찰”의 표시가 있으면 이도 마찬가지로 한다.
- 모든 차량서류는 인민경찰이 수집하여 모두 제출한다.
- 모든 부품을 포함한 추가 장비가 있으면 이는 차량에 배치한다.
- 차량근무에 이런 조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을 배정할 것이 요구된다.
- 이 조치는 1990년 9월 27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문서
번호 30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잠정적 처분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경찰청장

내용_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 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하면서 동베를린의 경찰통수권은 베를린으로 이양된다. 이 이양으로 근무지와 근무인력의 복종관계가 인민경찰 경찰청으로부터 베를린 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인민경찰 경찰청의 기능은 폐지된다.

1. 전 베를린 경찰의 지휘는 베를린 경찰청장에 속한다.
2. 전 베를린의 경찰집행직무의 상급 지휘권은 베를린 경찰국에 있다. 향후 경찰국은 인민경찰 경찰청으로부터 직무일부와 하급직무의 수행을 인수한다. 해당 경찰감독청은 향후 ‘경찰지구 재건’의 명칭을 가진다.
3. 경찰지구, 실, 국, 과에 관해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다.

문서
번호 31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승계 혹은 청산
1990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 서베를린 내무행정/동베를린 내무행정

내용

통일 조약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동쪽지역에서 1990년 10월 3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법적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30쪽 문서.

목차:

요건과 통일 조약의 취지

1. 요건
2. 통일 조약 규정의 취지

승계 혹은 청산의 경우 노동법상의 결과

1. 승계/청산에 대한 결정
2. 기관 혹은 그 일부의 승계의 경우 노동법상의 결과
 - 2.1. 고용관계의 지속과 고용요건의 유효성
 - 2.2. 고용합리화조치보호조약의 적용
3. 기관 혹은 그 일부의 청산의 경우 노동법상의 결과

고용관계의 정지/대기상태의 개시

4. 대기상태/재고용의 경우 노동의무의 종료
5. 대기수당의 액수
6. 노동중계/자격요건
7. 대기상태/대기수당의 종료
8. 통일 조약에 의한 대기상태의 종료
9. 대기상태 종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됨
10. 고용관계의 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민법 제 613a조의 의미의 권리계승 적용 안 됨
11. 노동법적 분쟁



문서
번호 32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설문지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fS)/국가안보청(Af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조사항

1990년 1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내무행정/동베를린 내무행정

내용_

통일 조약으로 베를린이 된 지역에서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를 상세히 기술한 47쪽의 문서.

목차:

- I. 서론
 - 1. 일반론
 - 2. 통일 조약 규정의 취지
- II. 직원설문지
 - 1. 직원설문지
 - 2. 직원설문지의 법적 근거
 - 3. 직원설문지에 대한 합의
 - 4. 직원설문지 작성의무의 피고용인
 - 5. 직원설문지의 진실에 따른 작성 의무
 - 6. 허위 적시의 법적 효과
 - 7. 직원설문지의 평가에 대한 관할권
 - 8. 내무행정의 자문
 - 9. 직원설문지의 평가
 - 10. 재고용에 대한 결정과 고용법적 조치
 - 11. 직원설문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절차의 보관
 - 12. 직원설문지 평가의 현황과 결과 보고
- III. 통일 조약에 대한 참조사항
 - 1. 제 4항과 5항의 유효기간
 - 2. 제 4항과 5항에 따른 해고에 대한 일반론
 - 3. 다른 해고 규정과의 관계
 - 4. 피고용인의 인성적합성 결여에 의한 해고
 - 5. 해고기한
 - 6. 제 5항에 따른 예외적 해고 규정에 대한 일반론
 - 7. 인권 혹은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침해
 - 8. 구 국가안전부/국가안보청을 위한 행위
 - 9. 제 5항의 해고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용인의 경우 절차
 - 10. 노동법적 분쟁

구 인민경찰력의 베를린 주 경찰집행직무로의 편입에 있어서의 근무법적 그리고
조직적 절차:

1990년 1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내무행정

내용_

1. 과제: 인사위원회는 베를린 주정부가 통일 조약에 근거하여 인민경찰의 소속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법치국가체제 하에서 경찰로 근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2. 목표: 인력선출의 목표는 법치국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경찰을 구성하며 동독체제 하에서 비밀경찰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3. 절차: 인력선출은 우선 개별 경찰관의 직업상 이력서에 대한 평가로 수행되며, 이때 직원설문지와 인사 관련 문서 그리고 평가서의 도움을 받는다. 비밀경찰의 소속 인원의 경우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직원설문지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서베를린 경찰에 의한 동베를린 경찰의 인수: 인민경찰의 고위직 경찰관 중에 동독의 변혁기에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된 베를린 경찰의 고위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나아가 구 인민경찰의 중간직 경찰관 또한 통합된 베를린 경찰에서 중간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에 많은 의심이 제기된다.
6. 재고용과 근무법상의 조치에 대한 결정: 재고용의 결정은 베를린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수요에 따라, 전문 자격요건과 인성 적합성에 따라 내린다.



문서
번호 34

1991년 2월 22일 주 경찰국에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혹은 대표간 회합
1991년 2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인력-선출위원회

내용_

경찰국장이 고급직의 심사에서 기존의 단계적인 결정과정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찰직 이전과 경찰로서의 이력(교육)
2. 이론적인 적합성
3. 전문적 직무수행
4. 인성 요건-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성향”이 중요하다(이를 증명하는 활동)

부적합성:

- 활동에서 유추될 수 있는 “부적합성”은 장기에 걸친 활동의 경우에만 그 이유가 인정된다.
- 협력행위는 국가안전부가 지도하는 분야에서의 군복무의 경우도 인정된다.
- 참조: 인민군(NVA)의 훈장은 국가안전부와 국가안보청과 같이 비밀경찰에 깊이 협력한 사람들에게만 수여되었다.

담당자 / 기관_ 인력-선출위원회

내용_

1. 구 인민경찰관이 통일 후 치안경찰 혹은 형사경찰의 상급직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구 인민경찰의 중급직에 해당하는 이론적 자격요건 그리고 이 직무에 있어서 최소한 5년의 다양한 실무 집행.
2. 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단지 직무수행에 대한 권고만을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직무의 전문 자격요건이 단지 불충분하고 아직 만 48세 이하인 자는 치안경찰의 중급직 집행업무 근무를 위한 2년 간의 교육을 제공받는다.
4. 5년의 다양한 실무 경험은 엄격한 규준에 따라야 한다. 직업상의 전문적 실무는 특히 지금까지의 지휘자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사해야 한다. 치안경찰의 상급직 직무배정은 항상 지휘자로서의 책임의 인수를 의미한다.

문서 요약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문서번호 36~40)

담당자 / 기관_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 인력-선출위원회

내용_

구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이 국가안전부 경력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비밀유지 선서와 그 인
지를 서명하는 서식 견본.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한다:

국가안전부 문서의 보관, 이용 그리고 보안은 전체 독일에 걸쳐 광범위한 법적 규율을 필
요로 한다. 최종적으로 법 규율이 있기까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자료와 문서는 연방정부의 특임관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인사 관련 문서는 단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조사하고 이용된다.
- 이외에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서
번호 37

베를린 인민경찰의 고위직급자에 대한 인사정보 설문지

담당자 / 기관_ 내무행정,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 인력-선출위원회

내용_

이 설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범위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한다:

- 인적 사항
 - 인민경찰 직무 이전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 인민경찰 직무 이전 활동
 - 직업교육과 인민경찰에서의 직업상 이력
- 인민경찰에서 달성한 직급
- 최근 직무에 대한 기술
- 다른 직무로의 전환?
- 1989년 11월 9일 이후 자신의 인사문서 수정?
 - 향후 직무에 대한 특별 희망사항
 - 형사법상 유죄판결?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서 1989년 11월 9일 이전에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가?
 - 구 국가안전부/국가안보청에서의 혹은 이 기관 산하기관 혹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활동?
- 그렇다면 어떤 기능? 언제부터 언제까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서 재정적 원조를 받았는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 협력의무 의사표시를 서명했는가?
- 상기 기관 중 한 곳에서 군복무?
- 상기 기관과의 접촉?
 - 당신의 직무처가 증거 조작 혹은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형사 소추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 구 국경지역 근무?

담당자 / 기관_ 인력-선출위원회 보도자

내용_

담당자/특임자가 과거 경력에 대해 심사 받은 인민경찰관에 대해 언급하는 서식 견본. 인력-선출위원회에 대하여 구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이 계속 고용되는지의 여부 혹은 해고되어야 할지에 대한 권고를 한다.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다:

- 상담의 대상
- 결정 제안
- 이유
 - 중급직 치안경찰로 배정
 - 정상적 해고
 - 예외적 해고
- 간단 평가서
- 결정 이후 절차

1991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경찰청장, 인사조직부

내용_

베를린 경찰청 인사조직부가 해당자에게 재고용을 위한 인성과 전문성에 따른 적합성을 통보하는 공문 견본.

- 고용계약과 보수
- 재고용은 인력의 수요에 따른다.
-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문서
번호 40

형사경찰 부서 및 제1 경감부 지도급 경찰관의 인성 부적합성

담당자 / 기관_ 부서/형사경찰

내용_

베를린 주정부의 공직수행에 부적합한 근거(개별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함)

1. 제1 경감부 담당자, 팀장, 경감부장 ...씨는 베를린 행정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 그의 과거 직무활동은 구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을 대표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2. 정치적인 활동과 협력은 1980년 12월 30일자 내무부와 인민경찰국장의 명령 0023/80 번으로부터 인정된다.

문서 요약

5. 보도 광고와 신문 기사(문서번호 41~51)



문서
번호 41

베를린은 오직 한 명의 경찰청장만을 갖는다.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 게오르크 쉘르쯔(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내용

- 통일 조약에 따라 동베를린의 경찰통수권은 베를린주로 이관된다.
- 신분증과 주민등록, 차량 허가 그리고 차량 면허에 관한 사무는 주민자치센터로 이양된다.
- 화재예방 사무는 베를린 소방서가 맡는다.
- 인민경찰의 감독청은 경찰청장에 속하게 된다.
- 인사위원회는 경찰의 인수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 인민경찰 경찰청에 관한 결정은 1990년 10월 말까지 내리게 될 것이다.

출처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
번호 42

동독 경찰관은 직무선서로부터 면제됨
1990년 8월

담당자 / 기관_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내무장관, 인민경찰, 형 집행, 소방서

내용_

- 동독의 디스텔 내무장관은 인민경찰, 형 집행, 소방서를 그들의 직무선서로부터 면제시켰다.
- 베를린 주정부를 구성하기까지 모든 인민경찰은 독일 국민과 그의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다.

출처_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
번호 43

동베를린 경찰은 전적으로 재조직된다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_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내용_

- 수년 이후에야 비로소 구 인민경찰관이 서베를린 동료의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베를린 경찰국의 관할범위는 1990년 10월 3일로 전 베를린으로 확장된다.
- 모든 동베를린 경찰관에 대해 심사한다.
- 동·서 혼성팀이 구성될 것이며; 각각 대략 2,000명을 조금 넘는 경찰인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동베를린 경찰관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제복과 이후에 새로운 직무권총을 수령받는다. 잠정적인 직무신분증은 즉시 수령 받는다.

출처_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 번호 44 10월 3일 이전 경찰책임의 인수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내용

- 페쾰트 서베를린 내무장관은 디스텔 동독 내무장관에게 동베를린의 경찰에 대한 책임을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양한다는 것을 제의했다.
- 이는 동베를린 내무장관이 형식적인 절차로 서베를린 내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도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 번호 45 다수의 경찰관은 머리에 서로 적으로서의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내용

- 동서 베를린의 경찰관들은 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적의 이미지”로 보고 있다.
- 10월 3일 이후 약 9,500명의 구 인민경찰관 중 3,000여 명이 새로운 행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5,000명의 동베를린 경찰관은 현장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그들의 업무는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구 인민경찰관들은 새로운 업무영역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한 제복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독일 통신-에이전씨

문서
번호 46

경찰관에게 새로운 제복을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동베를린 행정부, 서베를린 행정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쉘르츠 (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내용

- 1990년 10월 3일부터 베를린의 모든 경찰은 서베를린 경찰청에 소속된다.
- 통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6,800명의 인민경찰서의 경찰관, 100명의 수상경찰관, 1,200명의 외교공관 경비경찰관.
- 2,500명의 인민경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미래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그들은 계급강등을 예상해야 한다.
- 동베를린 구청 소속 57,000명 공무원의 대부분은 인수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대기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 후에도 새로운 직무를 배정받지 못하면 해고되게 된다. 구청사무의 일부는 민간에게 이양된다.

출처 베를리너 짜이퉁(Berliner Zeitung)



문서
번호 47

보도-페촐트(Pätzold): 서베를린 경찰은 전 베를린으로의 경찰통수권 이양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동베를린 행정부, 서베를린 행정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촐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내무위원(동베를린)

내용

- 동베를린 경찰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 기술이 노화되었다.
- 구 인민경찰이 서베를린 교육의 표준에 도달하기까지 수 년은 걸릴 것이다.
- 전체 베를린에는 5개의 지역 경찰국이 있게 된다. 제1, 제3 그리고 제5 경찰국은 동베를린으로까지 확장된다. 최종적인 조직구성은 향후 행해진다.
- 11개 동베를린 경찰감독청은 위에 언급한 잠정적인 경찰지구로 이양된다. 23개의 경찰지구는 우선 유지된다.
- 전체 베를린에는 혼성 무선통신차량팀이 있게 된다.
- 대략 500명의 동베를린 지구경찰의 업무는 폐지된다. 서베를린에서와 같이 직무지역이 구성된다.
- 전체 베를린을 관할하는 경찰국은 범죄적결의 특별업무를 더 가지게 된다.
- 형사경찰은 동베를린의 직무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 지역 경찰국 형사경찰의 긴급직무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 인민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권총은 우선 계속 사용한다. 기관총은 새로운 주에 반납하고 동베를린에서는 서베를린의 재고로 대체된다.
- 금년 내에 새로운 제복을 갖추기 시작한다.
- 당분간 무선과 통신 기술에 있어 아직 호환되지 않는 두 체계는 소위 '연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 그 밖의 대기근무 업무는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내무행정 공보부의 보도 공고, 224/1990

담당자 / 기관 에리히 페졸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치안경찰/인민경찰, 게오르크 쉘르쯔(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바흐만(Bachmann) 경찰청장(동베를린)

내용

- 페졸트 내무장관은 전 베를린 경찰통수권을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미리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 1990년 10월 3일 행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1,200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경찰관이 업무공조를 할 것이다.
- 전 베를린에는 계속하여 5개의 경찰국이 있게 된다. 우선 3개의 서베를린 경찰국이 동베를린으로까지 확장된다.
- 인민경찰은 교육을 통해 서독의 표준으로 접근해 간다.
- 11개 동베를린 경찰감독청은 계속 유지된다.
- 동베를린의 지역 담당 감시관 업무와 관련하여 동베를린 경찰청장이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실제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경찰위원회(Polizeibeauftragten)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전 베를린 지역에 혼성 무선통신차량순찰팀을 배치한다.
- 구 인민경찰관은 “잠정적 직무신분증”을 가진다.
- 마카로브(Makarow)형 권총은 우선 계속 사용하며; 칼라슈니코프(Kalashnikow)-기관총은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디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



문서
번호 49

경찰 10월 3일부터 통합; 베를린 경찰이 통일을 앞당기다

1990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 치안경찰/인민경찰, 귄터 하이데만(Günter Heidemann) 인민경찰 부경찰청장,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에리히 페쾰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내용

1. 빌트자이퉁 석간의 보도(BZ am Abend)

-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도 구 주민등록 혹은 차량허가청은 우선 그 관할사무를 그대로 가진다. 물론 이들은 더 이상 경찰에 소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 신분증은 기재된 시점까지 유효하며; 여권은 1995년까지 유효하다.
- 동독에서 의무였던 각 가정의 거주민과 방문객을 기록하는 '주거상황기록부'(Hausbücher)는 폐지된다.
- 10월 3일 이후에도 우선은 동서 경찰이 상이한 제복을 그대로 입어야만 된다.
- 8,000명 이상의 하천과 토지에 대한 감독청과 외교공관 경비(Missionsschutz) 경찰관이 인수된다.
- 2,500명의 인민경찰 경찰청 경찰관이 선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2. 디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

- 페쾰트(Pätzold) 내무장관은 전 베를린의 경찰통수권을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미 이양받고자 했다.
- 동베를린 중구 경찰감독청장은 1990년 9월 30일로 사표를 제출했다. 누가 후임자가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1,200명의 경찰이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 업무공조를 했다.

출처 베제트 암 아벤트(BZ am Abend) [1990년 이후: 베를리너 쿠리어(Berliner Kurier)], 디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

담당자 / 기관 에리히 페졸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고트프리트 하인제(Gottfried Heinze) 주 치안경찰국장(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연방하원 기민당-연정(서베를린), 기민당/기사련-연방하원연정, 기민당/기사련 연방연정의 프리드리히 볼(Friedrich Bohl) 국회사무장, 발터 뎀퍼(Walter Momper) 베를린 시장(서베를린)

내용

- 동베를린 경찰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서베를린 행정청에 소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통합은 1990년 10월 3일이다.
- 양 지역의 경찰이 10월 3일 이전에 통합되지 않으면, 서베를린 공무원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 1990년 10월 3일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
- 1990년 10월 3일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서베를린 경찰국장이 동베를린에 파견되었다.
- 서베를린 시의회의 기민당은 1990년 10월 3일 행사장 입구 영역에서의 모든 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의회의 기민당/기사련도 베를린 시장(서베를린)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정 파트너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디 타게스슈피겔(Die Tagesspiegel)



문서
번호 51

페졸트(Pätzold)가 디스텔(Diestel) 내무장관에게 제안하다: “서베를린 경찰이 즉시 전 베를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

1990년 9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에리히 페졸트(Erich Pätzold) 내무장관(서베를린), 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 동독 내무장관, 기민당/기사련 연방하원연정, 기민당/기사련 연방연정의 프리드리히 볼(Friedrich Bohl) 국회사무장, 발터 뎀퍼(Walter Momper) 베를린 시장(서베를린), 베르너 콜호프(Werner Kolhoff) 행정부대변인(서베를린)

내용

- 페졸트 서베를린 내무장관은 디스텔 동독 내무장관에게 동베를린 경찰의 책임을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즉 즉각적으로 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인계할 것을 제안했다. 디스텔 동독 내무장관은 이 제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는 디스텔 동독 내무장관이 페졸트 서베를린 내무장관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베를린 경찰은 동베를린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연방하원 기민당 연정은 1990년 10월 3일 행사장 입구 영역에서의 모든 시위운동 금지를 요구했다. 기민당/기사련 연방하원연정은 베를린 시장(서베를린)에게 이를 연정 상대방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콜호프 내무부 대변인은 기민당/기사련은 당 정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이야기했다.

출처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

문서 요약

6. 회의록(문서번호 52~61)



문서
번호 52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대표자의 그 과제수행을 위한 회의(록)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인민경찰 경찰청, 베를린 행정부(서베를린), 내무부(동독), 내무행정(동베를린)

내용_

- 1990년 7월 3일에 서베를린 시정부의 내무부와 동독의 내무부 그리고 동베를린시의 내무행정국(Magistratsverwaltung für Inneres)은 경찰 프로젝트그룹에게 통합과정의 개시를 알렸다.
- 업무는 기밀이다.
- 동베를린 경찰을 서베를린 모델로 변환시킨다.
-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치안경찰; 형사경찰; 장비와 기술(자료의 정보화, 의료업무 그리고 재정을 포함); 인사, 직업교육과 재교육; 조직
- 계획일정: 처음에는 현황 조사를 한다(3주). 신속히 자료와 사실을 그에 따라 체계화 하고 상반되는 점들을 비교한다. 이에 이어 상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한다. 이어서 “목적에 따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1990년 8월 첫 주까지). 최소한의 요건도 설정해야 한다. 이후 그 밖의 당위 규정을 설정하고 이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로 나눈다. 모든 단계마다 경찰은 완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소집된다. 실무그룹에는 대표자를 정한다. 실무그룹은 그 이외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하위 실무그룹 치안경찰, 프로젝트그룹 경찰

내용_

- 실무그룹의 대표자는 프로젝트그룹 경찰과 그 외에 투입된 실무그룹이 이미 달성한 사전작업에 대해 보고한다. 실무그룹의 작업이 기밀이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 초기 결과가 있기까지 예상 시간은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1990년 7월 말, 목적에 합당한 조치를 위해서는 1990년 8월 초, 베를린의 경찰에 대한 안을 위해서는 1990년 9월.
- 인민경찰이 서베를린 모델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중복작업을 피하기 위해 어느 실무그룹이 어느 자료를 조사하는지(예를 들면 인력과 장비에 관한 자료) 그리고 어떻게 이를 전달하고 상호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하위 실무그룹 치안경찰이 설치된다: 교통(도로교통 행정청과 벌금 담당 부서), 경찰지구 직무(감시직무, 일직, 무선통신차량순찰 직무, 직무지역 업무, 사건절차 담당), 수상경찰, 항공안전, 기마경찰/경찰견 담당경찰, 직무대상자의 보호/감시 경찰
- 실무그룹 치안경찰의 그 밖의 일정을 정하고 참가자의 전화번호를 본 회의록에 첨부한다.



문서
번호 54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 조치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형사경찰

내용_

-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의 경우 단일한 법적 요건이 주어져야 한다(예를 들면 기본법,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 정보보호법)
- 한 명의 주 경찰청장이 있는 한 개의 경찰청만이 존재한다.
- 동베를린 형사경찰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특히 형법과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 경찰직무). 동베를린의 직무지는 형사행정법, 형법, 경찰법, 형사경찰의 규정집 그리고 기본법의 법률과 주석서를 준비해야 한다.
- 동베를린의 인력은 더 이상 새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 신속히 인력을 1:1의 비율로 교환해야 한다.
- 단일한 무선 주파수를 결정하고 텔레타이프 그리고 텔레팩스와 범죄퇴치를 위한 정보 체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신고의 접수는 동베를린에서도 원칙적으로 치안경찰이 수행해야 한다.
- 공동의 직무신분증/공동의 직무증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장비와 기술, 프로젝트그룹 경찰

내용_

- 1990년 7월 5일에 프로젝트그룹 경찰 설립 회의가, 1990년 7월 9일에 실무그룹 장비와 기술 설립 회의가 있었다. 그 이전에 “적절한 통신업무” 분야를 위한 사전회의가 있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인민경찰의 새로운 근무 제복과 차량, 자료정보화에서의 공동작업, 인민경찰 예산의 문제, 건축과 토지 문제. 의료 문제는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는다.
- 실무그룹의 업무는 기밀이다.
- 1991년 예산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 인민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어되었다: 1,765개의 근무 제복, 370개의 중고장화, 300개의 보호헬멧 면갑, 200개의 보호방패와 곤봉.



문서
번호 56

경찰 실무그룹의 권한 관련 프로젝트그룹의 제1 회의 회의록
1990년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법, 동베를린의 행정

내용_

- 우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찰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현황 분석을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모든 업무지시와 경찰업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총괄해야 한다.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 그 중점은 경찰법과 범죄소추에 관한 법에 있다.
- 관련규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 점령군법은 전 베를린 경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경과적인 동베를린 경찰법은 서베를린의 일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동베를린의 주법이 일괄적으로 인수되어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다. 이는 행정위원과 논의한다.
- 다음과 같은 과제를 확정적으로 위임하였다: 법 규정의 총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찰법의 기본 원칙의 대비, 이에 상응하는 형사소추의 대비, 경찰직무규정의 총괄, 직무지시의 총괄.
- 실무그룹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구성원이 1990년 7월, 8월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업무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담당자 / 기관_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 지구 경찰

내용_

- 1990년 7월 말까지 하위 실무그룹은 사전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 서베를린의 경찰지구 직무의 현황을 기술했고 이를 동베를린의 회의 참가자들에게 복사본으로 교부했다. 1990년 7월 18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민경찰의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 우선 전 지역에 무선통신 차량순찰 직무가 기능하여야 하며, 직무지역에서 직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직무지에 경찰지구를 정립해야하는 기능이 더해진다.
- 인민경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서였다: 인력의 규모, 하위 복종관계, 지구 경찰의 직무규정, 직무시간, 무선통신 차량순찰(숫자, 구성), 경찰 지구의 크기
-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국인 법, 직무대상자의 보호, 수감자 감시와 지하철과 전철의 감시(베를린 교통 사령부)
- 베를린 전 지역의 헬리콥터 경찰대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서
번호 58

실무그룹 “인력, 교육과 재교육”의 제3 회의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 실무그룹 인력, 교육과 재교육, 치안경찰/인민경찰,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 형사경찰 경감국 I, 내무부

내용

1990년 7월 17일에 열린 인사관련 실무그룹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 1990년 7월 18일에서야 서베를린 기준에 따라 인민경찰 감독청의 모든 기능의 목록화가 완성될 것이다.
- 인민경찰의 경찰청에서 아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급 아카데미 코스(Höherer Akademischer Kurs) 졸업생들의 명단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인사기록문서의 견본을 제출했다.
- 인권 침해를 범했던 인민경찰은 더 이상 고용될 수 없다. 이는 동독에서도 적용됐었던 규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무직, 고위직 경찰관만을 집중하여 조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인민경찰은 동독에서 억압기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 인사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특권의 사용, 권리침해, 경찰 임무의 주관적, 침해적 수행, 1989년 10월, 11월 직무수행에서의 태도. 인민경찰관이 이때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엇보다 그 동기와 명령의 존재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구 국가안전부 즉 슈타지 소속, 근무처의 연락장교, 형사경찰의 경감부 I의 소속, 신분증 및 주민등록부 지휘자, 특수 직무 장교, 엘리트 신분(Nomenklaturkader), 외국투입 경찰, 민감한 주제(국방, 국경문제, 구금)에 관한 박사논문과 학사논문.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어떤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한다: 구 국가안전부 소속원,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없는 비밀경찰 소속원으로 인민경찰에 인수된 사람; 특수업무를 담당한 장교; 국가안전부로부터 보수를 받은 인민경찰관.
- 형사경찰의 경감부 I은 정치적 경찰은 아니다.
- 다음과 같은 사람은 개별 심사대상이다: 1989년 10월, 11월의 일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거나 형사상 책임을 진 인민경찰; 이데올로기상 아직 구 체제에 머물러있는 인민경찰; 권위가 없고 하급자의 신뢰가 없는 상급자.
- 국경수비대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4,000명에서 5,000명의 모든 인민경찰관을 심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할 수 있다. 중간 직은 일반적으로 모두 심사대상은 아니다.

- 내부부의 직원은 축소되었다. 모든 소속자들에게 예비적으로 직업을 찾도록 권고했다. 30대에서 40대까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고되지는 않았다.
- 인민경찰 경찰청의 몇몇 지휘자급 인물은 대체되었다.
- 동베를린 경찰이 서베를린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서베를린 소속으로 고용하는 것은 급여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문서
번호 59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업무”의 제3 회의(1990.7.26) 회의록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하위 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 지구 경찰

내용_

- 현황조사는 완료되었다.
- 아직 교부되지 않은 경찰 지구 지역에 대한 지도 자료를 교부했다.
-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설명, 사전조치 및 장단기 조치 등이 논의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였다.
- 동서 베를린 경찰지구 간에 결연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이한 단계에 있는 경찰기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 측이 유사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 감시업무 문서와 교통업무 문서는 충분한 양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 서베를린의 범죄퇴치를 위한 정보체제가 베를린 도시 전 지역에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인민경찰의 재고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다(나이, 자격요건, 정치적 이력상의 문제점)



문서
번호 60

1990년 8월 27일, 8월 28일 그리고 8월 30일 회의 회의록
1990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_ 실무그룹 치안경찰

내용_

- 여러 가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만 한다. 이미 결정단계에 있는 과정들은 지체 없이 제안서와 함께 프로젝트그룹에 제출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프로젝트그룹에 의해서도, 정치적 차원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 모든 인민경찰 경찰청 건물이 경찰지구 건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물론 그곳에 비상전화체제 통신기술이 있어 포기할 수 없다면 이를 보전해야 한다. 연결이 과부하 되면 자동적으로 인근 비상전화체제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그룹 장비/기술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 경찰지구 구조와 관련하여 차선책과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 경찰청의 통신기술은 거의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규정된 최소한의 면적에 근거하여 건물의 적합성이 심사되었다. 간략한 평가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했다. 인사부 대표들은 업무를 피난소나 지하에서 수행하기를 거부했다.
- 경찰지구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 그 연결이 보장되어야 한다.
- 동베를린은 18개의 경찰지구로 구성된다. 바이센제(Weißensee), 트렙토(Treptow), 호헨하우젠(Hohenschonhausen) 그리고 헬러스도르프(Hellersdorf)구에는 각각 한 개의 경찰지구 만이 예정되어 있다.
- 우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예비품으로 보유한다.
- 집행경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 동베를린 전파탐지기는 즉시 대처되어야 한다.
- 최소한 면적이 5,000m²로서, 중심지에 위치한 행정건물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배들은 서베를린 수상경찰의 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 인물보호와 외국공관 경비를 위한 인력의 수요에 대해 기술했다.
- 직무대상자의 보호와 외국공관 경비를 위한 인력의 수요에 대해 기술했다.

담당자 / 기관_ 인사위원회, 주 베를린, 치안경찰, 형사경찰, 칼 립크네흐트 대학(Hochschule Karl Liebknecht)

내용_

- 문서 1개 당 업무처리 상 대략 2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 위원회는 직무그룹에 대해서만 권고하며, 직급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다.
- 부적합의 경우 짧은 이유를 부기해야 한다.
- 적합한 경우 베를린주에 적합한지; 치안경찰에, 형사경찰에 혹은 행정직에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 칼 립크네흐트 대학 졸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상급직의 자격요건을 가진다.
- 1년에 30일 이상 병가를 낸 경우는 심사를 해야 한다.
- 문제의 경우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 현재 위원회에 173 사례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담당 보고자들은 대략 15개에서 19개의 사례를 담당한다.
- 모든 담당 보고자는 1991년 3월 28일 현재의 상황을 보고한다.

문서 요약

7. 발표문(문서번호 62~63)

담당자 / 기관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행정(서베를린), 행정(동베를린), 내무부(동독), 동독 국경수비대

내용

- 머리말: 57년 동안 동베를린에는 민주경찰이 없었다. 서베를린에서는 1990년까지 승전 연방점령국이 다양한 경찰사무에 대한 지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1990년 10월 1일까지 서베를린 경찰의 조직: 서베를린은 1986년 주민등록과 신분증 같은 질서에 관한 업무가 경찰에서 주 주민자치센터로 이양되었다.
-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의 조직: 인민경찰은 내무부에 소속했었다. 동베를린의 경찰은 서베를린보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인원비율에 있어 간부 비율이 더 높다. 1990년 10월 1일 경찰청장의 책임 범위는 60% 내지 80%(주민과 도시면적에 있어) 증가했다. 인민경찰의 인수 없이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민경찰은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중앙의 직무지시에 따랐다.
- 도시 양 지역의 첫 접촉: 1989년 11월 11일 서베를린 경찰청장은 국경수비대의 대표를 만났다. 1990년 2월 12일에는 양 경찰청장이 만났다. 1990년 3월 15일에 서베를린 경찰청장은 포츠담 지역의 경찰청장을 만났다. 1990년 4월 1일 국경이 수상을 통해 개방되었다. 1990년 5월 1일부터는 첫 공동 직무수행 안이 마련되었다. 1990년 7월 2일 경찰 교육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 1990년 10월 1일 경찰통수권의 인수: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의 모델에 따라 재구성된다. 전 베를린의 경찰 제복이 현실적인 이유로 철회되었다. 혼성팀이 구성되었다. 인민경찰의 장비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 재교육/교육: 다년에 걸친 재교육 방안이 마련되었다.
-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인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결론: 베를린에 있어 범죄 비율은 증가했다. 동서 베를린 경찰 사이의 편견은 축소될 수 있었다.

출처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베를린 경찰청장의 윈스터경찰-지휘자 아카데미에서의 회의 “경찰행정청의 지휘”에서의 발표



문서
번호 63

베를린 경찰의 통합

2001년 5월 8일

담당자 / 기관 하트무트 뮐렌하우어(Hartmut Moldenhauer) 제1 경찰국장, 게오르크 쉘르츠(Georg Schertz) 경찰청장(서베를린), 치안경찰/인민경찰, 동독 국경수비대, “가옥(Gauck)” 행정청, 동독의 국가안전부

내용

-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10월 1일까지 경찰의 관점에서 본 베를린: 1990년 10월 1일 42년 간의 베를린 경찰의 분단이 끝났다. 동베를린에서는 57년 동안 민주주의적 의미의 경찰이 없었다.
- 1945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 1948년 경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었다.
- 변환과 쾌감의 극대화: 장벽의 붕괴 이후 처음 동독의 국경수비대와 서베를린의 경찰이 접촉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 31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의 상황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경수비대와 서베를린 경찰은 이 상황을 합동으로 완화시켰다.
- 접근과 경계: 1990년 초 개별 경찰지구 간의 결연관계가 맺어졌다. 무선통신의 범위를 심사하고 대형 행사에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양 지역의 경찰청장은 처음 공식적으로 회합을 가졌고; 서베를린 경찰청장은 포츠담 인민경찰장과도 회합을 가졌다. 1990년 4월 국경이 수상을 통해서 개방되었다. 5월에는 파견공무원들이 파견되었다.
- 통일의 준비와 현실화: 7월에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작업 프로젝트그룹이 시작되었다.
- 1990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서베를린 경찰의 개혁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폐지되었다. 서베를린 경찰청이 동베를린으로 확장되었다.
- 확장과 인수: 경찰통수권의 인수는 단기적으로 10월 3일에서 10월 1일로 앞당겨졌다. 혼합팀이 구성되었다.
- 동화: 지휘의 기능은 우선 절대적으로 서베를린 공무원이 인수했다.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마찬가지로 다년에 걸친 재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는 1994년 종료되었다. 상당기간 동베를린 경찰은 보다 작은 보수를 받았다. 전 베를린 경찰은 구 국가안전부와와의 협력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 장비와 조작: 동베를린 경찰의 장비는 아주 나빴다. “칼라슈니코프”와 “마카로브”형의 무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제복의 장비는 이미 1993년 완료되었다.
- 직무부담의 증가와 예측: 베를린에서는 범죄가 증가되었다.
- 결론: 지휘자의 지위에 동베를린 경찰 출신은 별로 없다.

출처 하트무트 뮐렌하우어(Hartmut Moldenhauer) 경찰국장의 벨기에 모나에서의 국제 경찰청장 협회에서의 발표.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06-01

